

- ㉔ 「심의·의결례집」은 위원회 업무처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과 그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 자료집입니다.
- ㉕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상정순서에 따라 수록하되, 신고사건, 제도개선 권고 등 분야별로 구분하였습니다.
  - 의결사항은 의안개요, 의결이유 또는 심의내용, 의결결과, 감사원·대검찰청 등 조사기관의 처리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결과 등을 수록하였으며,
  - 보고사항은 목차만 수록하되, 주요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그 요지를 첨부하였습니다.
- ㉖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명은 가급적 배제하였습니다.
- ㉗ 이 자료집은 매년 발간할 예정입니다.

第1部 議決事項

I. 申告事件

1. 택지개발지구내 불법 농지전용허가 .....	11	42. 국책 연구과제 연구비 비리 .....	55
2. 관공공사 공사비 과다지급 부패행위 .....	12	43. 지방자치단체 책임강리용역 부당 계약 .....	56
3. 전직 경찰관 뇌물수수 .....	13	44. 수사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	57
4. 부동산 이중매매사건 재수사 및 처벌 .....	14	45. 공무원의 출장비 유용 등 부패행위 .....	58
5. 군수의 직위이용 부당행위 .....	15	46. 장관급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재정신청 .....	59
6. 병역특례대상자 위장취업 비리 .....	16	47. 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재정신청 .....	61
7. 공공기관 예산 불법사용 .....	17	48. 공사수주 관련 금품수수 .....	63
8. 공기업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	18	49. 소방공무원 부당채용 등 비리 .....	64
9. 군수의 예산 불법사용 .....	19	50. 국립대학교 총장의 외국박사 학위 알선비리 .....	65
10. 구형장의 예산 불법사용 .....	21	51. 종합운동장 설계용역 부당집행 .....	66
11. 벤처 관련 공기업 납품 비리 .....	22	52.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금품수수 .....	67
12. 장관급 고위공직자 비리 .....	23	53. 국·공립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비리 .....	68
13. 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 .....	24	54. 공기업의 출장비 부정지급 .....	69
14. 공직자 직위이용 이익도모 .....	27	55. 공립 중학교 교장의 금품수수 .....	70
15. 공직자 뇌물수수 및 예산 불법사용 .....	28	56.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 .....	71
16. 도의회 공무원의 뇌물수수 .....	29	57. 허위문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비리 .....	72
17. 대학총장의 기성회비 등 부당사용 .....	30	58.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등 .....	73
18. 교육감의 학교 공사 관련 부패행위 .....	31	59. 정비 고가정비 의혹(I) .....	74
19. 공공연구기관의 업체선정 비리 .....	32	60. 정비 고가정비 의혹(II) .....	75
20. 농업경영개선자금 불법 대출 .....	33	61. 정비 고가정비 의혹(III) .....	76
21. 지하철공사 상가운영 관련 부패행위 .....	34	62. 정비 구매관련 예산낭비(I) .....	77
22. 정화조 청소 관련 구형장의 부패행위 .....	35	63. 정비 구매관련 예산낭비(II) .....	78
23. 경륜 장의사업소 개설 관련 비리 .....	36	64. 군청 등의 예산낭비 .....	80
24. 입업협동조합 직원 횡령 .....	37	65. 경찰공무원의 편파수사 및 뇌물수수 .....	81
25. 공기업의 업체 선정 비리 .....	38	66. 정보통신 관계 연구원의 정부출연금 낭비 .....	82
26. 생활폐기물대행업 수의계약 관련 금품수수 .....	39		
27.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예산 불법집행 .....	40		
28.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부패 .....	41		
29.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등 횡령 비리 .....	42		
30. 구청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수수 .....	43		
31. 구의회 의장의 직위 이용 납품 및 탈세 비리 .....	44		
32. 고속도로 공사 관련 도선폐업보상 등 비리 .....	45		
33. 지방공기업 직원의 주차장 이용대금 횡령 .....	46		
34. 공기업 지사장 임찰 비리 .....	47		
35. 군수의 직위이용 부당행위 재조사요구 .....	48		
36. 병역특례대상자 위장취업 재조사요구 .....	49		
37. 백화점 위법 건축허가 관련 구형직원 비리 .....	50		
38.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 사업비 낭비 .....	51		
39. 군납서류 허위작성 국가예산 횡령 비리 .....	52		
40. 세무공무원의 세무신고대행 관련 비리 .....	53		
41. 경찰공무원의 업무유착 부패행위 .....	54		

67. 허위계약서 이용 지방세 과소 신고, 납부 묵인	83
68. 세무공무원의 탈세제보 지연처리 비리	84
69. 진료차트 허위기재 약품착복 등	85
70. 국제공항 건설 관련 비리	86
71. 체육행사 천조금 불법모금 및 인사비리	87
72. 시정발주 관급공사 관련 예산낭비	88
73. 농업직원 금품수수	89
74. 공립학교 체육교사의 대회 포상금 등 횡령	90
75. 부실담보물을 이용한 대출사기	91
76. 국립대학교 교수 증원을 위한 금품제공 비리	92
77. 군 복지회관 운영·관리비 등 사적용도 사용	93

## II. 申告者 保護·補償

1.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에 관한 건	97
2. 출장비 부정지급 부패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98
3. 신분보장 조치요구 조사기간 연장	99

## III. 制度改善

1. 공무원 행동강령안	103
2. 교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안	115
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안	118
4. 청소대행계약의 특례 관련 권고안	121
5. 국민성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126
6. 터키공사 입찰제도개선 권고안	130
7.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권고안	135

5. 선거 관련 부패신고 접수 및 홍보계획	294
6. 정치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안	295

## 【 附 錄 】

1. 부패방지법	299
2. 부패방지법시행령	317
3. 부패방지위원회운영세칙	336
4. 전원의회의·분과위원회의 개최현황	344
5.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명단	346

## IV. 例規·訓令, 其他

1. 부패방지위원회운영세칙안	143
2. 신고사무원영지침안	151
3.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에 관한 건	166
4. 신고자보호사무원영지침안	167
5. 부패방지위원회훈리규정안	183
6.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196
7. 2002년도 청렴도 측정계획안	197
8. 부패방지 기본계획안	207
9. 신고자포상 및 보상사무원영지침안	249
10.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안	266
11. 비위면직자취업제한사무원영지침안	269

## 第2部 報告事項

### I. 報告目錄

### II. 主要報告要旨

1.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287
2. 지방순회 부패신고 접수 및 홍보계획	289
3. 신고사항 이첩 조사기관 선정기준안	290
4. 주심위원회 운영방안	292

## 第1部 議決事項

### I. 申告事件

### II. 申告者 保護·補償

### III. 制度改善

### IV. 例規·訓令, 其他

젊은 양심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밝고 투명한 세상 우리함께 만들어요!

※ 2002 부패방지 캐치프레이즈 당선작품

# I. 申告事件



- 옹기있는 당신의 신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지켜드립니다.
- 눈감으면 부패사회 신고하면 투명사회

제5차 전원회의(2002. 3. 4.)	제1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피신고자 A는 시청 산업과 농지전용허가 담당자, 피신고자 B는 구청 건축과 건축허가 담당자, 피신고자 C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하는 공기업인 바, - 위 A는, '99. 6. - 8. 위 C가 사업시행중인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주택 11동 신축과 관련한 농지전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C와 사전 협의도 없이 불법으로 허가를 내어주어 건축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 위 B는, '99. 12. 위 주택 건축 완공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록을 하여주어 건축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하고, - 위 C는, 동 택지개발지구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서 부당하게 저가로 평가하는 등 직권을 남용함	
<b>2. 의결이유</b> ○ 관계기관 조희 및 건축업자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위 농지전용허가의 사전협의 미비 등 절차상의 하자라 위 주택의 완공 이전 건축물대장등록 등의 신고자가 주장하는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됨 ○ 신고내용에 피신고자의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고, C공사의 지장물 보상 저가 감정평가 부분에 대하여 신고자의 별건 진정으로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에 이첩함이 상당함	
<b>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b>	
<b>4. 처리 결과</b>	<조사기관> - 피신고자들에 대한 증정계사유 발견되나 징계시효 2년이 완성 되었으므로 소속 기관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종결 ※ 통보일자 : 2002. 6. 1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b>5. 비고</b>	

제5차 전원회의(2002. 3. 4.)	제1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피신고자는 시청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 '94. 2. 특정 건설업체가 시청으로부터 도급받아 발주하는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원인이 없는 시가 2억 7,0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b>2. 의결이유</b> ○ 공사비 과다 지급에 대하여 신고자가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전문한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이 없고,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및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함 ※ 토의사항 : 불이첩 결정과 함께 '참고자료 통보' 가능 여부 불이첩하는 신고사건을 피신고자 소속 기관에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참고자료로 통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통보받는 기관에게 조사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사건의 관계기관 송부'경우에 준하여 통보가 가능하다고 결론	
<b>3. 의결결과 : 불이첩 ※ 단,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참고자료로 통보</b>	
<b>4. 처리 결과</b>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b>5. 비고</b>	

제5차 전원회의(2002. 3. 4.)	제1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피신고자는 경찰관인 바, - '95. - '96.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안, 관내 지역 유지들과 결탁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으로 불법 재산을 축적함	
<b>2. 의결이유</b> ○ 피신고자는 '96.- '98.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죄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과면처분)된 자로 확인됨 ○ 신고자는 위와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축적한 재산 규모에 비추어 규명되지 않은 수건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가 있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나 새로운 증거 제출이 없음	
<b>3. 의결결과 : 불이첩</b>	
<b>4. 처리 결과</b>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b>5. 비고</b>	

제5차 전원회의(2002. 3. 4.)	제1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신고자가 고소한 부동산 이종매매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소인과 결탁하여 편파적인 수사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니,</li> <li>- 동 사건의 철저한 재수사와 피신고자의 엄정 처벌을 요구함</li> </ul> </li> </ul>	
<p>2. 의결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고소 사건은 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 처분 이후, 신고자의 불복으로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절차 계류중에 있음이 확인됨</li> <li>○ 본건은 사인간의 재산권분쟁에 대한 사안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등의 사실 적시나 증거 제출이 없으므로, 불이첩함이 상당함</li> </ul>	
<p>3. 의결결과 : 불이첩</p>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고	

제5차 전원회의(2002. 3. 4.)	제1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는 군수인 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지역 전산화사업과 관련하여 약 4억 2,000만원 상당의 사업 금액을 수개로 임의 분할하여 친인척에게 수의계약 하여 주고,</li> <li>- 타인으로부터 점용권을 회수한 하천부지에 대하여 자신의 동생에게 불법으로 점용허가를 내어 주고,</li> <li>-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이설 사업과 관련, 용역결과에 따른 최저지를 제쳐두고 친인척 소유 토지를 관통하는 지점을 사업지로 선정하는 등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친인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li> </ul> </li> </ul>	
<p>2. 의결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 의사록, 사업지 선정 용역결과보고서 등 기재내용이 신고자 진술내용에 부합하여 신고자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li> </ul>	
<p>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고	

제5차 전원회의(2002. 3. 4.)	제2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 1. 실제로는 사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원생 3명을, 병역특례 지정업체로써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대학 부설 연구소에 병역특례자로 편입시켜 주고 사기업체 관계자로부터 동 회사 주식 등의 금품을 수수함</li> </ul> </li> </ul>	
<p>2. 의결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직원 비상연락망, 위 3명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의 기재내용과 회사 경리직원에 대한 전화 확인 결과에 의하면, 위 3명의 사기업체 근무사실이 확인됨</li> <li>○ 위장취업 및 병역특례자 편입 관련 주식취득 등 금품수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li> <li>※ 토의사항 : 병역특례자 제도 관련 제도개선 검토 필요 병역제도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공정한 제도운용이 중요하므로 병역특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본건의 이첩과 별도로 계속 검토 후 필요 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하기로 함</li> </ul>	
<p>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고	

제5차 전원회의(2002. 3. 4.)	제2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는 지방교육청 교육감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 - 2001. 9. 약 3억여원 상당의 홍보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실 위 금액은 지역언론 기자들에 대한 차지,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에도, 정당한 광고비, 기자 간담회 등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불법 사용함</li> </ul> </li> </ul>	
<p>2. 의결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위원회의 임시회의록 기재내용이 신고자 주장 내용에 부합하고, 해당 교육청이 홍보비 상세집행내역을 제출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치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홍보비 예산 집행내역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li> <li>※ 토의사항 : 대검찰청에 대한 이첩 여부 검토 횡령, 대가성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상 대검찰청 이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현재 확인결과로는 구체적인 혐의내용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감사원에 이첩함이 상당하다고 결론</li> </ul>	
<p>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고	

제5차 전원회의(2002. 3. 4.)	제3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피신고자들 8명은, 지방공기업인 의료원 원장 및 임·직원들인 바, - '95. - 2001. 특정 강의업자와 유착하여 의료원 영안실을 동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여 7년간 약 5억원 상당의 재정 수입 손실을 가져오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함	
<b>2. 의결이유</b> ○ 영안실 무상 사용·수익 사실은, 동 의료원 전 관리부장의 진술 내용 및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됨 ○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혐의에 대하여는, 본건 이전 대통령 비서실 등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례의 진정 및 민원 제기를 통해 '혐의없음' 처리된 사안으로 본건에 있어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제시되지 아니함 ○ 본건 이전,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를 통하여 무상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 위법의 점이 지적되어 현재 적영체제로 전환,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해당 공기업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로 이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b>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로 이첩</b>	
<b>4. 처리 결과</b>	<조사기관> - 의료원 관계자 2명(前 관리부장 및 관리팀장) 정제 요구 -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의료원에 대한 기관주의 ※ 처리결과 등보 : 2002. 4. 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b>5. 비고</b>	

제6차 전원회의(2002. 3. 18.)	제1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피신고자들은, 군과 산하 9개 읍·면 공무원들로서, - '99. - 2001. 군 예산중 약 1억 5백여만원을 풀베기예산으로 배당후 지역유지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풀베기작업 관련 서류들 조작하고, 실제로는 동 급원을 관변단체 회식비,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함	
<b>2. 의결이유</b> ○ 신고자가 제출한 모 방송국 뉴스 취재결과 녹취록 등에 따르면, 일부 풀베기작업 인건비가 관계서류상의 작업 명의자에게는 형식적으로 지급되었다가 이후 군 담당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동 예산 전체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 토의사항 : 위원회 의결시 신고자, 피신고자의 실명화 필요성 검토 ('별지' 참조)	
<b>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b>	
<b>4. 처리 결과</b>	<조사기관> - 담당 공무원 9명을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 (3명은 불구속 구공판, 6명은 구약식) ※ 처리결과 등보 : 2002. 8. 1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b>5. 비고</b>	

<별지>	위원회 의결시 신고자, 피신고자의 실명화 필요성 검토
<b>○ 문제의 제기</b> - 위원회(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가 신고사건 의안을 의결시,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처리 - 신고 사건 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등 권리 보호와 실명화 처리시 비밀 누설될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결과이나, 신고사건을 접수, 확인한 사무담당자는 신고자 등의 실명을 알고 있는 반면, 신고자, 피신고자와의 특정 이해관계 존재시 제척, 기피, 회피 의무를 가지는 위원회 의원이 신고자 등의 실명을 전혀 알지 못한채 의결에 임하는 불합리한 문제 발생	
<b>○ 검토 결과 : 실명으로 의결하기로 의견 수렴</b> - 위원회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므로, 위원회 업무에 속하는 신고 사건에 대하여 신고자,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위원들이 검토하는 것은 당연 - 형법이나 부패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비밀의 누설은 비밀을 위원회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위한 보고 과정에서 비밀을 공유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러한 위원회 내부에서의 비밀의 공유가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님 - 향후 실명으로 처리되되,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업무상 비밀의 누설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함	

제6차 전원회의(2002. 3. 18.)	제1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피신고자는 구청장으로, - 전국 동시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여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고자 구청 예산을 사용하여 시가 1만 5천원부터 5만원까지의 주류 선물셋트를 구입하여 정당원 800여명에게 제공함	
<b>2. 의결이유</b> ○ 본건은 익명의 신고(신고서상 기재된 신고자의 신분과 주소 확인 결과 허위로 밝혀짐)에 불과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 등이 제출되지 아니함	
<b>3. 의결결과 : 불이첩</b>	
<b>4. 처리 결과</b>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b>5. 비고</b>	

제2002-20호 벤처 관련 공기업 납품 비리	
제6차 전원회의(2002. 3. 18.)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기업 2개 업체의 구매부서 담당 직원들로서, - '98. 3. - 2001. 11. 특정 벤처업체와 유착하여, 동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제품을 고가로 납품받음에 있어, 납품 가격을 임의 분할하고 부적절한 제품시험 항목을 선정하며 복수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각종 향응과 주식을 제공받음	
2. 의결이유	
○ 전기제품 구매내역서, 수의계약 견적서 등의 기재내용이 신고 내용에 부합하므로,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뇌물 수수 및 공여자 3명(공기업 구매담당자 2명, 벤처업체 대표 1명) 각 불구속 구공판, 금 1,000만원 추징 - 벤처업체 주식을 부당 취득한 공기업 직원 19명 각 징계통보 * 처리결과 통보 : 2002. 8. 2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第1部 議決事項

제2002-26호 장관급 고위공직자 비리	
제7차 전원회의(2002. 3. 3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로서, - '96 - 2001. 소속 직원으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약 20 여회에 걸쳐 현금 450만원, 상품권과 양주 등 시가 5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합계금 1,04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공직자인 신고자가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신고한 내용으로, 현금 등 금품을 지급한 상세 내역이 모두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신고자가 진술하는 각종 인사결과가 사실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고위공직자인 피신고자를 고발함(위원 2명 의견 회피) * 토의사항 : 공소시효 완성 여부 본건중 일부의 금품수수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나머지 금품수수 범죄사실은 시효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신고자 주장에 기초하면 전체의 범죄사실이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므로 신고내용 전체를 고발함(위원 2명 의견 회피)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에 고발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신고자 진술에 신빙성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 * 처리결과 통보 : 2002. 7.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에 대하여 신고자가 불복하고 있고,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정신청을 검토
5. 비고	
- 관련의안 : 제2002-87호 (2002. 7. 8.) 「장관급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제정신청」	

1. 申告事件 ●

제2002-27호 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	
제7차 전원회의(2002. 3. 3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검사이고, 피신고자 B는 전직 검찰총장인 바, - 위 A는, '95. 12. - '96. 1.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하여 평소 돈독한 친분 관계에 있던 사업가로 하여금 위 B에게 시가 3,000만원 상당의 페르시아산 카펫 1점을 제공하도록 하고, '97. 5. 동 사업가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품싸롱 등지에서 계속적인 향응과 외류 40점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동 사업가와 관련된 폭행사건을 선처해 주는 등의 부패행위를 하고, - 위 B는, 위와 같이 동 사업가로부터 페르시아산 카펫 1점 시가 3,0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각종 기념식 동석 등에 비추어 뇌물공여자인 위 사업가와 피신고자 A와 사이에 상당한 친분관계 인정되고, 신고자가 카펫 구입 자금의 인출내역(자기앞수표 3장)을 제출하고 참고인 2명(위 사업가의 운전 기사와 관계자 각 1명)의 진술내용이 신고내용에 부합(카펫과 외류 진단 취지)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높으므로 고위공직자인 피신고자들을 고발함 * 토의사항 : 고발 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 '별지 1,2' 참조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에 고발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각 혐의없음(일부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없음) * 처리결과 통보 : 2002. 7. 2.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결과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정신청을 검토
5. 비고	
- 관련의안 : 제2002-88호 (2002. 7. 8.) 「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제정신청」	

● 第1部 議決事項

<별지1>	고발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前職의 포함 여부)
○ 부패방지법 소정의 고발 대상 고위공직자에 '前職' 고위공직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행위시 기준설 부패행위 당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퇴직후에도 고발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만약 부패행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가 퇴직하지만 하면 고발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부패방지법의 입법목적이 훼손되는 결과 야기됨	
- 고발시 기준설 고발, 제정신청 제도는 현직인 고위공무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건을 유명무실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행위시의 직위와 관계없이 고발시 기준으로 현직인 고위공직자인 경우에 고발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부패방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함	
- 검토 의견 고발시 기준설에 의하면 퇴직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고발은 불가능하므로 이점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행위시 기준설도 해석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가사 부패방지법상의 고발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도 본건 퇴직 고위공직자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뇌물죄의 공범 관계에 있어 합리적 처리가 필요하며, 동시에 대하여 위원회가 일반법에 기초한 범죄행위의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현직 고위공직자와 함께 고발하기로 결정함	

1. 申告事件 ●

<별지>	고발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피신고자로 적시되지 않은 고위공직자의 포함 여부)
<p>○ 신고사항의 확인과정에서 부패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고위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p> <p>- 본건의 경우에는 당초 기명으로 적시된 피신고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피신고자에 대하여도 신고자의 신고의사가 전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 문제가 없음</p> <p>- 다만, 향후 다른 사건에 있어서 신고자의 신고의사가 전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고발 또는 이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p>	

제2002-28호	공직자 직위이용 이익도모
제8차 전원회의(2002. 4. 1.)	제1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시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9급)으로서, - 2001. 4. 자신이 아는 업체를 통하여 싼 값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여 주겠다고 신고자로부터 정화조 시설비 350만원을 수령한 후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고, 신고자에게는 준공검사 지연 등의 손해를 입게 함</p>	
<p>2. 의결이유</p> <p>○ 정화조 시공업자 등 참고인의 진술내용 및 정화조 시공계약서, 각서(피신고자 작성)의 기재내용이 신고내용에 부합함 ○ 피신고자의 동종 비리 사건이 분당경찰서에 계류중임을 확인함</p>	
<p>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 - 구축 기소(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횡령 등) * 처리결과와 통보 : 2002. 5. 2.</p> <p>&lt;위원회 검토의견&gt;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5. 비고	

제2002-29호	공직자 뇌물수수 및 예산 불법사용
제8차 전원회의(2002. 4. 1.)	제1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들은, 군수 및 건교부, 농림부 공무원들인 바, - 군수는, '95. 4. - 5경 관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 건설회사로부터 도로개설 청탁과 함께 7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해당 도로를 적법 절차 없이 개설하여 약 28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 건교부, 농림부 공무원들은, 본건 관련 신고자의 각종 질의에 대하여 고의로 법령과 다르게 회신하는 부패행위를 함</p>	
<p>2. 의결이유</p> <p>○ 신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제출은 이루어지지 않음 ○ 관계기관 확인 결과, 위 금 7억원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자자체에 납부된 수익자 부담금으로 밝혀졌으며,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에도 별다른 위법성이 발견되지 아니함 ○ 다만, 위 금 7억원의 지급 시기와 영수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이 발견되어, 지자체 및 담당 공무원의 금원 전용 등의 위법행위 가능성 있고, 도로개설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이첩함이 상당함</p>	
<p>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로 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 - 위법사항 없음 수익자 부담금 7억원의 지급, 영수 시기의 차이는 회계항목의 변경에 따른 것일 뿐 전용 사실 없고, 도로개설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위법 사실 발견되지 아니함 * 처리결과와 통보 : 2002. 5. 15.</p> <p>&lt;위원회 검토의견&gt;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5. 비고	

제2002-30호	도의회 공무원의 뇌물수수
제8차 전원회의(2002. 4. 1.)	제1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도의회 총무담당관으로서, - 2000. - 2001. 자신이 담당하는 도의회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발주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인이 모집하는 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도의회 소속 직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으로 뇌물을 수수함</p>	
<p>2. 의결이유</p> <p>○ 확인 결과, 피신고자 소속 직원과 위 용역사업 관련 업체 대표 등의 보험가입 사실 규명되고, 이해관계자들이 비록 보험 가입의 임의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직무 관련 강제모집 혐의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직무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로 이첩함이 상당함</p>	
<p>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로 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 -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요구(직위를 이용, 최소 6건의 보험을 모집하여 연 270여만원 부당이득 취득) * 처리결과와 통보 : 2002. 5. 15.</p> <p>&lt;위원회 검토의견&gt;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5. 비고	

제8차 전원회의(2002. 4. 1.)	제2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 '99. 기성회비 4억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유용하고,</li> <li>- '96. - 2000. 기성회 장학금 5억여원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으며,</li> <li>- 자신이 발간한 시집을 학교 공금으로 구입하고, 총장 선거시 교수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향응을 제공하였으며,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각종 인사 부조리를 자행함</li> </ul> </li> </ul>	
<p>2. 의결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성회비, 기성회 장학금 횡령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규명됨</li> <li>○ 개인 시집 발간 관련 공금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피신고자가 발간한 시집중 수천여권을 자신이 구입한 것으로 밝혀진 바, 그 구입자금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li> <li>○ 기타 인사 부조리, 총장 선거 관련 선물 및 향응 제공 등의 부분은,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li> <li>○ 규명되지 못한 비리 혐의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li> </ul>	
<p>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법사실 발견되지 아니함</li> <li>* 처리결과 통보 : 2002. 5. 15.</li> </ul>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li> </ul>
5. 비고	

제8차 전원회의(2002. 4. 1.)	제2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는 시 교육청 교육감인 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8.경 관급 학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업자로부터 금 3억원을 수령한 후, 동 금액을 자신이 입후보한 교육감 선거에서 각종 지원을 해준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예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li> </ul> </li> </ul>	
<p>2. 의결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는 본건 신고내용을 품문으로 들었다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음(확인절차를 거부)</li> </ul>	
<p>3. 의결결과 : 불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5. 비고	

제8차 전원회의(2002. 4. 1.)	제3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들은, 공공기관 연구원 소속 겸사역 등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 구내식당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특정업체 대표자로부터 해외 여행 가이드를 받는 등의 유착관계에 기초하여 동 업체를 선정하고,</li> <li>- 건강검진 병원 지정에 있어 검진장비 부족 등 자격이 부족한 병원을 무당하게 지정하였으며,</li> <li>- 연구원 예산을 전용하여 개인 용도의 노트북 2대,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li> </ul> </li> </ul>	
<p>2. 의결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내식당 위탁관리업체와 피신고자들 사이에 외국 여행 동반 사실 및 업체에 대한 편의제공(이행보증금 과소 수령, 종업원 고용승계조항의 변경 혜택 부여 등) 사실이 인정되고,</li> <li>- 건강검진 지정 병원의 경우 검사항목수 및 검진장비 구비의 면에서 자격요건 부족의 점 인정되므로,</li> </ul> </li> <li>○ 해당 연구기관의 감독기관으로 이첩함이 상당함</li> </ul>	
<p>3. 의결결과 : 국무조정실로 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법사항 발견하지 못함(이행보증금 과소 수령 문제는 기러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주의조치된 사안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위법사항이나 의무위반 사항 발견되지 아니함)</li> <li>* 처리결과 통보 : 2002. 5. 24.</li> </ul>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li> </ul>
5. 비고	

제8차 전원회의(2002. 4. 1.)	제3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는, 농업에서 근무하는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 담당자인 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 7.- 10.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한 농업경영 개선자금 54억원을 대출 지원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치 아니하고 수십명의 무자격자에게 불법 대출하여 수십억원의 공공기금을 낭비함</li> </ul> </li> </ul>	
<p>2. 의결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는 농업 내부고발자로서 불법 대출의 방법, 규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조사기관의 조사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li> <li>○ 신고자의 본건 신고 이전, 진정(감사 및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농업중앙회 지역 본부에서 이미 조사절차가 진행중인 점 참작함</li> </ul>	
<p>3. 의결결과 : 농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로 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대출 책임있는 농업 관계자 3명(조합장, 상무, 담당자 각 1명)을 조합 내부 감사 위원회에 정계요구</li> <li>* 불법 대출 기금 15억여원중, 승인취소된 2억 5백만원 회수</li> <li>* 처리결과 통보 : 2002. 6. 5.</li> </ul>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li> </ul>
5. 비고	

제8차 전원회의(2002. 4. 1.)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는 지하철공사로서, 지하철역 구내 상가의 임대, 관리 업무를 하여 오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1. 지하철역 구내 기존 상가 347개소를 임대함에 있어, 148개소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고가로, 나머지 199개소는 불법 수의계약에 의해 저가로 각 임대하고,</li> <li>- 2002. 2. 신규 조성 상가 120개소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 일반인에게 공고후 경쟁입찰 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사 퇴직자에게 수의계약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li> </ul> </li> </ul>	
2. 의결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상가 199개소의 수의계약 부분은, 기존 점유자와의 특약 관계에 기초하여 제소전 화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 발견되지 아니함</li> <li>○ 다만, 신규 조성 상가 120개소를 퇴직자에게 수의계약한 부분은, 비록 초과인력 해소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해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내부 규정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재산의 적법한 관리, 운영이라 보기 어려움</li> </ul>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해당 공사에 대하여, 관계 규정 개정을 거쳐 신규조성 상가를 일반경쟁입찰로 임대하도록 통보 ※ 처리결과 통보 : 2002. 7. 3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9차 전원회의(2002. 4. 15.)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는 서울시 구청장인 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 7. 신고자의 적법한 정화조 청소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존의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에 대한 특혜 유지를 위해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li> <li>- 2002. 2. 신고자가 위 허가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후 영업허가를 득하고 정화조 청소를 영위하려 하자 기존 대행업자에 대한 특혜를 지속할 목적으로, 기존 조례상의 허가취소 규정을 변경하고, 신고자에게 청소업 대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li> </ul> </li> </ul>	
2. 의결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증거서류에 의하여 허가신청 반려, 조례 변경 및 대행계약 체결 거부 등의 사실 인정되고, 그에 따라 사실상 기존 업체의 독점적인 지위가 보장되고 있는 결과이므로, 피신고자의 관련 처분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의 조사가 필요함</li> <li>※ 토의사항 : 본건과 관련하여 청소대행계약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후 권고하기로 함</li> </ul>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불분처리(기존 업체와 유착한 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아니하며, 감사진행중 신고자가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영업을 개시하고 또한 관련 조례의 변경에 대하여는 계류된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는 점 참작) ※ 처리결과 통보 : 2002. 9.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연안 : 제2002-124호 「청소대행계약의 특혜 관련 권고」	

제9차 전원회의(2002. 4. 15.)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들은, 광역시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및 체육진흥 업무 관련 공기업 담당자들인 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 12. 광역시내 특정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유원지 지구 내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동 지구내에는 경륜법상의 '장외사업소'의 설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 장외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불법으로 변경 인가하여 주고,</li> <li>- 2001. 2. 위 불법 변경 인가 계획에 기초한 장외사업소 설치를 위하여 위 유원지 지구내 건물에 임차함에 있어, 다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도 강구하지 않은 채 임차하면서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한 결과, 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실을 초래함</li> </ul> </li> </ul>	
2. 의결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증거서류에 따르면 위 실시계획의 불법 변경 인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 및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li> <li>○ 다만, 피신고자들의 금품수수 등 구체적인 부패행위의 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음을 감안하여 감사원으로 이첩함이 상당함</li> </ul>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광역시 담당 공무원 2명(4급, 6급 각 1명) 징계요구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위법 변경 인가 책임 - 공기업 임,직원 3명(1급, 3급, 5급 각 1명) 징계요구 ※ 장외사업소 설치를 위한 건물임대차계약 관리 업무 태만 ※ 처리결과 통보 : 2002. 8.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9차 전원회의(2002. 4. 1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는, 입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지도원(3급)인 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 4. 위 조합 소유 목욕 1,030주를 대금 130여만원에 판매한 후, 동 대금을 조합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li> </ul> </li> </ul>	
2. 의결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 제출의 영수증 기재내용과 조합에 대한 입금사실 확인 결과를 종합하면, 판매대금 미입금 사실 인정되므로 대금 소비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li> </ul>	
3. 의결결과 : 조합 중앙회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본건은 사인간의 목욕 판매행위를 중개한 것으로 횡령 사실은 없으나, 조합의 품위를 손상한 책임을 물어 피신고자의 징계를 요구함 ※ 처리결과 통보 : 2002. 6.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2-42호 공기업의 업체 선정 비리

제9차 전원회의(2002. 4. 15.)	제3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공기업 소속 외주용역 계약 담당자인 바, - '98. - 2002. 공기업이 발주하는 각종 외주 용역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 행위를 함</p>	
<p>2. 의결이유</p> <p>○ 구체적인 금품수수 등 유착행위의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다수의 외주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내용의 신빙성 높다고 판단됨</p>	
<p>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p>- 내사종결(각종 수의계약은 관계 법률 및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이고, 관련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 처리결과 통보 : 2002. 7. 13.</p>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p>-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산업자원부 질의를 통하여 수의계약의 적법성을 확인하였고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추가로 제시할 만한 증거 및 사실 없음)</p>
5. 비고	

제2002-46호 생활폐기물대행업 수의계약 관련 금품수수

제10차 전원회의(2002. 5. 6.)	제1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들은 시장 및 비서실장으로, 브로커 2명과 공모하여, - 2000. 8.- 2001. 10.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 대표자로부터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8천여 만원을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함</p>	
<p>2. 의결이유</p> <p>○ 금품제공자의 진술내용과 관련서류(수표 사본, 시설장비 구입 영수증)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높다고 판단됨</p>	
<p>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p>- 금품수수 관계자 5명(공여자 1명, 브로커 3명, 비서실장 1명) 뇌물 공여 및 수수, 알선수제 등 죄로 각 구속 기소 - 관계자 4명으로부터 금 6,320만원 추정 * 처리결과 통보 : 2002. 6. 29.</p>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p>-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5. 비고	

제2002-47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예산 불법집행

제10차 전원회의(2002. 5. 6.)	제1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서무계장(7급)으로, - 2000. 4.- 6. 결재권자인 사무국장의 결재 없이 약 1억여원의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함</p>	
<p>2. 의결이유</p> <p>○ 신고자가 내부자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불법 집행 내역과 사용처를 진술하지 못함 ○ 해당 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에 이첩함이 상당함</p>	
<p>3. 의결결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p>- 경고조치 (사무국장 결재 없이 약 8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근거서류 보안을 위하여 사무국장 인장을 도용한 사실 확인됨, 예산을 전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은 없음) * 처리결과 통보 : 2002. 7. 19.</p>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p>-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5. 비고	

제2002-48호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부패

제10차 전원회의(2002. 5. 6.)	제1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들은, 도내 4개 시·군 소속 환경 담당 공무원들이나, - 2000. - 2001. 각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정 업체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이후 용역비를 과도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으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함</p>	
<p>2. 의결이유</p> <p>○ 신고자가 구체적인 금품수수의 증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4개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특정 1개 업체가 모두 수탁 관리하고 있는 사실 인정되고, 이미 동종 민원제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병합 수사의 필요성 있음</p>	
<p>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p>- 내사종결(신고자의 추측에 의한 내용으로 범죄의 구체성이 없음) * 처리결과 통보 : 2002. 7. 13.</p>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p>-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5. 비고	

제10차 전원회의(2002. 5. 6.)	제2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피신고자는, 국립 대학교 교수로서 연구소 책임자인 바, - 2000. 8. 바이오 벤처회사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3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해 오던 중, 연구원들의 해외출장비 1.100여만원, 인건비 액수미상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고, - 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타 회사 소유 기자재 시가 2억 6,000만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함	
<b>2. 의결이유</b> ○ 벤처회사 관계자들 진술내용과 연구원들에 대한 녹취록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에 이첩함	
<b>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b>	
<b>4. 처리 결과</b>	<조사기관> - 혐의없음(연구원 등 참고인 진술내용에 의하면 각종 연구비의 개인용도 소비사실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자재 반환거부는 관련 회사와의 민사상 분쟁에 따른 것으로 단순 채무불이행 사안에 불과함) ※ 처리결과 통보 : 2002. 8.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수사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 요구 필)
<b>5. 비고</b>	

제11차 전원회의(2002. 5. 20.)	제1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피신고자는 구청 공무원으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담당자인 바, - '99. 4.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주로부터 해당 건물을 철거함이 없이 영업을 계속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이후 형식적인 철거업무만을 반복해오며 무허가 건축물을 방지하는 부패행위를 함	
<b>2. 의결이유</b> ○ 녹취록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단속 현황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고, 피신고자에 대한 별건 부패행위 수사가 계류중에 있음이 확인되어 병합수사의 필요가 있음	
<b>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b>	
<b>4. 처리 결과</b>	<조사기관> - 내사종결(녹취록은, 대화자들에 대한 진술청취가 불가능한 이상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고, 계좌추적 결과 금품 수수의 증거를 찾을 수 없음) ※ 통보일자 : 2002. 7.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b>5. 비고</b>	

제11차 전원회의(2002. 5. 20.)	제1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피신고자는 구의회 의장으로서 자신 명의로 섬유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 '99. 4. 관공서에 섬유류를 납품하는 보존 단체로부터 관공서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납품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위 단체에 대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섬유회사의 섬유류 등의 원자재를 독점 공급하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여 불법 재산을 축적하는 부패행위를 함	
<b>2. 의결이유</b> ○ 확인 결과, 피신고자 경영 섬유회사에서 상당한 섬유류 제품이 위 단체에 지속적으로 납품되었고, 또한 피신고자가 상당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인정되어, 신고내용의 신빙성 높다고 판단됨	
<b>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b>	
<b>4. 처리 결과</b>	<조사기관> -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없음(위 단체는 조단청 등 중앙 관서에 직접 납품하여 온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포탈 세금 3억여원 추정 ※ 통보일자 : 2002. 11.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처리 - 다만, 신고자에 대한 보상 여부는 조사, 보상심의 이후 결정
<b>5. 비고</b>	

제5차 전원회의(2002. 5. 20.)	제3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피신고자 A는 경찰서장이고, 피신고자 B는 고속도로 건설.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 담당자인 바, - 위 A는, 고속도로 및 대교 공사와 관련, 특정 도선업자들과 유착하여 동인들 소유의 부선, 부교를 도선운항 안전시설로 부당하게 지정하여 주고, 부적격한 도선사업면허를 남발함은 물론, 폐업보상을 위하여 허위로 도선 입.출항 실적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부패행위를 하고, - 위 B는, 도선사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에 있어, 적정 유선 보상이 아닌 고가의 폐업보상을 실시하고 도선 영업권을 과대계상하는 등으로 도선사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b>2. 의결이유</b> ○ 관련 증거서류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관계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b>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b>	
<b>4. 처리 결과</b>	<조사기관> - 영업손실보상금 파다 감정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하여 행정처분(업무정지) 통보 - 공기업 대표자에게 파다 지급된 보상금(295백만원) 환수통보조치 ※ 통보일자 : 2002. 12.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b>5. 비고</b>	

제2002-56호 지방공기업 직원의 주차장 이용대금 횡령

제11차 전원회의(2002. 5. 20.)	제3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는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주차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의 주차권 이외 별도 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대금을 징수하고, 동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 사용하여 액수미상금원을 횡령하고,</li> <li>- 근무복 구매업무를 담당하며 특정 업체의 청탁에 따라 시가보다 훨씬 고가로 구입하여 주고 동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함</li> </ul> </li> </ul>	
<p>2. 의결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대금 횡령 부분은, 신고자가 별도의 주차권을 증거로 제출하고 다른 직원의 동종 횡령행위에 대한 처벌례가 확인되므로 수사기관에 이첩함이 상당함</li> <li>○ 근무복 구매 관련 뇌물수수 부분은, 구체적인 금품 수수에 대한 증거 제시가 없으므로 불이첩함이 상당함</li> </ul>	
<p>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뇌물수수 부분은 불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사종결</li> <li>(증거로 제시된 별도 주차권은 정상 발행 주차권의 부족시를 대비하여 보충용으로 발행된 것에 불과하고, 피신고자의 계좌 추적 결과에 의하면 주차대금의 입금 사실 발견되지 않음)</li> <li>* 통보일자 : 2002. 7. 19.</li> </ul>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결과 수용하여 종결처리(신고인은 조사결과에 불복하며 '이의신청' 하였으나, 신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주장 및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종결)</li> </ul>
5. 비고	

제2002-57호 공기업 지사장 임찰 비리

제11차 전원회의(2002. 5. 20.)	제3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는 공기업 지사장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 12.경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특정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동 업체에 소정 기술자가 근무하지 않아 적격 업체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적격 심사 항목을 부당하게 평가하여 주는 방법으로 동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부패행위를 함</li> </ul> </li> </ul>	
<p>2. 의결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대한 조회 결과, 소정 기술자가 임찰 당시 해당 특정 업체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타 업체에 근무한 사실 확인되는 등 신고내용의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나, 금품수수 등의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으므로, 감사원 이첩이 상당함</li> </ul>	
<p>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위 책임 있는 공사 임원 2명(2급 및 4급) 각 문책 요구</li> <li>* 통보일자 : 2002. 8. 30.</li> </ul>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li> </ul>
5. 비고	

제2002-63호 군수의 직위이용 부당행위 재조사요구

제11차 전원회의(2002. 5. 20.)	신고심사국
<p>1. 의안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으나, 검찰에서 수사후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해 온 제2002-14호 「군수의 직위이용 부당행위 조사요구」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재조사 요구를 결정함</li> </ul>	
<p>2. 의결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가 수사절차에 이의(피신고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군청 및 업체 관계자 진술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에 반하여 신고자 진술은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를 제기하면서 수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고,</li> <li>○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이설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동의서의 인장이 도용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므로, 재조사를 요구함이 상당함</li> </ul>	
<p>3. 의결결과 : 대검찰청에 재조사 요구</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혐의없음(다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이설사업과 관련한 주민동의서 위조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나, 신고자와 명의를 침해 당한 주민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입건을 유예함)</li> <li>* 통보일자 : 2002. 8. 23.</li> </ul>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li> </ul>
<p>5. 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의안 : 제2002-14호 (2002. 3. 4.) 「군수의 직위이용 부당행위」</li> </ul>	

제2002-64호 병역특례대상자 위장취업 재조사요구

제12차 전원회의(2002. 6. 3.)	제1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으나, 검찰에서 수사후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해 온 제2002-15호 「병역특례대상자 위장취업 비리」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재조사 요구를 결정함</li> </ul>	
<p>2. 의결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의 금품수수 사실 유무에 대한 조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병역특례자 3명의 사기업체 위장취업 사실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고자 또한 수사결과에 불복하며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조사를 요구함이 상당함</li> </ul>	
<p>3. 의결결과 : 대검찰청에 재조사 요구</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혐의없음(조사결과, 사기업체에 대한 병역특례자 3명의 근무는 지정업체 근무시간 이후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지원한 이외에 위장취업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li> <li>* 통보일자 : 2002. 6. 5.</li> </ul>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조사결과 수용(조사결과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신고자 또한 불복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나, 부패방지법상 '재조사 요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새로운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재신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li> </ul>
<p>5. 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의안 : 제2002-15호 (2002. 3. 4.) 「병역특례대상자 위장취업 비리」</li> </ul>	

제2002-65호 백화점 위법 건축허가 관련 구청직원 비리

제11차 전원회의(2002. 6. 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피신고자는 구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인 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 8. - 2000. 9. 관내 백화점의 주차빌딩 증축과 관련하여, 백화점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위법사항을 묵인하여 허가를 내어주고,</li> <li>- 동 백화점의 부지 소유권을 토지대장상에 변경 등재함에 있어, 국가 지분 약 1.94평 시가 4,000만원 상당의 등재를 누락하여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li> </ul>	
2. 의결이유	
<p>○ 확인 결과 위법 건축사항 발견되므로 해당 부분은 감사원에 이첩하되, 부지 소유권 부분은 궁극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신고자 주장만으로는 부패행위 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첩함</p>	
3. 의결결과 : 위법 증축 허가부분을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법성 발견되므로, 해당 구청장에게 주의조치</li> <li>※ 통보일자 : 2002. 7. 31.</li> </ul>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li> </ul>
5. 비고	

제2002-66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 사업비 낭비

제12차 전원회의(2002. 6. 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피신고자는 시장으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도 관내 지역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특정 업체와 유착하여 동 업체가 인원과 장비를 과다 계상하여 산출한 사업비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하여 수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li> <li>- 그의 다른 청소대행 업체와의 동종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같은 방법으로 거액의 예산을 낭비함</li> </ul>	
2. 의결이유	
<p>○ 임금대장, 청소대행업체 도급계약서 기재내용 등이 신고자의 주장 내용에 부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조회 결과 특정 업체의 근로자로 등재된 일부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 용역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p>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대행용역 원가계산업무 부당 처리하여 10억 1,500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관계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요구</li> <li>- 해당 시장에 대하여는 위 금원 회수 및 제도개선 조치요구</li> <li>※ 통보일자 : 2003. 1. 6.</li> </ul>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li> </ul>
5. 비고	
<p>- 관련 의안 : 제2003-143호 (2003. 10. 20.)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제2002-67호 군납서류 허위작성 국가예산 횡령 비리

제12차 전원회의(2002. 6. 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피신고자들은, 해병여단 보급 담당 군인 및 단위 농협 직원들인 바, 해병여단에 대한 농협의 식료품 납품에 있어 허위 서류 작성 등의 방법으로 납품 대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한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12. - '97. 4. 실제로는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시가 합계금 1억 4,5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납품 받은 것처럼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 비치하고 동 금액을 수령한 다음,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함</li> </ul>	
2. 의결이유	
<p>○ 비록 동일 내용의 비리에 대한 진정사건이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농협 납품 담당 직원의 사망 등 이유) 되었다 하더라도,</p> <p>○ 신고자가 제출하는 판매장부 등 관계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실제 납품 내역과 다른 허위 판매서류 작성 및 이에 대한 군부대 관계자의 비리 묵인 등 부패행위 가능성 높다고 판단되므로,</p> <p>○ 군부대 관계자의 비리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p>	
3. 의결결과 : 국방부로 이첩	
4. 처리 결과	<p>&lt;조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사종결(본건 이전에 이미 2회에 걸쳐 군검찰 수사가 이루어 졌고 그 결과 모두 내사종결 또는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으로, 신고자 진술 이외에 위 처분을 반복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비밀수수 및 사문서 위조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이 명백함)</li> <li>※ 통보일자 : 2002. 9. 25.</li> </ul>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li> </ul>
5. 비고	

제2002-68호 세무공무원의 세무신고대행 관련 비리

제12차 전원회의(2002. 6. 3.)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피신고자는 세무 공무원인 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 - 2001. 전직 세무서 공무원인 무자격 세무사로부터 불법 세무신고 대행 등의 위법사실을 묵인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인의 유혹자점 등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한 불법 세금신고 대행사실을 은폐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습적인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li> </ul>	
2. 의결이유	
<p>○ 신고자가 진술하는 10개 업체의 세금신고 대행 서류의 필적 대조 결과, 그중 3개 업체의 무자격 세무사 신고 대행 사실 확인됨</p> <p>○ 피신고자의 구체적인 금품수수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 국세청으로 이첩함</p>	
3. 의결결과 : 국세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p>&lt;조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문처리(피신고자의 대행 신고 건수는 100여건이 아닌 5건에 불과하고, 피신고자는 거소 불명의로 조사치 못하였으나 계산관계 조사 결과 거액의 수수료 취득 사실 발견되지 않음)</li> <li>※ 통보일자 : 2002. 8. 6.</li> </ul>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추가 설명요구, 회신 검토 필)</li> </ul>
5. 비고	

제13차 전원회의(2002. 6. 17.)	제1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피신고자는 검찰청 마약수사반원인 바, 관내에서 유흥주점, 오락실, 유탄 업소를 순차로 운영해 온 특정 업주와 유착관계를 맺고, - '98. - '99. 3. 동 업주로부터 유흥주점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 줄 것을 부탁받고, 수회에 걸쳐 금 2,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 '99. 5. 동 업주로부터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과 10만원권 구두상품권 40장 등 합계 1,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 '99. 7. - 2000. 3. 동 업주로부터 유탄업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시로 성상납을 받음	
<b>2. 의결이유</b> ○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나,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간접정황에 비추어 부패행위 개연성 있으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b>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b>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협의없음(피신고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신고자가 본인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지목하는 주요 참고인이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며, 신고자는 당초 진술에서의 공여 금품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한 진술을 반복하여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신고자가 특정하는 계과 추적 결과도 금품 수수 사실 미발견) ※ 통보일자 : 2002. 12.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13차 전원회의(2002. 6. 17.)	제3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피신고자는 공공 연구원 소속 특정 국책 연구과제 총괄 책임자로서, - 2000. 6.경 특정 국책 연구과제로 개발된 시제품에 용접 불량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그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본제품 생산을 강행하여 국가예산 약 230여억원을 낭비하였고, ○ 관련 감독기관은, 동 연구원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함	
<b>2. 의결이유</b> ○ 관련 이메일과 우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시제품 하자에 대하여 관련 연구진에서 상당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던 점 엿보이므로 하자내용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b>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b>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예산낭비 및 감독기관등의 관리.감독 등 협의없음 (관련 사항을 외국전문가 및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 통보일자 : 2004. 6. 30(재조사 결과 접수)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13차 전원회의(2002. 6. 17.)	제3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수행하는 공기업인 바, - 2002. 4. - 5. 동 공사의 전면 책임감리용역 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함에 있어, 적격심사시 책임감리원 중복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 소정 기준에 따라 업무중첩도를 적용, 0점으로 채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위배하여 가점(4점)을 부여 하는 방법으로 무자격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부패행위를 함	
<b>2. 의결이유</b>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적격심사기준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신고내용의 신빙성 있다고 판단됨	
<b>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b>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불문처리(조사결과 용역계약 발주 당시 중복 근무 사실 있다 하더라도, 실제 감리기간이 중복되지 않음이 확인되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 ※ 통보일자 : 2002. 9.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13차 전원회의(2002. 6. 17.)	제1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피신고자들 4명은 경찰관들이고, 피신고자들 2명은 검찰청 과장급 간부들인 바, 부천 지역 주택조합사건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을 담당하면서, - 위 4명의 경찰관들은, 2000. 8. - 2001. 11. 고소, 고발 사건의 수사 청탁과 함께 주택 조합 사업 관계자로부터 5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뇌물을 각 수수하고, - 위 2명의 검찰 공무원들은, 2001. 1. - 11. 고소, 고발 사건의 수사 청탁과 함께 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에서 3,000여만원까지 뇌물을 각 수수하고, ○ 위 주택조합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뇌물을 제공 하고 약 440여억원 상당의 부당 어음 할인, 회수행위로 동액 상당의 공적 자금의 손실을 초래함	
<b>2. 의결이유</b> ○ 참고인들 진술내용과 자금지출내역서 등 관련 서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매우 높으므로 대검찰청에 이첩 (공적자금 손실 부분에 대하여 이미 서울지검에서 조사중에 있는 점도 참작)	
<b>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b>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검찰공무원 2명, 경찰공무원 3명 각 구속 기소(경찰 공무원 1명은 내사중지) ※ 통보일자 : 2002. 8.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2-86호 공무원의 출장비 유용 등 부패행위	
제14차 전원회의(2002. 7. 8.)	제3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피신고자는 보호관찰소 조사과장으로, - 2001. - 2002. 출장명령서를 허위 작성·비치하는 방법으로 수권만원의 비자금용 조성을 한 후, 회식비나 개인 용도로 전용하여 횡령하고, - 그의 자신은 무단 결근, 이석 등의 근무태만을 일삼는 한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회식에 강제로 참석하게 하고 술값을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각종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직권을 남용함	
<b>2. 의결이유</b> ○ 관련자 진술내용과 출장서류 등 기재내용에 의하면, 대부분의 신고내용 신빙성 인정되므로 감사원에 이첩함	
<b>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b>	
<b>4. 처리 결과</b>	<조사기관> - 기관주의 처분(990여만원의 출장비 허위 수령후 파회 식비 등으로 전용) - 피신고자는 의원면직 처분 ※ 통보일자 : 2002. 10. 1.
	<위원회 검토의견> - 처리결과 수용하여 종결
<b>5. 비고</b>	

제2002-87호 장관급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재정신청	
제14차 전원회의(2002. 7. 8.)	제3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위원회에서 대검찰청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수사후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하여 온 제2002-26호 「장관급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고발 1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함	
<b>2. 의결이유</b> ○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는 신빙성 있는 신고자의 진술을 믿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신청을 의결함 ※ 구체적인 재정신청 사유는 '별지' 참조	
<b>3. 의결결과 :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b>	
<b>4. 처리 결과</b>	<서울고등법원> - 재정신청을 기각함 ※ 결정일 : 2002. 8. 14.
	<위원회 검토의견> - 처리결과에 의문이 있으나,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여도 번복될 가능성 없으므로 재항고 하지 않기로 의결함 (다만 고위공직자 고발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법 개정예 반영)
<b>5. 비고</b> - 관련의안 : 제2002-26호 (2002. 3. 30.) 「장관급 고위공직자 비리」	

<별지> 구체적인 재정신청 사유	
<b>○ 검찰 무혐의 처분 이유 요지</b> - 피신고자는 명절 때 양주 등 의례적인 선물 이외에 승진정탁 관련 금품 수수 사실 일체를 부인함 - 관용차 운전기사 및 회식 참석자들의 일부 진술내용이 피신고자의 변명에 부합함 - 신고자의 진술(일부 금품 공여사실의 공여 정황 등에 대한 신고자의 진술이 수차례 반복되어 일관되지 아니하며, 금품 공여에 불구하고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고자 진술을 믿기 어려움) 이외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b>○ 재정신청 사유</b> - 신고자는 일부 사실에 대한 자신의 진술변복은, 검찰에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에 당황하여 말미암은 것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표시함 - 피신고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는 참고인들의 진술내용이 오히려 고위공직자인 피신고자의 신분과 위치에 기인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가능성 높음 -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부 현금 공여에 대하여는 자금 출처에 대한 예금거래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높다고 판단됨	

제2002-88호 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재정신청	
제14차 전원회의(2002. 7. 8.)	제3분과위원회
<b>1. 의안개요</b> ○ 위원회에서 대검찰청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수사후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하여 온 제2002-27호 「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고발 2,3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함	
<b>2. 의결이유</b> ○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는 신빙성 있는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믿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신청을 의결함 ※ 구체적인 재정신청 사유는 '별지' 참조	
<b>3. 의결결과 :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b>	
<b>4. 처리 결과</b>	<서울고등법원> - 재정신청을 기각함 ※ 결정일 : 2002. 8. 14.
	<위원회 검토의견> - 처리결과에 의문이 있으나,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여도 번복될 가능성 없으므로 재항고 하지 않기로 의결함 (단, 고위공직자 고발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법 개정예 반영)
<b>5. 비고</b> - 관련의안 : 제2002-27호 (2002. 3. 30.) 「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	

<별지>	구체적인 재정신청 사유
<p><b>○ 검찰 무협의 처분 이유 요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는, 인사청탁 등 대가성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고 특히, 카세트 공여 및 수수는 자신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부인함</li> <li>-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내용이 위 변명에 부합함</li> <li>- 본건은 200여만원 상당 카세트를 공여자 스스로 교부하였다가 곧바로 되돌려 받아 온 사건에 불과하고, 신고내용은 상가개발업체 동업자 사이에 발생한 이권 다툼에서 비롯된 신고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이며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li> </ul> <p><b>○ 재정신청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건 금품 수수가 이루어진 시점은 피신고자가 검찰 요직에 기용되기 1년여 전으로 인사청탁의 필요성이 매우 높았으며, 공여자와 당해 피신고자는 각종 기념식에 동석하는 등 평소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사실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고 내용의 신빙성 매우 높음</li> <li>- 이에 반하여 피신고자의 변명에 부합한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은 공여자와 감정적 대립관계에서 이루어진 진술로 믿을 수 없고, 특히 카세트 시가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1,500여만원 이상의 고가품이 거래되기도 하였다는 해당 점포 직원의 진술이 확보되었음</li> <li>-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이 가므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의결함</li> </ul>	

제2002-89호 공사수주 관련 금품수수					
제15차 전원회의(2002. 7. 15.)	제3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는 공기업 소속 간부(1급)인 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 7. - 8.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해당 공기업이 발주하는 펄프장 공사를 도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합계금 7,000만원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함</li> </ul> </li> </ul> <p>2. 의결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인들 진술내용 및 피신고자 작성 차용증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li> </ul> <p>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p> <p>4. 처리 결과</p> <table border="1"> <tr> <td>&lt;조사기관&gt;</td> <td>- 기소중지(뇌물수수 혐의 인정되나, 피의자 소제불명) ※ 처리결과 통보 : 2002. 9. 11.</td> </tr> <tr> <td>&lt;위원회 검토의견&gt;</td> <td>-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td> </tr> </table> <p>5. 비고</p>		<조사기관>	- 기소중지(뇌물수수 혐의 인정되나, 피의자 소제불명) ※ 처리결과 통보 : 2002. 9.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조사기관>	- 기소중지(뇌물수수 혐의 인정되나, 피의자 소제불명) ※ 처리결과 통보 : 2002. 9.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2002-90호 소방공무원 부당채용 등 비리					
제15차 전원회의(2002. 7. 15.)	제3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들은 시 소방본부 항공대장 및 소방본부 감찰부서장인 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항공대장은, 2000. 8. 소방 헬기조종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공고된 비행경력에 미달하게 되자, 군부대 및 전 근무지 비행경력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여 부당하게 채용되고, 2001. 10. 사건 허가 없이 5회에 걸쳐 자신이 조종하는 헬기에 민간인을 탑승 시켜 항공사건을 활영하게 한 후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고,</li> <li>- 위 소방본부 감찰부서장은, 신고자로부터 위의 비리사실을 제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함</li> </ul> </li> </ul> <p>2. 의결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행경력 조회 결과 허위 비행경력 증명 사실 인정되고, 신고자의 본건 이전 문제제기에 불구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절차, 결과가 적절치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됨</li> </ul> <p>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p> <p>4. 처리 결과</p> <table border="1"> <tr> <td>&lt;조사기관&gt;</td> <td>- 비행경력 허위 제출하여 부당 임용된 항공대장의 임용 처분 취소와 전 근무지의 허위 경력증명 발급 책임자에 대한 주의촉구 조치를 각 통보 ※ 통보일자 : 2002. 11. 22.</td> </tr> <tr> <td>&lt;위원회 검토의견&gt;</td> <td>- 처리결과 수용하여 종결</td> </tr> </table> <p>5. 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의안 : 제2002-153호(2002. 12. 16.) 「신분보장조치요구 조사기간 연장」</li> </ul>		<조사기관>	- 비행경력 허위 제출하여 부당 임용된 항공대장의 임용 처분 취소와 전 근무지의 허위 경력증명 발급 책임자에 대한 주의촉구 조치를 각 통보 ※ 통보일자 : 2002. 11. 22.	<위원회 검토의견>	- 처리결과 수용하여 종결
<조사기관>	- 비행경력 허위 제출하여 부당 임용된 항공대장의 임용 처분 취소와 전 근무지의 허위 경력증명 발급 책임자에 대한 주의촉구 조치를 각 통보 ※ 통보일자 : 2002. 11. 22.				
<위원회 검토의견>	- 처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2002-91호 국립대학교 총장의 외국박사 학위 알선비리					
제15차 전원회의(2002. 7. 15.)	제2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 - 2002. 박사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교수들에게, 러시아에 있는 자매결연 대학교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해준다며 경비 및 알선비 명목으로 교수 1인당 5,000만원을 교부받아 그중 1,000만원은 자매결연 대학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착복하는 방법으로 총 30여명 교수로부터 합계금 1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li> <li>- 2002. 2. 자신이 임후보한 총장 선거시, 선거권이 있는 교수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수백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함</li> </ul> </li> </ul> <p>2. 의결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로부터 관련 경비내역을 기재한 피신고자의 메모가 제출되고, 자매결연 러시아 대학교에 대한 조회 결과 '96. - 2000. 총 26명의 한국인에게 박사학위가 발급되었고 해당 학위 취득자들은 대회 8일 정도 1-3회 러시아를 방문한 점 등이 확인되므로, 해당 박사 학위 취득 과정의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구조적 비리 혐의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li> </ul> <p>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p> <p>4. 처리 결과</p> <table border="1"> <tr> <td>&lt;조사기관&gt;</td> <td>- 혐의없음(피신고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관련 학위취득 교수들의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는 신고자의 최초 진술만으로는 혐의 인정할 수 없음) ※ 통보일자 : 2002. 9. 26.</td> </tr> <tr> <td>&lt;위원회 검토의견&gt;</td> <td>- 추가 증거확보 불가능한 사정을 감안, 조사결과를 수용하되, 외국박사 학위 취득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하여 필요시 권고하기로 의결함</td> </tr> </table> <p>5. 비고</p>		<조사기관>	- 혐의없음(피신고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관련 학위취득 교수들의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는 신고자의 최초 진술만으로는 혐의 인정할 수 없음) ※ 통보일자 : 2002. 9. 26.	<위원회 검토의견>	- 추가 증거확보 불가능한 사정을 감안, 조사결과를 수용하되, 외국박사 학위 취득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하여 필요시 권고하기로 의결함
<조사기관>	- 혐의없음(피신고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관련 학위취득 교수들의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는 신고자의 최초 진술만으로는 혐의 인정할 수 없음) ※ 통보일자 : 2002. 9. 26.				
<위원회 검토의견>	- 추가 증거확보 불가능한 사정을 감안, 조사결과를 수용하되, 외국박사 학위 취득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하여 필요시 권고하기로 의결함				

제16차 전원회의(2002. 8. 19.)	제1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부시장으로서, - '98. 5.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종합운동장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설계용역자로 선정된 건축사무소와 유착하여 행정자치부 등의 심사 승인도 없이 사업비를 과다 증액하고, 시장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면서 '98. 12. 실시 설계비 명목으로 38억원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함</p>	
<p>2. 의결이유</p> <p>○ 관련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의 사전 심사 승인 없이 과다한 사업비 증액이 이루어 지는 등의 사업추진의 부적정성에 대하여, 2000. 4. 이미 감사원의 감사를 통하여 시정 처분(관련자에 대한 주의처분 및 예산낭비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상 변상판정 불가 판단)이 이루어 졌고, 달리 부패행위 등 새로운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함</p>	
<p>3. 의결결과 : 불이첩</p>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고	

제17차 전원회의(2002. 9. 2.)	제1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시의 국장으로, 세계대회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 2002. 5. 동 대회의 주류공급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의 선처 부탁과 함께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p>	
<p>2. 의결이유</p> <p>○ 신고자가 제출하는 녹취록 기재내용에 의하면, 공여자가 금품 제공 사실 여부의 물음에 대하여 명시적 답변 없이 사실로 전제하는 듯한 언동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p>	
<p>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압수수색 결과 및 금품수수 관계자들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 이외에 혐의를 인정할 증거 없음) * 통보일자 : 2002. 11. 16.
	<위원회 검토의견> - 처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17차 전원회의(2002. 9. 2.)	제2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들 39명은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들인 바, - 2002. 3. 관련법 규정에 의한 겸직금지외무 규정에 불구하고, 영리법인인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여 급여 등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p>	
<p>2. 의결이유</p> <p>○ 관계 자료를 확인한 결과 9개 국,공립대 교수 39명이 영리법인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고,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결과도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해당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p>	
<p>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불문처리 (실정법에 위반된 것은 사실이나, 2002. 12. 5.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합법화 되었고, 2003. 3. 6.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사외이사 겸직 해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통보일 : 2003. 1.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17차 전원회의(2002. 9. 2.)	제2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공기업의 각 부서 책임자들인 바, - 실제로는 소속 직원의 출장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각종 출장 서류를 허위로 소급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월 1개 부서당 30-40만원씩 100여개 부서 합계 약 4억원(1년간)의 출장비를 부정 지급후, 이를 부서비 등으로 전용하여 예산을 낭비함</p>	
<p>2. 의결이유</p> <p>○ 관계 출장서류의 결재 형식 등을 확인한 결과,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p>	
<p>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조사결과 해당 공기업의 자체 감사를 통하여 비위 관계자 총 48명에 대한 징계 처분(1급 1명 견책, 나머지는 경고 및 주의 처분), 허위 출장비 700여만원 회수 및 출장통제제도 강화 등의 제도개선 사실 확인 * 통보일자 : 2002. 10. 17.
	<위원회 검토의견> - 처리결과 수용하여 종결
<p>5. 비고</p> <p>- 관련연안 : 제2002-152호 (2002. 12. 16.) 「출장비 부정지급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제2002-108호 공립 중학교 교장의 금품수수

제17차 전원회의(2002. 9. 2.)	제2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공립 중학교 교장으로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 - 2002.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사 수고비 명목으로 1,200만원, 시험채점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 등을 교부받고,</li> <li>- 교장실에서 특정학생에 대한 불법 과외, 학생회장 선거시 부당 개입 및 학생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각종 부패, 위법 행위를 자행함</li> </ul>	
<p>2. 의결이유</p> <p>○ 신고자로부터 제출된 학부모들 사실확인서, 녹취록 및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투명하지 아니한 금품수수의 개연성 높으므로, 감사원에 이첩함이 상당함</p>	
<p>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장 1명 경고, 교감 등 3명 주의(교재 구입 등 명목 금 1,400만원 모집하여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미입금 사용, 다만 개인 용도 전용은 없음)</li> <li>* 통보일자 : 2003. 1. 11.</li> </ul>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li> </ul>
5. 비고	

제2002-109호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

제17차 전원회의(2002. 9. 2.)	제2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들은, 건설교통부 및 구청 공무원들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 7. 주상복합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 시공업체와 유착하여 다수의 부실시공 결과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사용승인을 해주는 부패행위를 함</li> </ul>	
<p>2. 의결이유</p> <p>○ 부실시공 결과통보서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승인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p>	
<p>3. 의결결과 : 감사원 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 처리</li> <li>(일부 부실 시공의 점은 인정되나 이미 사용승인 이전 시정조치 완료되었고, 기타 관련 공무원의 유착혐의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li> <li>* 통보일자 : 2003. 3. 27.</li> </ul>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li> </ul>
5. 비고	

제2002-110호 허위문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비리

제17차 전원회의(2002. 9. 2.)	제3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사기업체 경영자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10. 사실은 A업체로부터 금 7,600만원에 구입한 절단가공기를, 마치 B업체로부터 금 1억 7,80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위조, 행사한 후 공기업이 주관하는 정책자금 2억 6,800만원을 대출받아서도, 그 번거로움에 이를 번거하지 않아 공기업으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하여 공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를 함</li> </ul>	
<p>2. 의결이유</p> <p>○ 물품구매계약서, 대위변제증서, 기계 공급업체 관계자 사실확인서 등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높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p> <p>* 토의사항 : 민간인이 부패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의 해석상, 주체에 대하여 공직자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행위 내용에 의하면 민간인의 공공기관에 대한 범행위반행위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석</p>	
<p>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는 구속 기소, 공범자 1명은 불구속 기소</li> <li>* 통보일자 : 2002. 11. 4.</li> </ul>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리결과 수용하여 종결</li> </ul>
5. 비고	

제2002-114호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등

제18차 전원회의(2002. 9. 16.)	제1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경찰서 경리계장으로서, 각종 공사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4. - 2002. 8. 건설 공사업자와 유착하여, 허위 공사대금 지출 결의서 작성 등으로 공사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li> <li>- 소속 직원들 명의로 허위의 출장명령서를 작성,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후 이를 횡령함</li> </ul>	
<p>2. 의결이유</p> <p>○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각종 지출결의서 사본 등 관계 서류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높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p>	
<p>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고자를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횡령금 환수 조치), 뇌물 수수 혐의는 공여자 소재불명으로 내사중지</li> <li>- 동종 비리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로 경찰관 14명 입건하여 그중 8명을 구속 기소, 그 외 37명에 대하여 비리 통보</li> <li>* 통보일자 : 2002. 12. 26.(1차), 2003. 3. 26.(2차) 2003. 8. 27.(3차)</li> </ul>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li> </ul>
5. 비고	

제2002-119호 장비 고가정비 의혹 (I)	
제18차 전원회의(2002. 9.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조달본부 관계자인 바, - '97. - 2000. 특정 업체와의 사이에 기존 조달 장비에 대한 정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련 정비지침의 제한 규정(신품 단가의 65퍼센트를 초과하는 정비계약 금지)에 위배하여, 1대당 2,200만원 ~ 3,600만원 상당의 정비비를 책정·지급함으로써 초과금액 상당의 예산을 낭비함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5년간 정비계약중 4년간의 계약내용이 위 제한규정을 훨씬 초과하여 체결(정비가액 신품 단가의 75-94퍼센트에 이룸) 되는 등으로 신고 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정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부적정 사항 개선통보(실제 정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정비계약하는 문제점 등) * 통보일자 : 2003. 4.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56호 (2003. 5. 19.) 「장비 고가정비 및 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 이의신청」

제2002-120호 장비 고가정비 의혹 (II)	
제18차 전원회의(2002. 9.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조달본부 관계자인 바, - '97. 7. - '99. 7. 3차례에 걸쳐 특정회사와의 사이에 기존 조달 장비에 대한 정비계약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함에 있어, 정비물품 재고번호를 조작함으로써 허위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정비가액 산정시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과다하게 고가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24억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함	
2. 의결이유	
○ 정비물품 재고번호 조작에 따른 허위 정비계약 체결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정비가액 산정시 수입부품 가격 책정에 있어 재고 및 계생 물품 사용의 의심이 있음에도 모두 신품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정비 인건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예산 낭비 의혹이 인정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불문처리 (실제 정비에 소요된 물품을 정비 원가에 포함시키는 등 예산 낭비 혐의 발견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3. 4.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56호 (2003. 5. 19.) 「장비 고가정비 및 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 이의신청」

제2002-121호 장비 고가정비 의혹 (III)	
제18차 전원회의(2002. 9.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조달본부 관계자인 바, - '97. 6. - 2000. 12. 2차례에 걸쳐 특정회사와 기존 조달 장비에 대한 정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비물품 재고번호를 조작함으로써 정비대금을 과다하게 계상·지급함으로써 약 42억원의 예산을 낭비함	
2. 의결이유	
○ 정비물품 재고번호 조작에 따른 허위 정비계약 체결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정비가액 산정시 수입부품 가격 책정에 있어 부품 모두를 신품(원 제작국인 미국에서 90년대 초 제작 중년)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정비 인건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의 예산 낭비 의혹이 있음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불문처리 (실제 정비에 소요된 물품을 정비원가에 포함시키는 등 예산 낭비 혐의 발견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3. 4.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56호 (2003. 5. 19.) 「장비 고가정비 및 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 이의신청」

제2002-122호 장비 구매관련 예산낭비 (1)	
제18차 전원회의(2002. 9.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조달본부 관계자인 바, - '95. 7. 기존 조달 장비 2종은 사실상 대부분의 부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당하게 국산개발부품으로 조작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고가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연간 143억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함	
2. 의결이유	
○ 위 2개의 장비 모두 국산개발부품으로 승인된 것이므로 관련 규정상 수의계약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음 ○ 다만, 위 2개 장비의 부품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사실상 국산개발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입 부품 단가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가로 구매된 점을 종합하면,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의혹이 있음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부적정 사항 개선 통보(본건 부품은 실제상 국산화가 어려운 부품이므로 차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방산지정물품에서 제외할 것 등) * 통보일자 : 2003. 4.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56호 (2003. 5. 19.) 「장비 고가정비 및 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 이의신청」

제2002-123호 장비 구매관련 예산낭비 (11)	
제18차 전원회의(2002. 9.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조달본부 관계자인 바, - '95. - 2000. 수종의 장비를 조달함에 있어, 사실은 위 부품 모두가 수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산개발부품으로 조작하여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고가에 납품하도록 하고 거액의 예산을 낭비함	
2. 의결이유	
○ 위 부품 모두 국산개발부품으로 승인된 것이므로 관련 규정상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조달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음	
○ 다만, 위 부품들의 주요 부분이 수입에 의존되고 있고 국산화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산개발부품으로 승인하여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게 지속적인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가격의 고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구매 제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토의사항 : 신고사항 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위법사항의 처리방법('별지' 참조)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부적정 사항 개선 통보(본건 부품은 실제상 국산화가 어려운 부품이므로 차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방산지정물품에서 제외할 것 등) ※ 통보일자 : 2003. 4.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56호 (2003. 5. 19.) 「장비 고가정비 및 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 이의신청」

〈별지〉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위법사항의 처리방법	
○ 문제제기	
- 본건 신고내용은 최초 신고서 내용에 명시적인 적시가 없었고,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위법사항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	
○ 검토결과	
- 본건의 경우는 신고자로부터 당초 신고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 나아가, 당초 신고내용의 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위법 사항이 별개의 부패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 할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는 경우까지, 신고사항으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다만, 당초 신고내용을 이첩, 고발하는 경우에 추가로 발견된 사항을 참고자료로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됨	

제2002-125호 군청 등의 예산낭비	
제19차 전원회의(2002. 10. 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청 및 조달청 관계자들인 바, - '98. - 2002. 군청 관내 레미콘 납품, 조달과 관련하여, 특정 레미콘 업체 2개 회사와 유착하여 동 회사들이 자체 가격을 파다하게 계상·청구한 레미콘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 위 군청의 군수는, 같은 기간중 자신의 친동생에게 제반 시설 공사를 도급하여 주고, 특정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선처부탁과 함께 금 2,000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레미콘 자체대금 산정에 있어 실제 구입 절차와 달리 파다 계상된 점 확인되므로, 예산 낭비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친동생에 대한 공사도급 및 뇌물수수 부분은 구체적 사실, 증거의 제시가 없어 불이첩)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조달청, 군청의 레미콘 납품 가격 파다 책정 인정됨 (파다 지급금 9,900여만원 등 회수, 조달청에 대하여 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 통보, 공무원 8명 주의 처분) ※ 통보일자 : 2003. 8.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178호 (2003. 12. 15.)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2002-126호 경찰공무원의 편파수사 및 뇌물수수	
제19차 전원회의(2002. 10. 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 5명(검찰 일반직 3명 및 파견 공무원 2명)은, 신고자와 관련된 고소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던 중, - 2001. - 2002. 위 사건 관계자 1명으로부터 사건 처리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고 수회에 걸쳐 함께금 250만원을 교부받고, 이어 위 사건 수배자 1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무스탕 5벌 시가 함께금 2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각 수수하고, 사건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현금 250만원 수수 부분은, 공여자는 비록 금품 제공 사실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처리 정황과 신고자가 제출하는 관련 대화 녹음내용을 종합하면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 무스탕 5벌 수수 부분은, 택배회사 운송확인서 기재 및 관계자 진술내용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정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무스탕 5벌 수수한 파견 공무원 1명에 대한 비위사실 통보 - 나머지 혐의 부분은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02. 12.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2-127호 정보통신 관계 연구원의 정부출연금 낭비

제19차 전원회의(2002. 10. 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피신고자들은, 정보통신 관계 연구원장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인 바,                      - 2001. 11. 소정 정부출연 연구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8억원의 기금이 지원되었으나 연구실적 평가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특정 회사에 대하여, 기금회수 절차를 망기한 채 오히려 추가 기금을 지원하여 24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 정보통신부 공무원은, 위 부패행위와 관련된 진정서를 청와대를 통하여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아니한 채 진정서 사본을 위 연구원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정인의 신원과 진정내용을 유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p>	
2. 의결이유	
○ 신고자 제출 서류와 관련 뇌물수수 사건의 범과사실 등을 종합하면,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진정 내용 누설 책임에 대한 감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                      - 기관주의 조치                      (연구과제 평가 업무 소홀 책임 인정되나, 정부출연금의 환수 조치가 진행중이고 당시 연구원장이 이미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함)                      ※ 통보일자 : 2003. 9. 29.</p>
	<p>&lt;위원회 검토의견&gt;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48호 (2003. 4. 21.) 『신분보장조치 요구 조사기간 연장』

제2002-128호 허위계약서 이용 지방세 과소 신고, 납부 묵인

제20차 전원회의(2002. 11. 4.)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피신고자는, 세무공무원으로서,                      - 2002. 2. 특정 2개 업체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2장이 거래 관계 없이 작성된 허위 서류임을 잘 알면서도, 동 업체들과 유착하여 약 7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하여 주는 부패행위를 함</p>	
2. 의결이유	
<p>○ 해당 세금계산서 2장은 부동산 취득,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에 기초하여 진정으로 수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동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 부과, 위 세금계산서상의 취득 가격 보다 훨씬 과소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진 것이 확인되므로, 세금 신고·납입 과정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p>	
3. 의결결과 : 서울특별시로 이첩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                      - 지방세 3억 2,800만원 포탈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고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 요구(포탈세액 추징)                      ※ 통보일자 : 2003. 1. 6.</p>
	<p>&lt;위원회 검토의견&gt;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15호 (2003. 2. 17.) 『허위계약서 이용 지방세 과소 신고, 납부 묵인 사건 이의신청』

제2002-130호 세무공무원의 탈세제보 지연처리 비리

제19차 전원회의(2002.10.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피신고자는,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로서,                      - 2002. 7. 관내 특정 업체의 거액 세금포탈 혐의에 대한 2건의 제보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넘도록 세무조사들 방기한 채 관련 제보내용을 동 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하여 각종 장부와 증빙서류를 폐기 또는 조작하도록 하는 부패행위를 함</p>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하는 탈세제보서 및 첨부 서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매출 누락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금품수수 등의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국세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                      - 탈세업체에 대하여 약 44억원 추징                      (관련 세무공무원의 고의 지연 및 정보 유출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3. 6. 23.</p>
	<p>&lt;위원회 검토의견&gt;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고의 지연 부분 설명 요구 필)</p>
5. 비고	

제2002-134호 진료차트 허위기재 약품착복 등

제20차 전원회의(2002. 11. 4.)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피신고자들은, 군(郡) 보건지소장 및 감사실 담당 공무원들인 바,                      - 보건지소장은,                      2002. 6. 실제로는 보건소 내방 환자들에게 해당 약품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약한 것처럼 진료 일지와 처방전 등 관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동 약품을 착복하는 등 근무기간 내내 같은 방법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 감사실 담당 공무원들은,                      2001. - 2002. 자신들의 가족 및 지인이 관계된 정계 대상자들에 대한 정계 조사 등에 있어, 편파적인 축소 조사와 조사 기밀 누설 등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함</p>	
2. 의결이유	
<p>○ 약품 착복 부분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진료일지를 기초로 표본 환자 2명에게 약품 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령 사실 없음이 확인됨                      ○ 부당 감사 관련 혐의는, 신고자가 제출하는 고발장, 정계결정요구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정계 대상자들이 모두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이 확인되어 신고내용의 신빙성 있다고 판단됨                      ○ 상급 감독기관의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p>	
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로 이첩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                      - 보건지소장은 주의(진료일지 허위기재, 약품 착복 사실 경미)                      - 해당 군의 부군수 및 감사관계자 1명에 대하여는 각 훈계(중정계 대상자를 경정계하여 부당 처리)                      ※ 통보일자 : 2003. 1. 3.</p>
	<p>&lt;위원회 검토의견&gt;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보건지소장의 의료법 위반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통보)</p>
5. 비고	

제2002-135호 국제공항 건설 관련 비리

제20차 전원회의(2002. 11. 4.)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피신고자들은, 국제공항 건설 책임자 및 감독 공무원들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공항내 여객터미널 공사에 있어, 불량한 방수, 내화 등 자재를 사용하고 각종 기초공사 부분을 설계내용과 달리 부실하게 시공하여 거액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이에 유착하여 부실공사를 묵인하는 부패행위를 함</li> </ul>	
2. 의결이유	
<p>○ 신고자가 이미 동일 내용을 검찰, 감사원에 진정하였으나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각종 공사서류 등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차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하고, 동일 내용에 대하여 감사원에 조사절차가 계류중에 있음이 확인됨</p>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처리</li> </ul> <p>(자체 또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하여 46개 사항의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됨)</p> <p>※ 통보일자 : 2003. 1. 10.</p>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li> </ul>
5. 비고	

제2002-140호 체육행사 찬조금 불법모금 및 인사비리

제21차 전원회의(2002. 11. 18.)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피신고자들은, 지역 분부 세관 공무원들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산하 단위 세관을 상대로 찬조금 명목으로 30만원씩의 금품을 강제로 모금하여 직권을 남용하고,</li> <li>- 2002년 사무관 승진 심사와 관련,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다면평가위원 명단 등의 비밀을 누설하고, 취합된 자료를 부당하게 평가하여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는 부패행위를 함</li> </ul>	
2. 의결이유	
<p>○ 객관적인 자료 제출은 미흡하나, 신고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상급 감독관청의 감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됨</p>	
3. 의결결과 : 관세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2명 경고</li> </ul> <p>(산하세관에 대한 금원 강제 지원 및 운영비 전용 등, 다만 인사비리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p> <p>※ 통보일자: 2003. 1. 30.</p>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li> </ul>
5. 비고	
<p>- 관련 의안 : 제2003-170호 (2003. 12. 15.) 『신분보장조치 요구』</p>	

제2002-141호 시청 발주 관급공사 관련 예산낭비

제21차 전원회의(2002. 11. 18.)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피신고자들은, 시청 소속 공무원들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 - 2001.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와 관련, 동 공사를 시공하는 특정 건설업체와 유착하여 공정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주고, 지급이 금지된 수해 복구비를 지급하여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li> <li>- 2002. 하천 정비 공사와 관련, 위 특정 건설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해 주기 위하여 기술사항 평가서를 조작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li> </ul>	
2. 의결이유	
<p>○ 신고자가 제출하는 각종 공사계약서, 감리 및 보험관계 서류를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동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상급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피신고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금품수수 증거 등은 확인되지 않음)</p>	
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로 이첩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비 1억 6,700만원 과다 계상 확인, 수해복구 지원 액중 보험금 수령 부분 반납 토록 조치(현재 진행중 공사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고, 수의계약 관련 유착, 묵인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계 공무원 징계 조치 하지 않음)</li> </ul> <p>※ 통보일자 : 2003. 1. 7.</p>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관계 공무원 징계 조치 여부 설명 요구 필)</li> </ul>
5. 비고	

제2002-142호 농협직원 금품수수

제21차 전원회의(2002. 11. 18.)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피신고자들은, 농협 채권 관리 및 회수 담당자들인 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 11. - 2001. 10. 농협 채권 관리, 회수와 관련한 범원 신청사건의 대행과 관련하여, 특정 범무사에게 독점하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7회에 걸쳐 합계금 210만원을 교부받음</li> </ul>	
2. 의결이유	
<p>○ 신고자의 동일 내용에 대한 진정을 기초로 자체 감사한 결과 비위 사실이 인정됨에도 경고 등의 경미한 처분에 그쳤음이 확인되고,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농협이 부담해야 할 각종 신청 사건 인지대, 송달비 등 약 3,000만원을 특정 범무사에게 대납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p>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선수제 등죄로 피신고자들 2명을 각 불구속 입건</li> </ul> <p>※ 통보일자: 2003. 1. 14.</p>
	<p>&lt;위원회 검토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li> </ul>
5. 비고	

제22차 전원회의(2002. 12. 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피신고자들은, 각 공립 중학교 및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바, - 도 농구협회 이사로서 각 겸직시, 공모하여, '99. - 2001. 한국프로농구연맹의 지원금, 산하 농구팀의 전국체전 포상금, 상급 체육회로부터 수령한 전국체전 훈련비 등 수천만원을 보관중 개인 용도로 전용하여 횡령하고, - 같은 기간중 고등학교 농구부에 대한 우승 포상금, 장학금 합계 2,150만원 및 중학교 농구부에 대한 장학금 200만원을 각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부패행위를 함</p>	
2. 의결이유	
<p>○ 신고자가 제출하는 각 입금 확인서, 송금 내역서, 농구협회 결산서 및 참고인 작성 사실 확인서 등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일부 금액을 관계서류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파다하게 수령하였음에도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지급치 아니한 혐의가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p>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 - 피신고자 1명을 횡령죄로 불구속 입건, 나머지 혐의 부분은 각 내사중결 ※ 통보일자 : 2003. 4. 7.</p>
	<p>&lt;위원회 검토의견&gt;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5. 비고	

제23차 전원회의(2002. 12. 16.)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피신고자는, 제조업체 대표이사로서, - '99. 7.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하는 기계류 19점이 고물에 가까운 노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기계 제작 서류의 제작 연도, 업체를 조작하여 신제품으로 위장한 다음, 공공기관의 대출보증하에 총 2억 3천만원을 대출받고서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위변제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함</p>	
2. 의결이유	
<p>○ 신고자가 제출하는 감정평가서, 참고인들 사실확인서 등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기계의 제작 연도 위조 등 신고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피신고자의 대출 사기, 그와 관련된 부실감정평가 및 대출 심사 관계자의 공범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p>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 - 피신고자를 포함한 편취 사범 3명을 각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3. 2. 25.</p>
	<p>&lt;위원회 검토의견&gt;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5. 비고	

제23차 전원회의(2002. 12.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피신고자는 국립 대학교 교수인 바, 전국 국립대학교 특정 학과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활동하면서, - '99. 3. - 2001. 해당 학과 교수 증원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전국 국립대 해당학과로부터 300만원씩 합계금 2,000여만원을 제공받고, 관계 부처에 동 금액을 교부하는 부패행위를 함</p>	
2. 의결이유	
<p>○ 피신고자 예금계좌에 2,400만원이 입금된 사실과 2001. 11. 국립대 특정학과 교수 45명의 정원이 배정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나, 정확한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 교수 증원의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p>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 - 불문처리 (8개 대학으로부터 총 2,400만원을 각출하여 공동현안 관련 정책 심포지움 개최 등 정상 경비로 지출) ※ 통보일자 : 2003. 10. 28.</p>
	<p>&lt;위원회 검토의견&gt;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5. 비고	

제23차 전원회의(2002. 12.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피신고자는 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 2002. 부대가 운영하는 복지회관 수익금중, 부대지원금을 제외한 수익금 발생시 그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회비' 명목의 공적인 용도로만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1,000여만원 이상의 '지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부패행위를 함</p>	
2. 의결이유	
<p>○ 내부고발자인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 내용에 신빙성 인정되고, 이미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기는 하나 신고자가 편파적인 수사로 오히려 불이익 처분을 당할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면, 감사원의 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됨</p>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p>&lt;조사기관&gt; - 자체 감사로 '견책' 처분 (670여만원 전용사실은 인정되나 개인 횡령 혐의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추가 징계조치 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3. 6. 7</p>
	<p>&lt;위원회 검토의견&gt;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5. 비고	

## II. 申告者 保護補償



□ 깨끗한 시민정신 설 곳 없는 부정부패  
□ 눈길모아 부패감시 손길모아 부패추방

### 제2002-137호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에 관한 건

제20차 전원회의(2002. 11. 4.)	신고심사국
<p>1. 의안개요</p> <p>○ 목 적 부패방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촉</p> <p>○ 주요내용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상임위원을 임명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률전문가 1인, 회계전문가 1인, 감정평가 전문가 1인, 시민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자 1인. - 당연직 위원 선임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심사국장</p>	
<p>2. 심의내용</p> <p>○ 특별한 의견없음</p>	
<p>3. 의결결과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p>	
<p>4. 비고</p>	

II. 申告者 保護補償 ●

### 제2002-152호 출장비 부정지급 부패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23차 전원회의(2002. 12. 16.)	신고심사국
<p>1. 의안개요</p> <p>○ 제2002-107호 「공기업을 출장비 부정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근거한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함</p> <p>※ 위 신고사건 개요 - 신고내용 : 공기업내 출장서류 허위 작성, 행사로 매월 3-40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정지급, 전용하여 예산을 낭비 - 위원회의 감사원 이첩 의결(2002. 9. 2.) - 감사원 조사 결과 통보(2002. 10. 17.) 출장비 부정지급 비위 책임자 48명 징계, 부정지급된 출장비 743만원 환수 조치</p>	
<p>2. 심의내용</p> <p>○ 위와 같이 환수조치된 출장비 743만원은,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를 통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으로 판단됨</p> <p>○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보상대상 가액 기준 10퍼센트 금액인 금 743,000원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함</p>	
<p>3. 의결결과 : 보상금 지급 결정</p>	
<p>4. 비고</p> <p>- 관련의안 : 제2002-107호(2002. 9. 2.) 「공기업 출장비 부정지급」</p>	

● 第1部 議決事項

### 제2002-153호 신분보장 조치요구 조사기간 연장

제23차 전원회의(2002. 12. 16.)	신고심사국
<p>1. 의안개요</p> <p>○ 제2002-90호 「소방공무원 부당채용 등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함</p> <p>※ 위 신고사건 개요 - 신고내용 : 소방본부 관계자들은 헬기조종사 특별채용에 있어, 특정인의 비행경력증명을 허위로 발급, 부당 채용 - 위원회의 감사원 이첩 의결(2002. 7. 15.) -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2002. 10. 7.) - 감사원 조사 결과 통보(2002. 11. 22.) 부당채용자의 임용취소와 허위경력증명 발급 관계자에 대한 징계</p>	
<p>2. 의결이유</p> <p>○ 신고자가 요구하는 신분보장조치에 대한 제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60일간 조사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함</p>	
<p>3. 의결결과 : 조사기간 60일 연장</p>	
<p>4. 비고</p> <p>- 관련의안 : 제2002-90호(2002. 7. 15.) 「소방공무원 부당채용 등 비리」</p>	

II. 申告者 保護補償 ●

### Ⅲ. 制度改善



□ 가꾸어오 바른양심 함께 해오 좋은나라  
□ 함께 가꾼 바른 사회 함께 누릴 밝은 미래

### 공무원행동강령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무원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사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직무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소관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나.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계가 있거나, 있게 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다.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 라. 공무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제15차 전원회의(2002. 7. 15.)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p>○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 등에 권고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고 투명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p> <p>※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설정하여 제시</li> <li>- ‘직무관련자’, ‘선물’, ‘금지되는 영리행위’, ‘특정 이해관계 있는 직무 회피’ 등의 명확한 개념과 범위를 규정</li> <li>-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li> <li>- 일정 부분은 각급 행정기관이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징계 규정 등으로 이행관리를 체계화</li> </ul>	
2. 심의내용	
<p>○ 시민 단체 등 여론의 요구가 높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및 예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고,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 제한은 ‘근무시간내’로 범위를 한정하는 등으로 권고안 전반에 대하여 논의</p>	
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 등 각급 기관에 권고	
4. 권고 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고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 : 별첨

이나 단체

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대가를 지급한다고 하여도 그 대가가 시장가격 혹은 거래의 관행상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물품, 상품권,항공권,승차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등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라 함은 식사,술,골프 등 접대를 하거나, 교통,숙박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공무원의 윤리적 행동기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자신의 직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할 것
  3.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외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고발하는 등 부패 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

#### 제2장 성실한 직무수행

제4조(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요청에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동강령담당관에게 그 지시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담당관은 즉시 지시

내용의 위법·부당 여부를 조사하여, 지시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동강령담당관에게 당해 직무의 회피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요청이 있는 경우 행동강령담당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특정직무를 재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와 차별의 배제) ① 공무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월연·확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무원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예비·업무추진비 등 공무원 활동 예산을 그 지급되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이하 "정당 등"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이를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이하 "정치인"이라 한다)나

정당 등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3. 정치인이나 정당 등을 위하여 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하거나 이의 모집을 지원 또는 방해하는 행위 및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방해하는 행위

4.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 공무원의 비밀 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5.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6.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동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②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담당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담당관은 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장 금품 등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관련자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알선·청탁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알선·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복사기 및 팩시밀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금전·선물·향응 수수의 제한) ①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커피·과일 및 과자 등 다과와 간소한 식사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 등을 포함한다)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및 식사
  3. 일반인에게 널리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 물품이나 기념품
  4.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 허용하는 물품이나 편의
-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정도를 넘어서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행정기관의 장은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원간의 금품 등 수수제한) 공무원은 하급자 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물품이나 식사 접대와 직원 상호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무원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조합·단체 등의 임원이 되는 행위
  3. 공익이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
  4. 그밖에 직무상의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지하는 영리행위
- ② 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외의 영리행위로 얻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공무원으로서 지급받는 연간 보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영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외부강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중에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대가 등을 사전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시로 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대가가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차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채무부담 및 보증의 제한) ① 공무원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위한 보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무와 관련된 기관(행정기관을 포함한다)·단체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통지하는 행위
2. 부고·칭찬·초청장 등에 의한 통지시 직급·직급을 기재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4.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다만, 친족 사이에 수수하는 금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조금품의 수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장 강령의 준수 의무 등

제21조(강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 ① 공무원은 이 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 이 강령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행동강령담당관과 상담한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기관의 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강령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패예방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2회 이상 부패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강령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담당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이 강령의 시행을 전담하는 행동강령담당관을 두고,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담당관은 다른 직위의 공무원으로 겸보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담당관은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 홍보, 상담, 점검·평가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담당관은 이 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행동강령담당관의 임기·자격기준·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강령위반행위의 신고와 조사) ① 누구든지 이 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행동강령담당관의 강령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반자의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강령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정기관의 장과 행동강령담당관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강령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①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소명자료의 심사를 통하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강령위반행위를 신고받은 부패방지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3조·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즉시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비용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이

쉽게 소멸하는 것이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동강령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웃돕기 성금 등 어려운 처지의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제공된 경우
2. 자기가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3. 기타 통상적인 관례의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무와 관련없이 제공된 경우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이 강령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패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부패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9조의 채무부담 및 보증의 제한규정은 이 강령 시행 당시 효력이 있는 채무부담 및 보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차 전원회의(2002. 7. 8)	제2분과위원회
<p>1. 의의개요</p> <p>○ 현행 교원인사제도는 평정권한의 과도한 집중과 승진·정보 등 인사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 등의 사유로 각종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 이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자 함</p> <p>※ 교원 인사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위원회 위원 중 교직원체가 협의추천하는 인사 1인 포함을 의무화하여 독립성 제고</li> <li>- 근무성적 평정시 「동료평가제」 도입</li> <li>- 연구논문 심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li> </ul>	
<p>2. 심의내용</p> <p>○ 교원 인사로 인한 부패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인사평정권의 다원화, 평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체로 하는 제도개선안에 대해 논의</p>	
<p>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p>	
4. 권고 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고	※ 교원인사제도개선 권고안 : 별첨

교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교육인적자원부	권고 번호	제도02-2-1

교원인사로 인한 부패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권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평정권을 다원화하며, 평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

1.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광역·시·도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중 내·외부인사를 막론하고 교직원체간 협의추천하는 인사 1인을 포함시키도록 함
  - 인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결과와 참석위원 명단 등 회의내용을 공개토록 함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 개정]
2. 근무성적 평정시 「동료평가제」도입
  - 근무성적평가에 교장·교감평가 외에 동료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동료교사들 사이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합리성 및 수용성 제고
  - 근무성적의 평정점(60점)중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40퍼센트로 하고, 동료평가의 반영 비율은 20퍼센트로 함

※ 평정점수 반영 비율은 교육부에서 학교장, 교사 등 교육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하도록 함  
⇒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개정]

3. 연구논문 심사의 투명성 확보

- 연구실적 중 연구논문 점수 평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 시도지역 연구논문 발표회에 제출된 논문을 포함한 교원 논문 자료들을 중앙단위에서 일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함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 개정]

제14차 전원회의(2002. 7. 8.)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에 인사권이 독점되어 있으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자치선거를 둘러싸고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성행하는 등의 부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자 함</li> <li>※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li> <li>  민간위원중 직장협의회 추천인사 1인 포함 의무화, 민간위원 임기 단임화,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 등</li> <li>- 승진임용시 「다면평가제」 실시</li> <li>- 지방 5급 공무원 승진시험 실시 의무화</li> <li>- 6급 이하 정보 기준 선정위원회 설치</li> <li>- 인사예고제의 실시 등</li> </ul> </li> </ul>			
2. 심의내용			
○ 개선안의 시행을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부패 소지를 차단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직업 공무원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에 권고			
4. 권고 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고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 권고안 : 별첨		

3. 지방 5급 공무원 승진시험 실시 의무화

- 5급 행정직 공무원 승진 예정인원의 30%이상은 시험 선발을 의무화
  -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결원비율(최고 70%)은 현행대로 각 기초 자치단체장이 자체 서열명부상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임명토록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승진시험비율(최저30%이상)을 협의하고, 그 범위 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시험후보자명부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교류를 확대(지방공무원법 개정)

4. 6급이하 전반기준선정위원회 설치

-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해당분야 직원들이 참여하는 「6급이하전반기준선정위원회」를 운영, 공정한 전반기준 마련
  - 인사위원회에서는 전반기준선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전보심의(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5. 인사예고제의 실시

- 승진과 전보 등 인사의 경우 승진 및 전보 임용기준, 인사일정 등을 사전에 공개토록 의무화
-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임용범위에 포함된 자의 명단을 공개(인사발표 최소 7일전)하고 승진 예고일자에 맞추어 인사 실시(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해당 기관	행정자치부	권고 번호	제도02-2-2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사상 전횡을 견제하고, 인사내용의 투명성·합리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화			

1.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인사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 직장협의회 추천인사 1인을 포함하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개정)
- 인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단임(3년)으로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과 위원 임기가 교차되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개정)
- 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결과와 참석위원 명단 등 회의내용을 공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심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 (예시) 신규충원계획, 각종시험계획 및 합격자결정, 근속승진, 대우 공무원 선발, 계약직공무원 채용심사, 특별 및 전직임용 등

2. 승진임용시 다면평가 실시

- 승진심사에 있어 동료평가 결과 반영을 의무화
  - 하급자 및 민원인의 평가는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함
- 다면평가 방식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10%이상을 반영토록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제19차 전원회의(2002. 10. 7.)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02-39호 「정화조 청소 관련 구청장 부패행위」 사건과 관련, 해당 구청의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상위법에 위반됨은 물론 특정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여 부패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음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자 함</li> <li>※ 위 신고사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요지 : 피신고자는 구청장으로 정화조 청소업 허가자의 정당한 청소대행계약 체결 요구를 거부하고 특정업체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함</li> <li>- 위원회의 감사원 이첩(2002. 4. 15.)</li> <li>- 감사원의 '불문처리' 결과 통보(2002. 9. 30.)</li> </ul> </li> <li>※ 청소대행계약의 특례 관련 권고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업 허가자라 하더라도, 별도로 구청과 청소대행계약이 있어야만 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의 폐지를 권고</li> </ul> </li> </ul>			
2. 심의내용			
○ 상위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규정의 삭제를 권고하기로 함			
3. 의결결과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에 권고			
4. 권고 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고	※ 관련의원 : 제2002-39호 「정화조 청소 관련 구청장 부패행위」 ※ 청소대행계약의 특례 관련 권고안 : 별첨		

청소대행계약의 특례 관련 권고안

해당 기관	구로구청	권고 번호	제도02-1-02
-------	------	-------	-----------

- 구청장은 분뇨처리 등 사업수행에 있어서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가 동 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제 서울시의 경우 대다수의 구청이 구역·지역별로 1개 업체가 청소를 대행토록 하는 제도(지역·구역책임제)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는 원가절감, 안정적 서비스의 공급, 수질환경 보전, 관계 당국의 효율적 감독 등을 위해 일용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단서 조항은 “법원의 판결로 관련 영업허가를 받게 되더라도 구청과 별도의 대행계약이 있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단서 조항 삭제 권고

- 구청장이 분뇨처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허가 업체의 대행계약을 통하여 지역책임제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원가절감 및 관리상의 이유 등으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

항 단서는 “영업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대행계약이 체결되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 제11조 1항 단서)

구청장은 법 제18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제 35조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판결 등으로 분뇨등관련영업(분뇨등 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대행계약이 체결되어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법규상 인정된 허가의 실질적 효력을 하위규정인 조례로 무력화하는 것으로 上位法에 違反되고
  - “법원판결 등으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라고 함으로써 특정대상을 개별·구체적으로 적시한 처분법적 성격을 지니 法規인 條例가 지나야 하는 一般性에 違反되며
  - 아울러, 현행 지역책임제 운용의 취지가 특정 1개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대법원 판례참조) 구로구와 같이 조례를 통해 기존업체에게 사실상 독점적 대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혜 등의 소지가 된다고 판단됨
- ⇒ 따라서 동 區條例 제11조 1항의 但書 條項을 削除토록 권고함

<별첨>

關 聯 法 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 ①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등을 업(이하 “분뇨등관련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오수·분뇨·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조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업구역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량,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양, 분뇨, 축산폐수 또는 오니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 등 관련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분뇨·축산폐수, 오니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 등 처리업 및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11조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판결 등으로 분뇨 등 관련영업(분뇨등 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대행계약이 체결되어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관련판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2001.12.4 2001두7763)

- 기존 업체만으로도 분뇨수집·운반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함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제19차 전원회의(2002. 10. 7.)	제2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연간 3,000억원 이상의 규모인 국민성금의 모금과 사용과정에 대한 각종 정보 공개등을 통한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관련 부패를 예방하고자 함</p> <p>※ 국민성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성금 모금 및 사용내역의 상시 공개 체제 구축</li> <li>- 국민성금의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 의무화</li> <li>-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li> <li>- 국민성금 관련, 지정 금융기관 계좌 및 영수증 사용 의무화</li> <li>- 불법, 부당 성금 운영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li> </ul>	
<p>2. 심의내용</p> <p>○ 개선안 시행으로 국민의 신뢰 제고를 통한 기부 문화 활성화와 부패 예방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p>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에 권고</p>	
4. 권고 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고	※ 국민성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 별첨

2. 사전에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 사용

- 성금모금액 누락 및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정(허가권자,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된 금융기관 계좌 사용

[행정자치부]

1. 성금관리의 체계화

- 기부금의 운영자는 허가권자에게 모금 후 30일 이내에 모금총액을 보고하고, 모금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입.지출결산보고서 보고 의무화
  - 허가권자는 수입.지출결산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의무화
- 허가를 받고 모금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국민성금 수입.지출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부장관이 국민성금백서 발간, 차년도 국회 결산시 보고 의무화

2.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 기부금의 모금이나 사용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확인.검증절차를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 기부금의 수입.지출결산보고서 제출시 일정규모(예 : 1억이상) 이상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수는 모집비용으로 충당

3. 관할 행정기관에서 제작한 영수증 사용 의무화

-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제작한 영수증 사용 의무화

해당 기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권고 번호	제도02-2-3
-------	--------------	-------	----------

국민성금은 연간 3,000여 억원 규모로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비영리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금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 성금운영과정의 투명성 부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성금의 부당 사용, 목적 외 사용 등 국민적 의혹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성금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금기관현황.모금액 및 사용내역 등을 정부인터넷에 공개, 수입.지출결산보고 의무화, 감독 기관의 사후지도.감독권 확보 등 투명성

기본 방향

- 성금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
- 후원자에게 성금운영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공통사항]

1. 상시 정보공개체제 구축

- 성금납부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허가 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 등 모금기관 현황을 정부인터넷에 일괄 공개
  - 단체나 시설명, 사업목적, 주소, 연락처, 계좌명 등
- 성금의 모집금액과 사용내역을 정부인터넷을 통해 공개

[보건복지부]

1. 성금관리의 체계화

- 시.장.군.구청장은 매년 후원금 수입과 지출총액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의무화

2. 관할 행정기관에서 승인한 영수증 사용 의무화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은 후원금을 접수한 경우에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승인(검인.일련번호 부여)된 후원금영수증 사용 의무화

3. 불법.부당 성금운영자의 제재조치 강화

- 후원금의 접수사실 허위기재, 장부.서류 미비치, 사용내역 허위 공개 등 후원금관리규정 위반시 과태료 강화(100만원 → 300만원)

제22차 전원회의(2002. 12. 2.)	제3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현행 터키공사 입찰 관련 제도는 초대형,고난도,복합공정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기술 발전과 공기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그 운용 과정에서 담합 입찰, 로비 등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자 함</p> <p>※ 터키공사 입찰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단위 상설 설계 심의기구 설치로 전문성, 책임성 강화</li> <li>- 심의위원 제척 제도 도입 등으로 설계심의 방법의 공정성 확보</li> <li>- 낙찰자 선정 방식 변경으로 담합 입찰 가능성 배제</li> <li>- 공사비 실행내역서 공개 등</li> </ul>	
<p>2. 심의내용</p> <p>○ 개선안중 '낙찰자 선정방식 변경' 관련 부분은 소정의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규모 공사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되, 그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p>	
<p>3. 의결결과 :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조달청에 권고</p>	
4. 권고 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고	※ 터키공사 입찰 제도개선 권고안 : 별첨

- 위 원 : 전문분야별로 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 발주기관의 기술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

나. 기능

- 터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입찰방법)의 심의
- 입찰안내서의 심의 및 설계심의 등

다. 심사위원의 책임성 확보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그 임기 중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함
- 모든 심의위원은 업무수행의 범위내에서 형법 및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 심의위원의 심사수당을 현실화하고 예우를 상향조정

2. 설계심의방법의 개선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부당한 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의절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함

가. 심의위원 명단 사전공개 및 심의도서의 사전배포

- 설계심의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토록 함

나. 심의기준의 구체화 및 심의기준 작성시 심의위원의 의견 반영

- 설계의 품질을 높이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안내서에 발주자의 사업목표, 요구조건 및 심사기준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토록 하고, 심사기준의 작성시에는 심의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해당 기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권고 번호	제도02-2-4
-------	-------------------	-------	----------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터키제도는 초대형,고난도,복합공종 대상공사에 대하여 설계기술의 발전, 공기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입찰과정에서 설계심의의 둘러싼 부당한 로비와 심의의 전문성문제, 입찰가격 담합으로 인한 비경쟁,과정구조 및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터키제도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설 설계심의기구의 설치, 심의과정과 내용의 공개 및 응찰업체간 가격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1. 상설 설계심의기구의 설치

현재 발주청에 위임하고 있는 터키공사의 설계심을 상설설계심의기구(중앙단위)를 설치하여 집중 심의토록 함으로써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가. 심의기구의 구성

- 위원장 : 건설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다. 심의방법의 개선

- 토론제(Discussion)의 도입
  - 정해진 양식의 평가표에 점수를 기재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를 심사 결과로 발표한 후, 심사결과에 인정여부를 각 심의위원들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고,
  - 이 과정에서 심사결과에 대해 심의위원의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 후, 다시 정해진 양식의 평가표에 점수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다시 합산함
- 분야별 평가위원을 4인이상으로 하되, 입찰자별 점수격차가 심한 경우에는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출토록 함
- 평가자료의 열람개방
  - 각 심의위원이 작성한 평가표(1차 및 2차)및 토론 내용을 문서로 보관토록 하며, 입찰참가자 등이 그 내용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개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라.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제도 도입

- 참여업체,발주청 등이 선정된 심의위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위원을 제척하도록 함

3. 낙찰자 선정방식의 개편

: 「先 설계 - 後 가격.공사수행능력 평가」(Pass-Fail)방식 도입

가격경쟁을 강화하여 터키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가격담합의 소지를 차단하는 한편, 설계기술과 시공기술의 발전을 함께 유도하기 위하여 「先설계-後가격.공사수행능력평가」의 2단계 방식(Pass-Fail)으로 전환

- 상설설계심의기구는 먼저 설계를 심사하여 발주처의 설계상 요구수준을 충족시킨 업체들을 선정한 후, 설계심의를 통과한 복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평가방식(예시)>

: 입찰가격점수를 공사수행능력점으로 나누어 최저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frac{\text{입찰가격점수}}{\text{공사수행능력점수}} = \text{환산가격 (최저환산가격} \rightarrow \text{낙찰자)}$$

- 턴키공사에 있어서 설계심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계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500억원 미만의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500억원 이상 공사중에서도 공사의 특성,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이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4. 공사비 실행내역서의 공개

시공업체의 과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예방 및 공사비원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사예산을 수립하고, 건축공사비에 대한 발주자 및 일반국민의 불신을 해소함

- 공사비의 기성금을 지급할 때나 준공신청시 공사비 실행내역서 (원도급자는 하도급내역까지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제2002-148호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권고안

제22차 전원의회의(2002. 12. 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현행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 관련하여 내부 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포상금 지급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구체적 지급 기준과 근거를 법령화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권고하고자 함	
*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 내용	
- 제보를 통한 범죄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제한 규정을 완화	
-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백히 법령화 하여 기준 제시	
- 탈세 제보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조세포탈 금액 기준으로 포상 제한 등	
2. 심의내용	
○ 탈세 제보 포상금제도에 대하여 소액 탈세제보의 남발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므로 허위 제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에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	
3. 의결결과 : 재정경제부,국세청에 권고	
4. 권고 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고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개선 권고안 : 별첨

탈세제보 포상금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재정경제부, 국세청	권고 번호	제도02-1-03

1. 포상금(보상금) 지급요건 완화

- 「범죄조사」, 「일반세무조사」를 불문, 포탈세액이 국고에 납부되면 일정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
- \* 포상금을 돌려 쓴 제보자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

2.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법령으로 규정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자료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법령(시행령)에 규정

- 중요자료의 유형을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세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법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필요
- <중요자료 예시>
- 제보된 증빙자료 및 제보서류에 적시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포탈세액과 직접 연결된 경우
- 조세탈루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나 그 자료의 은닉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 조세탈루와 관련된 기업내부 비밀자료(회계부정 등) 및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 증여세 포탈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 기타 「국세청 훈령」으로 정하는 경우
- \* 다만, 위의 정보내용 중 조사시 사실로 확인된 매출누락, 가공원가

등 고의적인 조세탈루내용(조세범처벌법 제9조<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의한 차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조세범처벌법 제9조2)

3. 보상제한제도(Deductible) 도입

- 탈세제보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포탈금액(과세대상금액) 1억원 이하의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배제하는 제도 도입

- 현행 범죄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하한액이 포탈금액 3억원인 점과 우리의 납세환경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일반세무조사까지로 확대할 경우에도 일정기준금액 이하인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필요
- 앞으로 조세환경 변화 추이를 보아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신속적으로 운용

4. 포상금지급 최고한도

- 현행 1억원을 유지  
\* 2년 후부터 2억원으로 상향조정 검토

- 포상금 최고한도는 이번 포상대상 확대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현행 1억원을 당분간 유지하되
- 부패방지법상 보상금 최고한도(2억원)와의 균형, 탈세제보로 인한 기업의 윤리적경영 유도효과 등을 감안, 포상대상 확대시점이 정착되는 시점(2년 후)에서

- 보상제한(Deductible)한도 1억원의 축소조정과 함께
- 포상금액 한도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적극 검토

5.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 범죄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설치된 『범죄조사심의위원회』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법에 설치 근거 규정 마련

- 보상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

- 보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예, 7인)를 설치 운영
  -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되, 제보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엄격한 비밀준수 의무 적용
-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 보상금 지급요건, 지급대상 범위, 보상제한(Deductible) 해당 여부, 보상금액 결정 등 보상관련 제반사항을 심의.결정
  - 제보된 내용과 보상요건, 보상대상, 보상제한 여부 등이 합치되는지를 심의.결정

6. 제보자의 『비밀보호』 등 장치 마련

- 탈세제보자의 비밀보호 및 신분보장 규정 신설

- 허위제보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탈세제보자의 비밀보호 및 신분보장 규정 신설

-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및 탈세 제보 접수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분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게 법적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탈세제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근거규정 필요

□ 허위제보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태료 부과 등) 신설

- 무고성 허위제보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제보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 최소화

□ 허위제보자에 대한 처벌

- 제보자가 제보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징역량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함
- ※ 형량 등은 부패방지법 제49조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결정



## IV. 例規訓令, 其他



- 나 하나의 바른 의식 부패없는 일류 국가
- 굳은 마음 바른 행동 미래의 등불이다.



제2002-2호 부패방지위원회운영세칙안

제2차 전원회의(2002. 1. 28.)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설치된 부패방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부패방지법과 동 시행령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부패방지위원회 운영세칙안 주요내용	
- 위원회 전원회의의 개최 및 소집절차, 심의의결 대상 사항	
- 분과위원회의 설치, 소집절차, 심의의결 대상 사항	
- 의안의 제출, 배부,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방법	
- 전문위원 및 주심위원회 설치, 운영	
- 위원장에 대한 위원회 업무 위임 규정 등	
2. 심의내용	
○ 분과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시 위원장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사무처 담당관이 아닌 상임위원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함	
3. 의결결과 : 부패방지위원회예규 제1호 발령	
4. 비고	※ 부패방지위원회 운영세칙안 : 별첨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부패방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위원장 직무의 대행)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사무처장인 상임위원
  2. 사무처장이 아닌 상임위원

제 2 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 제 3 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정기회의는 매월 첫째 및 셋째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하되, 회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4 조(수시회의의 소집) ①수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수시회의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장

- 관한 사항중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6 조(간사위원) ①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둔다.
  - ②간사위원의 직무는 사무처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담당하고, 심결관리담당관은 위원회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 업무에 관하여 간사위원을 보좌한다.
- 제 7 조(의안의 제출 등)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심결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③심결관리담당관은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8 조(의안의 배부 등) ①심결관리담당관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의안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심결관리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 9 조(회의록) 심결관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기타 주요 논의 사항

제 3 장 분과위원회

- 제 10 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검토.

소 및 의안의 제목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 등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 5 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사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패방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문위원의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
  13.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1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시민단체협력에

조정, 조사,연구, 기타 위원회가 부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2. 제2분과위원회
  3. 제3분과위원회
- 제 11 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중 헌법기관과 정치,일반행정분야(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를 포함한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제1분과위원회가, 사회,문화분야(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교육청 및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제2분과위원회가, 경제분야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제3분과위원회가 각각 분장한다.
    - ②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의 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편중된 경우 등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 12 조(분과위원회의 소집 등) ①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분과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3 조(분과위원회의 의결) ①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위원장은 모든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14 조(분과위원회 간사) ①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 ②제1분과위원회는 정책기획실장이, 제2분과위원회는 홍보협력국장, 제3분과위원회는 신고심사국장이 각각 간사가 된다.
  - 제 15 조(분과위원회 의안 작성 등) 분과위원회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분과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심의의결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1. 각 분과위원회 분장사항중 단순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각 분과위원회 분장사항중 법령 또는 위원회세칙 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
  3. 기타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
- ②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사항 및 기타 활동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사항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재심의의결)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다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4장 전문위원 등

제18조(전문위원) ①각 분과위원회별 분장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한다.

제19조(자문기구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5장 의견진술 등

제20조(의견진술 등의 요구) ①위원회는 부패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4.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의 제출 요구
5.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요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 요구

②분과위원회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주심위원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의견진술 등을 주재할 수 있다.

제21조(출석요구) 소관부서는 출석요구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회의개회일 5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진술서 등 제출요구) 소관부서는 자료,진술서 등 제출요구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진술서 등 제출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견진술의 공개여부) 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견진술의 내용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주심위원제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주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관련되는 조사,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진술의 보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 등을 주재한 분과위원회 및 주심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안명
2. 의견진술자의 성명 및 주소
3. 일시 및 장소
4. 의견진술의 내용
5. 검토의견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6조(위원회에의 보고) 주심위원은 그 업무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기타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은 생략함

제2002-3호	신고사무운영지침안
제3차 전원회의(2002. 2. 4.)	신고심사규
<p>1. 의안개요</p> <p>○ 부패방지법 제25조 내지 제31조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신고사항의 이첩,불이첩,고발, 제조사 요구, 제정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제정함</p> <p>※ 신고사무 운영지침안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사건 접수, 처리 분장</li> <li>- 신고센터는 신고사건을 상담,접수하며, 일반 사건은 심사 1, 2관이, 고위공직자 고발 사항 등은 기획과가 각 담당</li> <li>- 부패행위와 관련 없는 진정 사항의 처리 방법</li> <li>- 종결처리, 관계기관 송부, 관련기록 편철 등으로 분류 처리</li> <li>- 신고사항의 기록 보존과 열람,등사</li> <li>- 처리가 종료된 신고사항 기록은 신고센터에 이관하여 보존하고, 관계인의 열람,등사 청구시 일정 범위내 제한 가능</li> </ul>	
<p>2. 심의내용</p> <p>○ 법제처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렴된 원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의결함</p>	
<p>3. 의결결과 : 부패방지위원회예규 제2호 발령</p>	
<p>4. 비고 ※ 신고사무 운영지침안 : 별첨</p>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내지 제31조에 의한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신고사항의 이첩, 불이첩고발, 제조사 요구, 제정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신고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 등의 접수

제2조 【신고 등의 접수】 ①부정부패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 접수담당직원은 신고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수한다. 1. 신고자가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기관 불이첩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부패방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거나, 가명, 차명을 사용하는 등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명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라 한다)에게 결재를 받은 후 분류하여 심사1관에게 인계한다. ②심사1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신고 및 진정사항을 처리한다. ③심사2관은 헌법기관(국회,헌법재판소,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 등의 부패신고 및 진정사항을 처리한다. ④심사국장은 법 제29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고위공직자의 고발 사항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기획과장에게 배당하도록 한다. ⑤신고내용이 2개 이상의 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된 소관과로 배당한다. ⑥신고서를 배당받은 소관과장은 소관과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를 전달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자 등의 출석】 ①신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심사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기타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②신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출장 확인】 ①신고자가 출석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직원은 신고자를 직접 출장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이 신고사항과 관련된 진술을 희망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담당직원이 직접 출장방문

제3조 【신고서식 비치, 대리작성】 ①신고자의 편의와 신고사항의 확인, 조사차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신고센터에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신고센터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4조 【신고자 상담】 ①부패행위신고에 대한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상담은 신고센터에서 실시하며, 그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상담처리부에 기재하여 즉시 신고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상담사에는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 접수절차】 ①신고서 접수담당자는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한다.

②신고사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신고기록표지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신고서 접수담당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3장 신고사항 확인

제6조 【신고사항의 배당】 ①신고센터의 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사항요약서로 작성하여 신고심사국장(이하 "심사국장

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2인 이상의 직원이 합동으로 해야하고,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담당직원은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을 밝히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신고기록에 첨부한다.

제10조 【신고의 보완】 ①신고자가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출석에 계속 해서 불응하거나 영 제21조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완요구서로 신고사항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고,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과 또는 심사관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완요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보완요구는 위원회 상정 등의 기한을 감안하여 기일내 서면으로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에 따라 신고사항은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 【확인서의 작성】 ①담당직원은 신고자료부터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고자로부터 증거 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서에 기재하고, 신고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증거서류나 관련자료는 확인서 뒤에 첨부한다. ②담당직원은 제1항의 확인서 작성시 서명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신분공개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 다음 신고자와 작성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조사기관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확인서는 신고사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한 후 유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한 후 신고자와 작성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확인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담당직원은 신고사항 확인시에 신고된 부패행위 내용을 신고자 이외의 공직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 제26조에 의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확인서 작성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2조 【신고의 취소】** ①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서면으로 기획 과장 또는 심사1.2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고취소장이 접수되면 신고센터에 비치된 신고접수처리부 비교란에 취소장 접수사실을 기재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사실을 조사 기관에 통보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③신고사항이 조사기관에 이첩 또는 고발되기 전에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였으나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결과와 위원회 의견을 거쳐 이첩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13조 【신고심사를 위한 의견제시】** ①심사국장은 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신고서, 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위한 심사의견을 제시

처리부에 기재한다.

**제16조 【신분공개 부동의시 송부】** 심사 1.2관은 신고자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영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관련자료를 봉인하여 심사국장의 확인을 받아 이첩하여야 한다.

**제17조 【불이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에 대한 불이첩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18호서식의 위원회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신고센터의 장은 심사국장으로부터 결제를 받은 후 심사 1.2관에게 인계한다.

③심사 1.2관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조사기관으로의 이첩여부에 대해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④이의신청이 위원회에서 각각된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18조 【신고사항 반송시 처리】** 영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반송된 신고 사항은 조사기관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해당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하여야 한다.

## 제 4 장 진정 접수 및 처리

**제19조 【진정 접수】**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닌 민원이나 진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진정접수처리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진정기록표지와 별지 제21호서식의 진정기록목차를 붙여 심사국장에게 결제를 받은 후

하여야 한다.

1. 이첩
2. 불이첩
3. 고발

②불이첩사항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과 영 제23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부패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등】** ①신고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 확인결과 조사기관에 대한 이첩여부
2. 혐의대상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검찰 고발여부
3. 국가기밀 또는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신고사항의 이첩 여부
4.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및 재정신청 여부
5. 기타 신고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위원회로부터 이첩 의결서를 인계받은 심사 1.2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첩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조사 기관에 이첩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첩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이때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내용을 명기한다.

②신고사항의 이첩은 신분비밀보장 규정 및 조사결과 통보기한 등을 명시한 관련공문과 영 제20조제1항 각호의 규정과 의하여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신고사항 확인서 및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 증거서류 등을 동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③심사 1. 2관은 이첩·불이첩 등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신고센터에 비치된 신고접수

심사1.2관에게 인계한다.

**제20조 【진정처리】** ①진정서를 인계받은 심사1.2관은 “종결처리”, “관계 기관 송부”, “관련기록 편철”, “신고사항으로 접수” 등으로 분류하여 위원장의 결제를 받아 신고센터에 비치된 진정접수처리부에 기재하고, 즉시 진정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관제기관 송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진정관련 서류를 이첩 하고,□신고사항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진정사항의 위원회 보고】** 심사국장은 진정사항 중 부패행위로 인정되는 사항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에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르고,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제도개 선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 제 5 장 조사결과 통보 접수

**제22조 【조사결과와 통보 접수】** ①심사 1.2관이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수사 또는 조사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의 요지를 통보받은 때에는 신고센터에 비치된 신고접수처리부에 내용을 기재하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조사결과와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와 통보내용에 보상금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보호보상과장에게 통보한다.

**제23조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①심사 1.2관이 법 제30조제3항에

의해 조사결과와 통보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설명요구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사 1.2관이 제1항의 설명요구를 구두로 한 때에도 그 설명요구의 일시, 방법 및 설명요구의 요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조사기관으로부터 설명요구에 대한 답변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한 때에는 그 서면 또는 구두 답변요약서를 작성하여 신고기록에 첨부한다.

**제24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서를 받은 신고센터의 장은 심사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심사 1.2관에게 인계한다.

③심사 1.2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제24조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보고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제25조 【재조사 필요성 심사】** ①심사1.2관은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심사1.2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재조사 요구】** 위원회가 재조사요구를 의결한 경우 심사 1.2관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재조사요구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 의결서를 첨부하여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한다.

**제27조 【재조사요구접수부의 기재】** 재조사 요구서에는 신고센터에 비치된

별지 제27호서식의 재조사요구접수부에 기재하고, 신고 접수처리부에 그 사항을 기재한다.

**제28조 【재조사결과와 통보 접수 및 처리】** 재조사결과와 통보 접수 및 처리절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장 신고사항 확인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재조사결과 통지】** 위원회는 재조사결과와 요지를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6 장 고위공직자 고발

**제30조 【고위공직자의 고발】** ①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국장은 위원회에 고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심사국장은 고발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고발장(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위원회의 고발의결에 따라 기획과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30호서식의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처리한다.

④기획과장은 고발장에 확인서, 신고사항 관련자료들을 첨부하여 관할검찰청에 접수하고, 고발사실을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7 장 재정신청

**제31조 【재정신청 심사】** ①심사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재정신청 대상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재정신청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재정신청 의결에 따라 기획과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재정신청서를 작성한다.

**제32조 【재정신청처리부의 기재】** 기획과장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재정신청처리부에 기재하고, 신고접수처리부에 재정신청 사항을 기재한다.

**제33조 【재정신청서 제출 등】** ①기획과장은 의결서를 첨부한 재정신청서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결정을 한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인련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②재정신청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1조, 형사소송규칙 제119조 내지 제122조를 각각 준용한다.

## 제 8 장 처리상황의 관리 등

**제34조 【처리상황의 확인 및 점검】** 심사국장은 신고접수처리부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결과, 처리기간 도과한 신고사항에 대한 그 사유와 처리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제35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①신고사항 확인 및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검토과정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도개선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제1항의 의한 통보를 받은 제도개선 담당부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한 직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신고자 신분공개시 조치】** 기획과장 또는 심사1.2관은 영 제33조에 의하여 신고자가 조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신고자로부터 알게된 때에는 즉시 이를 보호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기밀의 유지 등】**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 제22조의 비밀누설의 금지조항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항에 대한 기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9 장 신고 및 진정기록의 보존

**제38조 【신고기록의 보존】**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료된 기록은 매 익년도 1분기 내에 신고센터에 이관·보존한다.

**제39조 【보존기간】** ①신고기록은 신고대상 부패행위의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 중 최장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신고기록은 3년간 보존하고, 국내 의적으로 중대하거나 위원회에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②신고사항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공소시효의 정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83조(징계결과의 정지) 등에 의하여 공소제기시부터 판결확정시까지와 징계의결요구시부터 징계결정 완료시까지의 기간은 보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 【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1조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기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진정기록보존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기록보존부와 별지 제36호서식의 진정기록보존부를 작성한다.

**제42조 【신고사항관련 진정】** 신고사항 관련 진정기록은 그 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 제43조 【보존기간】 진정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44조 【이의신청 기록의 보존】 이의신청 관련 기록은 원 신고기록과 함께 보존한다.

### 제 10 장 기록의 열람 및 기타 보존사무처리

- 제45조 【기록의 열람·등사 청구】 ①신고자, 신고자의 대리인인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속인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신고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 그 청구사유를 소명하여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허가여부의 결정】 ①심사국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②심사국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사국장은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록열람·등사 불허가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제47조 【열람·등사의 제한】 심사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신고관계인의 신분노출 및 명예나

-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8조 【열람·등사의 방법】 ①기록의 열람·등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한다.  
 ②심사국장은 열람에 참여하여 기록훼손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심사국장이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9조 【기록의 대출】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록대출표, 별지 제40호서식의 보존 기록대출부를 작성하고 대출한다.  
 제50조 【기록의 폐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총무과에 인계하여 폐기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은 생략함

제2002-5호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에 관한건
제4차 전원회의(2002. 2. 18.)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함 ※ 분과위원회 위원장, 위원 임명 방법 - 각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 -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개인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	
2. 심의내용 ○ 전문성 원칙과 위원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 제1분과위원회(헌법기관과 정치·일반행정분야) - 위원장 : 이진우 위원, - 위원 : 채일병·최세도 위원 ▷ 제2분과위원회(사회·문화분야) - 위원장 : 박연철 위원, - 위원 : 이상환·김오수 위원 ▷ 제3분과위원회(경제분야) - 위원장 : 박용일 위원, - 위원 : 이상환·강금실 위원	
3. 의결결과 :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위원 임명	
4. 비고	

제2002-7호	신고자보호사무운영지침안
제5차 전원회의(2002. 3. 4.)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분보호 및 관련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제정함 ※ 신고자보호사무운영지침안 주요내용 - 신분보장 요구자 및 협조자에 대한 조사 진술확인서, 확인조서 등 작성(서명, 날인 원칙, 비공개시 제외) - 인사교류의 요건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기관장과 협의 규정 등	
2. 심의내용 ○ 신분보장조치 요구서의 보완에 있어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예외 규정을 두고, 신분보장조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는 신고심사국장이 위원회에 보고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 신분보호의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안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검토한 후 수정 의결함	
3. 의결결과 : 부패방지위원회예규 제3호 발령	
4. 비고 ※ 신고자보호사무운영지침안 : 별첨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5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9조 내지 제34조, 제53조의 부패행위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이하 "협조자"라 한다)의 신분보장 및 신분보호와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고자 보호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신분보장

제 2 조(신분상 불이익처분 등) 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은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징계조치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처분 또는 차별
-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처분 또는 차별

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 5 조(신분보장조치요구서의 보완) ①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제출한 신분보장요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조(신분보장조치요구서의 취소) ①보호보상과장은 요구자가 신분보장조치요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분보장조치요구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요구자가 신분보장요구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사본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③제1항의 경우 확인조사를 하기 전에 요구자가 신분보장조치요구를 취소하였으나, 명백히 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분상 불이익처분 등을 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국장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요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 7 조(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조사) ①심사국장은 제4조제1항의 신분보장요구서를 검토한 후 조사일정,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②제1항의 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그 경우에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휴직,정직,전직 및 감봉, 기타 징벌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불이익처분 또는 차별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신분상 불이익처분 또는 근무(로)조건상의 차별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신분보장조치의 내용) 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 1. 제2조에서 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로)조건상의 차별에 대한 취소 또는 시정
- 2. 파면,해임,해고정직 및 감봉 등으로 인한 급여손실의 상당액에 대한 보전
- 3. 인사교류 등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신분보장조치

제 4 조(신분보장요구의 접수) ①보호보상과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에 의하여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보장조치요구서(이하 "신분보장 요구서"라 한다)에 요구자의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보장조치요구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제1항의 신분보장요구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으로 신분보장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분보장조치요구자(이하 "요구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본인의 제출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심사국장(이하 "심사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의 신분보장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민원사무

1. 요구자, 참고인 또는 협조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자, 참고인, 협조자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자, 참고인, 협조자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제 8 조(신분보장요구자 등의 출석) ①보호보상과장은 신분보장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자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심사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신분보장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자, 참고인 및 협조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출정조사) ①심사국장은 요구자, 참고인, 협조자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게 한다.

②조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사원 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한다.

③제1항의 경우 조사담당직원은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확인서 등의 작성) ①조사담당직원은 요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확인서를 작성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확인서에 기재하여 신분보장요구서에 첨부한다.

②제1항의 진술확인서 작성시 요구자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구체적인

내용 및 신분공개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 다음 요구자와 작성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요구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진술확인서는 신분보장요구사항에 대하여 요구자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한 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요구자와 작성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진술확인서 뒤에 첨부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참고인 또는 협조자 등에 대한 진술확인서 등 작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1조(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보호보상과장은 제7조 내지 제10조에 의하여 조사,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2조(조사결과에의 위원회 상정) ①심사국장은 신분상 불이익처분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제1항의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등인지 여부
2. 신분보장조치의 내용 및 조치시한
3. 신분보장조치 등이 필요한 이유
4. 신고와 관련된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한 정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

제13조(신분보장조치의 결정) ①위원회는 신분보장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자의 소속기관 등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 또는 권고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심사국장은 요구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결과를 통보받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신분보장조치의 불이행시 처리) ①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또는 권고받은 요구자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적절한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사국장은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분보장조치 제요구(권고)서를 요구자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16조(인사교류요구의 처리) ①공직자인 신고자가 법 제32조제8항의 인사교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국장은 인사교류 요구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인사교류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 당해 신고사건을 이유로 한 인사교류는 1회에 한함
2. 현재 근무하는 부처에서 다른 부처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기관내에서도 가능
3. 가급적 동일직급과 동일직렬 내로 함
4. 전직에 해당하거나 그 직위의 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지식과 자격을 요하기 때문에 시험 등 모집방법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의견을 반영

②위원회의 인사교류 의견이 있는 경우 심사국장은 의견서 정본을 첨부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사교류요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신속히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 또는 권고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구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자의 신분 등이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④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 기업 등의 장에게 요구자의 신분 등이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⑤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한다.

⑥심사국장은 조사결과 신분보장조치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종결처리 한다.

1.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판결의 확정 및 감사, 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부패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기타 신분보장조치요구의 타당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14조(결정결과에의 통보 등) ①제13조의 결정이 있는 경우 심사국장은 의견서 정본을 첨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보장조치요구(권고)서를 요구자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송부하고, 당해 기관의 장이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②보호보상과장은 요구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분보장조치의 요구 또는 권고를 하거나, 기각한 경우에 요구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보장조치요구 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③심사국장은 인사교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인사교류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류인원 및 교류기준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④제2항의 요구를 한 때에는 요구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보장조치요구 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17조(신분상 불이익처분자 등에 대한 정계요구) ①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정계요구 의견이 있는 경우 심사국장은 의견서 정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계요구서를 정계요구대상자 소속기관 등의 정계권자에게 송부하고, 당해 기관의 장이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한 때에는 요구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보장조치요구 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③심사국장은 정계요구대상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받아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 3 장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제18조(신고자 등의 비밀 준수) ①신고사항의 접수, 심사,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 등의 신분
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관련 수집한 정보
3. 혐의대상자 또는 혐의대상기관
4. 신고자 등과 혐의대상자 및 혐의대상기관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②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

③심사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심사·조사 등을 처리하는 직원(전입·과건)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제19조(조사 등의 회피) ①신고사항의 심사, 조사 등과 관련된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국장에게 당해 업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호주 및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신고사항의 심사, 조사 등과 관련된 직원은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지연 또는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국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서의 접수) ①보호보상과장은 부패행위 신고자 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분이 공개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요구자의 인적사항, 공개기관 등을 기재한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서(이하 “확인요구서”라 한다)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제1항의 확인요구서의 접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1조(신분공개여부의 조사) ①심사국장은 제20조제1항의 확인요구서를 검토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제20조제1항의 확인요구서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신분공개

여부, 공개경위 및 관련자, 그 조치결과 등을 확인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심사국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 및 관계기관 등의 조사관련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조사기관 등의 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2조(신분공개 처리) ①심사국장은 제21조에 의한 조사결과와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위원회에서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는 경우 심사국장은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신분공개여부 확인결과 통보서를 신분공개자 소속 기관의 징계권자에게 송부하고, 당해 기관의 장이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③심사국장은 신분공개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받아 위원회에 보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신분공개여부 확인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요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 4 장 신분보호

제23조(신분보호요구의 접수) ①보호보상과장은 신고자 등이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어 신분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자와 신분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신분보호조치요구서(이하 “신분보호요구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신분보호조치요구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신분보호요구서의 접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③보호보상과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국장에게 보고한 후 신분보호요구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판결의 확정 및 감사·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부패행위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기타 신분보호요구의 타당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④신분보호요구서의 보완이나 취소의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24조(신분보호요구의 처리) ①심사국장은 신분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분보호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신분보호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의결서 정본을 첨부한 별지 제22호서식의 신분보호조치요구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요구자에게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보호보상과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요구자에 대한 신분보호조치를 취소하였거나, 신분보호조치를 해제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한다.

④심사국장은 제3항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신분보호조치 및 해제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 하고, 요구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신분보호조치요구 결과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25조(긴급보호) ①신고자 및 신분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분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신분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요구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한다.

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 동안의 신분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5. 기타 신분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제1항의 경우 심사국장은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6조(신분보호대상자의 관리) 보호보상과장은 신분보호대상자의 신분보호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5 장 과태료의 부과 등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①영 제53조제4항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의 일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위원회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②영 제53조제4항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면 및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1,000만원
2. 직위해제, 강등, 승진의 제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 : 700만원
3. 전보·전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 : 500만원
4. 임금의 차별지급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 300만원

제28조(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제시) ①제12조제2항제4호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상정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심사국장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을 상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요구자가 불이익처분을 한 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2.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한 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철회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 이외의 요구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
4. 그 밖에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9조(과태료부과 결정 및 통지) ①보호보상과장은 위원회의 과태료부과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서 정본을 첨부한 별지 제2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서에 위반사실,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금액 등을 기재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의뢰서에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기타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의 세입징수관(이하 "세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한다.

③제2항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이의신청의 접수) ①보호보상과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영 제53조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자,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2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접수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7호서식의 이의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 하여 관리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의 접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1조(이의신청서의 처리) ①심사국장은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련 서류 일체, 과태료부과 의결서 정본, 과태료부과 고지서 등을 사본 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제32조(전화 등 상담) ①보호보상과장은 신고로 인한 신분보장,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호 및 과태료처분 등에 관한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상담을 실시하며, 그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상담처리부에 기재하여 심사국장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의 상담을 하는 때에는 상담자의 신분이나 상담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은 생략함

제2002-21호 부패방지위원회윤리규정안	
제6차 전원회의(2002. 3. 18.)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 제고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준칙을 제정함	
※ 부패방지위원회 윤리규정안 주요내용	
-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회피, 청탁 및 알선의 금지	
- 영리활동, 이권개입, 금전·접대·선물 수수의 금지	
- 사행행위, 재정보존 금지	
- 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징계 규정으로 실효성 확보 등	
2. 심의내용	
○ 금전·접대 및 선물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일정 범위내의 다과·식사 접대와 공식일정에 포함된 최소한의 회식이 허용되는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의 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	
3. 의결결과 : 부패방지위원회 훈령 제2호 발령	
4. 비고	※ 부패방지위원회 윤리규정안 : 별첨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의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 등을 요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
  - 나.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계 존·비속"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며, "친·인척"은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선물"이라 함은 환전 가치를 지닌 물품 또는 상품권·항공권·숙박권·자유이용권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지인"이라 함은 위원회 구성원이 평상시 직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친교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 선·후배, 사제관계 등으로서, 이해관계자가 아님을 즉시 소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에 과련된 자를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서비스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용직, 계약직 기타 형태와 관계없이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②이 규정은 소속직원이 휴가 또는 비변인 때에도 적용된다.

제 4 조(소속직원의 책무) 소속직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정직·공정·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2 장 성실한 직무수행

제 5 조(법령 등의 준수) ①소속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것
2. 위원회의 규정과 정책을 준수할 것
3. 정당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고려하지 아니할 것
4. 상급자는 부하직원에게 정당한 지시를 내려야 하며 부하직원은 그 지시에 복종할 것

②소속직원은 법령이나 규정, 다른 정당한 지시에 위배되는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지시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즉시 제2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자가 이 보고를 한 후 부당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하급자에 대한 징계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 6 조(허위보고의 금지) 소속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할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7 조(정치적 중립의 유지) 소속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비밀의 유지) ①소속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료,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없이 외부인에게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료,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자료,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그 자료,정보에 부여된 접근등급을 확인하고 본인이 접근등급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할 것
  2. 위원회의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
  3. 취급하는 자료,정보의 보존연한 및 폐기기일을 준수할 것
- ②소속직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직권 상급자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소속직원은 위원회 소속 기간의 종료후 3년 동안은 재직시 지득한 자료,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9 조(이해관계자 직무로부터의 회피 등) ①소속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친·인척의 이해와 연계되거나 그러한 오해를 조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당해 직무수행에 대한 회피신청서를 벌지 제1호시삭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연이나 학연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준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직무수행에서의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각급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속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결과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속직원의 임무를 재조정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부서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특혜와 차별의 금지) ①소속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누구에게도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속직원은 지연, 학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 또는 동창회 등에 가입하여 동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원직을 맡아서는 아니되며, 향우회 또는 동창회 등으로부터 일체의 후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이해관계자 방문) ①소속직원은 이해관계자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증을 제시한 후 출장사유를 설명하고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속직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장소,대상,사유,일시 등을 명시한 출장신청서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전에 보고되지 아니한 이해관계자 방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소속직원은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탁 및 알선의 금지 등) ①소속직원은 다른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속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이해관계자의 청탁을 받은 다른 공직자 등의 청탁 또는 압력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 상급자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판여의 금지) 소속직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원·인척 및 지인 관계에 있는 공직자 또는 이들로부터 부탁 받은 공직자의 임용·승진 및 진보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성희롱의 금지)** 소속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출장비 및 업무추진비의 사용)** 소속직원은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를 정하여진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공용물의 사적 사용금지)** 소속직원은 차량,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3 장 부당이득 및 선물 등 수수 금지

**제17조(이권개입의 금지)** 소속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영리활동의 금지)** ①위원회에 상근하는 소속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직무외의 영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조합,기타 영리단체의 임·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을 받는 행위
  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
  3. 소속직원의 성명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직무외의 영리활동을 하는 소속

직원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연간 보수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신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의 소득에서 자산 및 금융소득은 제외한다.

③소속직원 개인명의의 지적 또는 감성적 역량에 기초한 단행본 또는 번역서 등의 출판은 직무외의 영리활동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소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부에서 축적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서적의 출판은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의 금지)** ① 소속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가증권 및 부동산 거래 행위
  2. 권족 또는 지인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기타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 ②소속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여하거나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법무감사담당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20조(강의 등의 제한)** ①위원회에 상근하는 소속직원은 근무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세미나,공청회,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강의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의 등의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며, 직무와 관련한 비밀과 정보의 누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강의 등의 대가는 외부기관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금전의 차용 제한)** 소속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금전, 접대 및 선물 수수의 금지)** ①소속직원 및 배우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의금 기타 여타의 항목으로도 금전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 또는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식사,향응 등 접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차 등 음료나 간소한 다과, 구내식당에서의 식사, 1인당 3만원 이내의 식사

나. 공개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로서 주최측이 마련한 공식일정에 포함된 최소한의 회식의 참여

2. 물품 또는 상품권, 항공권, 숙박권, 자유이용권 및 서비스 등 선물의 수수

②소속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그 소속직원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금전, 접대 또는 선물은 그 소속직원이 그 사실을 아는 경우 그 소속직원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③소속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된 금전, 접대 또는 선물을 부득이하게 수수하거나 수수하게 될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무감사담당관은 제3항의 신고된 금전 또는 선물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고 선물이

쉽게 소멸하는 것이거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추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파괴하여야 한다.

⑤법무감사담당관은 금전, 접대 또는 선물의 접수신고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공직자간 선물 등 수수 금지)** 소속직원은 동료직원, 기타 공직자간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의금 이외에는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속직원이 퇴임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상조회 또는 소속직원과 같은 부서의 직원들이 1인당 2만원 이내에서 전달하는 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 장 건전한 사생활의 유지

**제24조(재정보증의 금지)** 소속직원은 동료 직원은 물론 타인에 대한 재정보증이 될 수 없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도박 등의 금지)** 소속직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경조사 통지와 경조의금 수수 등)** ①소속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출선수범하여야 한다.

②경조사의 통지범위는 소속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친·인척, 지인 및 동료 직원에 한하며, 통지방법은 직장안에서는 소식지, 회람,전화 등에 의하며, 직장 밖에는 정철장 등 인쇄물에 의할 수 있다.

③경조사의 통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관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통지하는 행위

2. 청철장 등 통지서에 직장·직급명을 기재하는 행위
- ④경조의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르되, 과다한 수준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소속직원 상호간, 기타 공직자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1. 실·국장급 이상 : 5만원
  2. 과장급 이하 : 3만원
- ⑤소속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경조의금의 수령자일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의금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친·인척 및 지인으로부터의 경조의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의금의 초과분은 제공자에게 반환할 것
  2.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공자와 경조의금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법무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것
- ⑥소속직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전가정의례의정확및지원에관한법률에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 제 5 장 실효성의 확보

- 제27조(규정의 준수 의무와 책임) 소속직원은 위원회에 소속될과 동시에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위반행위의 신고의무 등) ①소속직원은 위원회 소속의 다른 직원이 이 규정의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거나 위반행위를

● 第1部 議決事項

- 되며, 이 규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윤리실태의 조사, 소속직원의 윤리적 갈등과 업무처리에 관한 상담, 이 규정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②윤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그 업무 수행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33조(윤리규정과 관련된 상담) ①소속직원 또는 그 상급자는 그 소속직원의 행동에 대한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윤리심의위원회 간사와 미리 상담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②윤리심의위원회 간사는 상담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4조(위반시 징계 등) 윤리심의위원회는 제2장 내지 제4장에 포함된 의무의 불이행이 확인되거나 제28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고, 확인된 사실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심각한 정부재산의 잘못된 사용과 관련된 행위는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5조(위원회의 정보관리) 위원회는 소속직원이 법률에 정한 개인 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함과 함께 위원회 소유 및 보관 자료가 부당 접근, 부당 제공되거나 남용 또는 오용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향우회 또는 동창회 임원직 사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제10조 제2항의 향우회 또는 동창회 임원직을 맡고 있는 소속직원은

● 第1部 議決事項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법무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윤리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소속직원은 제22조 및 제26조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는 이 규정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고, 소속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청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윤리심의위원회는 이 규정 위반행위의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윤리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부패방지위원중 위원장이 지정한 3인, 정책기획실장, 법무관리관, 신고심사국장으로 구성한다.

제31조(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윤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외된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실무부서) ①법무감사담당관은 윤리심의위원회 회의의 간사가

이 규정 시행후 3월 안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개최, 선출시기 등으로 3월 안에 사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종료 후에는 임원직에 연임·재취임할 수 없다.

③(제정보증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제정보증이 된 소속직원은 이 규정 시행후 3월 안에 그 제정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정보증을 3월 안에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정보증기간 종료 후에는 제정보증이 될 수 없다.

※ 별지 서식은 생략함

IV. 例規訓令, 其他 ●

제6차 전원회의(2002. 3. 18.)	정책기획실
<p>1. 의안개요</p> <p>○ 부패방지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9개 분야 11명)을 위촉함</p>	
<p>2. 심의내용</p> <p>○ 다음과 같이 9개 분야 총 1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분야(1인) : 전용주(37세), 연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원</li> <li>- 행정분야(2인) : 김택(39세) 한국 반부패학회 섭외이사, 조은경(39세)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li> <li>- 윤리분야(1인) : 김호섭(48세) 아주대 교수</li> <li>- 평가분야(1인) : 최병대(49세) 한양대 교수</li> <li>- 경제분야(2인) : 강철준(47세) 한국 금융경제연구원 교수, 윤건수(53세) 서울 사회경제연구원 연구위원</li> <li>- 건설·건축분야(1인) : 이상호(39세) 건설산업연구소 연구원</li> <li>- 기업윤리분야(1인) : 이정훈(48세) 한국생산성본부</li> <li>- 세무분야(1인) : 김재진(43세) 조세연구원</li> <li>- 교육·홍보분야(1인) : 송재윤(40세) 정보통신연구원</li> </ul>	
<p>3. 의결결과 : 전문위원 위촉</p>	
<p>4. 비고</p>	

제8차 전원회의(2002. 4. 1.)	정책기획실
<p>1. 의안개요</p> <p>○ 부패문제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반부패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자율적인 부패척결 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도 측정계획안」을 입안하여 확정하고자 함</p> <p>※ 청렴도 측정계획안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li> <li>-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를 평가지표로 하여, 민원인 설문조사 등을 통한 청렴도 평가</li> <li>- 측정대상기관 선정</li> <li>- 공공기관중 민원업무 비중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71개 기관 선정</li> </ul>	
<p>2. 심의내용</p> <p>○ 계획안에 따른 청렴도 측정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제를 유지하여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수렴함</p>	
<p>3. 의결결과 : 청렴도 측정계획안 확정</p>	
<p>4. 비고 ※ 청렴도 측정계획안 : 별첨</p>	

2002年 清廉度 測定計劃案

I. 추진배경

1. 목적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접근의 필요
  - 부패문제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통하여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접근과 효율적인 반부패 활동을 지원
-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자율적인 부패척결활동을 독려
  - 기관별 민원인의 부패인식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 하여 부패척결의 가시적 성과 유도

2. 근거

- 부패방지법 제11조 2항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II. 추진경위

- 1999년 추진사항
  - 「부패방지종합대책」(1999.8) 발표시 부패척결을 위한 효율적 정책수단으로서 「부패지수」 측정계획을 발표
- 2000년 추진사항
  - 청렴지수 측정모형개발 용역을 실시(한국행정연구원, 2월)하여 모형(안)을 마련
  - 이 모형(안)을 기초로 1차, 2차에 걸친 시험측정 실시

- . 1차시험측정(8월) : 국세청, 서울시, 한전 등 7개 기관
- . 2차시험측정(11월) : 23개기관(청단위 정부기관 12개, 공기업 11개)

○ 2001년 추진사항

- 측정모형 보완을 위한 3차 최종 시험측정을 실시
- . 부처단위 중앙행정기관(건교부, 노동부 등 5개 기관)과 일부 지자체(광주광역시, 충북)를 추가, 30개 기관으로 확대
- . 청렴지수 측정모형 보완(11~02.1월)
- 항목별 가중치 부여를 위한 simulation 등 실시

○ 2002년 추진사항

- 전문가 소회의 2회(2, 3월)
- 평가자문단 구성 및 전체회의(3.22)

III. 청렴도 측정모형

1. 평가지표 체계

\* 청렴도 :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업무와 이를 수행하는 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정도

- 청렴도 작성체계는 체감청렴도와 잠재청렴도의 2개 상위영역으로 구성
- 체감청렴도는 부패경험, 부패인식의 2개 하위영역으로
- 잠재청렴도는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

- 전화조사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항목 중 과도하게 주관적이거나 중복되는 항목은 통계적 검증과정을 거쳐 축소 조정
  - 2000년 18개항목 → 2001년 14개 → 2002년 11개 예정

평가지표 체계

상위영역	하위영역	설문항목(11개항)
채감청렴도	부패경험	금품/접대 제공 빈도 금품/접대 제공 규모
	부패인식	금품/접대 제공의 정도 인식
잠재청렴도	업무환경	금품/접대제공의 관행화 여부 추가면담의 필요성
	행정제도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역할 가능성
	개인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금품/접대의 기대
	부패통제	부패방지 노력 이의제기 용이성

2. 청렴도 산출방식

- 조사방법 :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
  - 측정대상 기관별 민원인에 대해 설문항목에 대해 전화조사
  - . 설문조사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
- 설문조사 척도 : 7점 척도

- 부패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응답거절을 줄이면서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

○ 척도의 점수화

- 7점 척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화
- ※ 금품제공 빈도 및 규모 점수의 점수화

- . 금품제공 빈도 및 규모 설문은 계량적인 응답으로 구성되어 다른 비계량적인 설문응답 결과와 합하여 점수화 하는데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
- 전체 응답자 대비 금품제공 빈도 및 규모비율을 점수화하되, 구체적인 점수분포 방법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가중치 부여

- 청렴도의 상위 평가체계인 채감영역과 잠재영역 간, 각 영역 내의 하위영역 간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의 차이에 따라 차등을 주는 가중치배방식 도입
- 영역간 상대적 중요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혼합가중방식 적용하되, 가중치는 관련 전문가, 측정대상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 . 상위영역(채감 청렴도, 잠재청렴도 2개)은 여러 단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중치를 결정하는 Delphi 방식을 적용하고,
- . 하위영역(6개)은 쌍으로 묶어 가중치를 결정하는 쌍대비교방식을 적용
- . 개별항목(11개)은 고정총합척도법(Constant Sum Method) 방식을 적용

IV. 측정대상 및 표본추출

1. 대상기관 선정

〈 부패방지법상 공공기관 현황 〉

- 중앙행정기관
  - 18부 4처, 대통령직속기관 12개, 국무총리 소속 비서실, 국무조정실, 위원회 5
- 지방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단체
- 입법·사법기관 등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유관단체
  - 정부투자기관(13), 한국은행, 출연·보조·위탁기관(103), 임원선임 관여기관(95), 지방공사 및 공단(99)

○ 선정기준

〈 선정 기본 원칙 〉

- 측정을 위한 인력·예산 및 시간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을 우선 측정대상으로 하되, 일반시민·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업무 비중이 높은 기관을 선정

- 대상기관 : 71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 33개
  - . 부처 및 위원회 19개(22개 기관 제외)

〈제외기관 : 집행업무 비중이 현저히 낮은 대통령직속기관 12개와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조정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비상기획위원회,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청소년보호위, 여성부〉

. 청단위 14개(2개 기관 제외)

〈제외기관 : 민원업무 비중이 낮은 통계청, 기상청〉

- 지방행정기관 :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2개

- 공직유관단체 : 정부투자기관 6개(7개 기관 제외)

〈제외기관 : 전흥 및 서비스기관인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수요자가 한정된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기관성격별 측정대상기관 목록〉

측정 대상 기관	제외기관
□ 중앙행정기관(33개 기관) 〈부처 및 위원회 : 19개 기관〉 1. 기획예산처 2. 국가보훈처 3. 재정경제부 4. 교육인적자원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자치부 8. 과학기술부 9. 문화관광부 10. 농림부 11. 산업자원부 12. 정보통신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노동부 16. 건설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공정거래위원회 19. 금융감독위원회	대통령직속기관 12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통일부 외교홍상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부
〈청 : 14개 기관〉 1. 국세청 2. 관세청 3. 조달청 4. 기상청 5. 방위청 6. 정찰청 7. 문화재청 8. 산림청 9. 중소기업청 10. 특허청 11. 식품의약품안전청 12. 철도청 13. 농촌진흥청 14. 해양경찰청	통계청 기상청
□ 지방행정기관(32개 기관) 16개 시도 16개 시도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6개 기관) 1. 농업개발공사 2. 한국전력공사 3. 대한주택공사 4. 한국토지공사 5. 한국도로공사 6.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식민공사
계 : 71개 기관	(제외 : 31개 기관)

\* 측정대상 71개 기관중 기 시속기관은 27개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행정기관 4개, 정부투자기관 6개임.

- 최근 1년간 민원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업자, 관리대상 단체, 사업체(장) 또는 개인
- 측정대상 업무별 민원인 명부를 부차 모집단으로 하여 민원인 규모에 비례하여 계통추출
- 선정된 각 업무별 민원인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한 업무의 표본수가 200표본을 넘지 않게 배당

V. 향후 업무추진계획

1. 평가자문단 구성.운용

- 청렴지수 측정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자문단을 구성.운용
- 대상업무 선정 등 구체적인 측정실시계획 및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 상정 전 평가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2. 향후 추진일정(잠정)

- 〈청급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측정〉
- 조사표설계 및 집계방법 결정 : 4~5월
  - 대상업무 선정 : 4~5월
  - 조사용역업체 선정 : 5월
  - 민원인 명부수집 및 조사실시 : 6월
  - 조사결과 분석 : 7월 중
- 〈중앙부처급 및 지자체 측정〉
- 대상업무 선정 : 6~8월
  - 민원인 명부수집 및 조사실시 : 9월~10월
  - 조사결과 분석 : 12월~

2. 대상업무 선정

○ 일반시민 대상의 민원업무

- 기관의 민원업무 중 부패소지가 큰 업무를 각 기관별로 평균 4~6개 선정
  - 기관별 민원대상 목록을 수집하여 이를 민원업무 성격별로 분류한 후 인.허가, 지도점검 등 정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 위주로 선정
  - 민원업무 성격별 비위관련 통계자료, 언론 등에 보도된 부패 내용 등도 참고
  - 시도 지자체 등 기관특성이 유사한 기관은 유사업무를 선정
  - 건축, 보건위생, 환경, 소방, 세무, 교통 등
- 〈시험측정시 조사대상 업무수〉

1차(2000.8)	2차(2000.11)	3차(2001.11)
7개 기관 평균 4.9개	23개 기관 평균 4.7개	30개 기관 평균 4.6개

○ 기관대상의 민원업무(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 측정대상기관의 민원기관 소속 직원들을 선정
- 정부의 부차단위 행정기관의 경우 재정지원을 받는 산하단체, 협회 소속 직원도 설문대상에 포함

3. 표본추출방법

- 조사결과와 대표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 평균 약 500명을 업무영역별로 구분하여 추출
- \* 시험측정 표본수 : 2000년 300명, 2001년 400명
- 기관별로 선정된 업무의 민원인 명부를 우선 확보

제2002-92호 부패방지 기본계획안	
제15차 전원의회의(2002. 7. 15.)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국가의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패척결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부패방지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적.국민적인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부패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입안함 * 부패방지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우리나라 부패의 실상과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일반행정, 사법, 정치, 기업, 시민사회 및 국제협력 등의 각 부문별 부패방지 목표와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심의내용 ○ 부패방지를 위하여 부패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3. 의결결과 : 부패방지 기본계획 입안.확정	
4. 비고 * 부패방지 기본계획 : 별첨	

차 례

- I. 기본계획 수립배경(생략)
- II. 우리나라 부패실상 및 부패방지 노력평가(생략)
- III. 부패방지의 목표 및 기본방향(생략)
- IV. 부문별 대책방향 및 추진과제
  - 1. 일반행정부문
  - 2. 사법부문
  - 3. 정치부문
  - 4. 기업부문
  - 5. 시민사회 및 국제협력부문
- V. 기본계획 추진평가 체계

IV. 부문별 대책방향 및 추진과제

1. 一般行政 部門

現況 및 問題點

- 行政過程의 透明性 및 國民參與 未洽
  - 행정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청렴서약제」, 「정보공개제도」를 확대하고, 「시민감사관제」 등 국민참여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기관 일부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확대시행 필요
- 行政制度 改善 및 規制改革의 限界
  - 부패취약분야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규제 개혁으로 일상적인 행정부패가 상당수준 줄어들고 있으나
  - 불명확, 불합리한 행정기준 및 지침이 여전히 상존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미흡
- 公職社會의 腐敗 寬容의인 意識과 慣行
  - 동료의 부패행위를 눈감아 주고, 온정주의적인 적발처벌이 관행화 되어있어 부패를 근절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
- 高位公職者 非違行爲로 國民信賴 低下
  - 최근의 각종 비리 관련 의혹에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고, 사정기관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정부 불신을 초래

改善 對策

政策 方向

- 행정 처리과정별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공직자 스스로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부패방지를 위한 외부통제와 함께 자발적 통제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및 수범사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공직사회의 내부자 신고 및 국민감시를 활성화함으로써 부패를 눈감아주는 관행을 타파

1-1. 行政의 透明性 提高

□ 민원처리 절차의 투명화·간소화

-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도입 확대
  - 인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부패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
    - ▶ 1단계(2002년) : 중앙 325종→1,212종, 지방 571종→774종에 도입
    - ▶ 2단계(2004년) : 전자처리가 가능한 민원업무의 70% 이상에 도입
    - ▶ 3단계(2006년) : 전자처리가 가능한 민원업무 전문야로 확대
- 민원업무 처리절차의 간소화·명료화
  - 불필요한 요식행위 및 규제를 철폐하고, 민원행정 기준 및 절차를 메뉴얼화하여 공개함으로써 비리의 원인을 시스템적으로 제거

- 대인 접촉기회 최소화
  - 가급적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전화, FAX 등으로 민원처리를 가능하도록 개선

- 자치단체에 「허가 전담과」를 설치, 원스톱 처리를 통한 특례비리 요인 차단

□ 정부 계약 및 사업발주 과정의 부패소지 차단

- 「전자 입찰제」의 운영 내실화 및 도입 확대
  - 현행 일부기관에서 시행중인 전자입찰제의 미비점을 보완, 전 공공기관에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다수 사업자 간의 경쟁유도 및 부조리 유발요인 차단
    - ▶ 1단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규모이상 사업에 의무화
    - ▶ 2단계 :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 공직 유관기관까지 도입 확대
  - 수의계약 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준용, 부조리 사전 예방

-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 및 입찰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통합 조달정보시스템(G2B)」 구축

○ 「청렴 서약제」 도입 확대

- 일부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렴 서약제」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일정규모이상 모든 사업으로 확대 시행
  - ※ 사업자와 공무원이 공사와 물품구매 계약시 청렴을 서약하고, 사업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 사업계획 수립시 「청렴성 확보 계획」 첨부 의무화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시 사업 기본계획에 부패방지를 위한 실행계획을 반드시 포함
    - ※ 계약단계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까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과정의 부패방지 관련 계획 포함

□ 행정 정보공개 확대

행정정보의 비공개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공개 범위를 축소

- 정보 공개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성있는 다양한 수단 검토

○ 국가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표준절차 및 기준 관리체계 확립

- 의사(정책)결정 과정의 기록 및 공시 강화
- 정책 보고서, 회의록, 발주예산, 통계 등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

- 시민의 청구가 없어도 주요업무와 예산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행정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해 시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 감사관제도」 확대 시행

○ 각종 정부위원회에 시민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 참여 활성화

- 국민생활과 직결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민관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단속의 신뢰성을 증진 (건축,환경,위생소방분야 불법행위 점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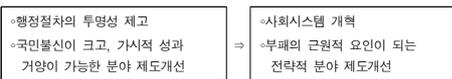
□ 투명한 인사운영 시스템 구축

- 공문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정하고, 인사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운영
- 인사평정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
- 보직,승진 등의 인사청탁을 배제하고, 성과와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 확립

1-2. 腐敗 脆弱分野 制度改善

□ 추진 전략

-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단기적 과제부터 개선, 점차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



○ 제도개선 이행실태 평가체계 마련

- 추진중인 부처별 부패방지시책의 이행상황을 점검, 부진 과제를 보완하여 집중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
  - \* '99년부터 시행중인 "420개 행정개혁과제" 이행상황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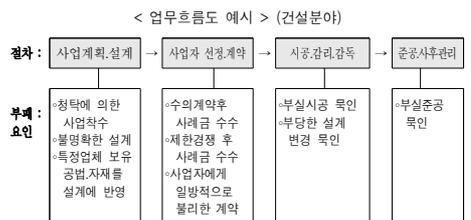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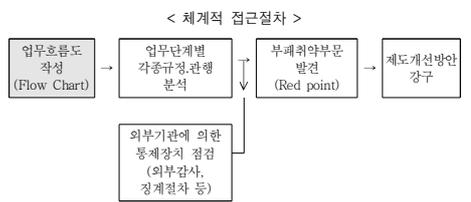
○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 부패방지 국민제안제도, 투명성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의견 적극수렴

□ 접근 방법(체계적 접근)

- 부패 취약분야별 「業務處理 흐름도」를 작성, 단계별로 적용되는 각종 규정의 점검을 통한 「위험부문」(Red point)을 발견, 개선방안 강구

- 감사,정계절차 등 외부기관에 의한 견제와 균형(Checks & Balances) 장치상 문제점을 발견, 개선방안 강구



□ 추진체계

○ 부패방지위원회와 관계기관 역할분담

- 부패방지위 : 여러기관이 관련되고 근본적이고 덩어리가 큰 과제  
각급 공공기관의 제도개선 추진지침 제공
- 관계 기관 : 기관 자율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

○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DB 구축

- 부방위와 관계기관이 역할분담, 부패취약한 모든 분야의 업무  
흐름도(Flow chart) 작성, 자료 축적
- \* 중장기 계획을 수립 예산 확보, 전문연구기관 용역외
- 기관별 장·단기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1-3. 公職社會의 倫理觀 確立

□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확산

- 이권개입·이익충돌 금지, 선물·경조금 수수 제한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표준적인 행동규범 마련
-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표준안”을 마련한 후 이를 토대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 행동강령 제정, 시행

□ 공직자 반부패 교육 의무화

-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에 반부패 관련 교과과정 편성 의무화
- 신규입용시 반부패 의식 및 인식도 평가
- 정기적인 직장교육 강화

- 지방공무원 감사직렬 신설 및 기관별 부패방지대책 전문인력  
보장방안 검토

○ 우수 감사인력의 확보

- 선발기준 강화, 처우개선 및 보직관리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 시민의혹 주요 사례에 대한 감사결과와 홈페이지 게재방안 등

□ 기관별 「윤리 위험성 분석」 실시

-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직무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윤리 위험성을  
분석하여 자체 진단 및 사전 예방책 강구

□ 기관별 “반부패 유공자” 발굴, 포상 및 홍보

1-5. 非違公職者에 대한 摘發·處罰의 實效性 確保

□ 부패신고 및 국민적 감시기능 활성화

○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조직문화 형성

- 부패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부패행위 공무원 및 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제」 강화 등
- \* 공직사회내의 내부고발 및 「연대책임제」를 강조하는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

○ 「부패공직자 신고제」, 「주민감사청구제」, 「시민감사관제」 등의  
운용을 활성화하여 부패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제고

- 간부 공무원의 경우 청사단위로 통합교육 실시(연1회)

-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직장단위로 실시

- ▶ 중앙행정기관 :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로 구분 합동교육

- ▶ 지방자치단체 : 기관별 자체교육 실시

○ 직급별·분야별 표준교과 제작, 전문강사 Pool 구성·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내실화

- 고위 공직자(재산공개 대상자)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를  
개선하여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

○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투명성 증대방안 강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운영의 내실화

○ 허위등록 등 중대한 의무위반시 제재 강화

1-4. 機關別 腐敗防止 力量 強化

□ 기관별 자체 감사역량 강화

○ 감사부서에 외부 전문인력 참여 확대

- 감사부서장 외부전문가 개방형 채용
- 각계 전문가들로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 감사인력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 감사부서 인력의 전보 제한기간 연장(2년→3년)

-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감사인력의 기관간  
교류 확대

□ 신고된 부패행위 처리의 확실성 제고

○ 부패행위 적발의 실효성 제고

-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된 부패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 후  
조사기관에 이첩함으로써 부실조사를 예방하고, 제조사 요구권을  
적극 활용 조사기관을 견제함으로써 부패행위 적발률을 제고

○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분보호, 보상 등 신실된 제도를  
철저히 이행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  
임을 해당기관, 단체, 기업의 장이 지도록 함
- 신분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단순 징계나 과태료 처  
분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  
사의뢰 등 처벌 강화 검토

○ 고위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장치 마련

- 부패방지법상의 고위공직자 직접 고발권, 검찰의 공소 미제기에  
대한 재정신청권 등으로 공정하게 처리하여 국민적 신뢰 회복

○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부패행위로 얻은 수익은 남는다”는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부패행위 공직자에 대한 재산형 및 벌금형 강화

○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확립

- 부패통계 D-Base를 구축하여 부패 유형별, 직급별 처벌 양형의  
형평성을 유지

□ 부패한 공직자가 발붙일 수 없는 풍토 조성

○ 부패사유로 파면·해임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격정지.

피선거권 제한 등 제재방안 강구

-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官經으로 이어지는 부패 사슬을 차단
-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주요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형집행 정지 등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처리

## 2. 司法 部門

### 現況 및 問題點

○ 法執行에 대한 國民의 不信

- 최근 고위 공직자 및 권력층과 관련된 비리사건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부패척결을 위한 확고한 의지 및 공정한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 특히 사정기관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사태가 잇따라 제기됨으로써 사정기관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국민들 사이에 법 정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
- 또한 판·검사의 재량권이 비교적 넓은 형사구속 사건 등과 관련하여 전관예우의 관행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 형사정책연구원의 '98년 조사결과 대부분의 변호사들(68.9%)이 전관예우의 관행이 존재함을 인정

○ 法曹非理 誘發 環境 尙存

- 과도한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불투명한 회계처리, 법조브로커의 暗躍,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급행료 수수 관행 등 법조비리 유발요인 상존
- 수감자, 감호시설 수용자 인권과 관련된 교정 부조리 등 법조주변 정화 필요성 대두

### 改善 對策

#### 政策 方向

- 사정기관의 중립성 및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증진하여 사법처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
- 사법처리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적 신뢰 회복
- 엄격한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법조주변의 비리유발 요인을 개선하여 투명한 법조환경 조성 및 국민불편 해소

2-1. 腐敗行爲 處罰의 嚴正性 및 衡平性 確立

-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기소율 및 실형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양형 합리화 방안 수립
  - 구체적 범죄행위에 대한 양형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양형기준 마련방안 검토
- 부패 공직자에 대한 사면·감형의 엄격한 적용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판례분석 결과, 1981 ~ 1999년 기간 1급 이상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행위자의 41.4%가 사면, 38.4%가 복권되었음

□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적발·처벌가능 강화

- 독립적·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방지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진담부서 설치방안 검토

2-2. 司法處理 過程의 透明性 提高

□ 사법절차 공개 강화

- 주요 국민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 진행상황을 개인의 사생활 및 정보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 검토
- 민간인으로서 재판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민간 참관인제도」 도입방안 등 검토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 검찰 소추 재량권의 합리적 개선

- 검찰의 기소독점권 및 소추재량권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검토
  - 공무원 비리 등에 대해서는 제정신청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

2-3. 法曹人事의 公正性·民主性 提高

- 검찰인사의 중립성 확보
  - 검찰인사위원회에 법학자, 시민단체 대표, 재야 법조인 등 외부인 참여를 확대하고,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위상 격상
- 법관 임명절차의 합리적 개선
  - 법관 직급제 및 제임용 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
- 법조인력 교류 확대
  - 판·검사, 변호사간의 교류 및 초임 판·검사의 변호사 경력자 임용비율 확대 방안 등
- 사법집행기관 등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검토

2-4. 法曹周邊 非理誘發 環境 改善

- 법조계의 엄격한 윤리규칙 확립
  - 구체적이고 엄격한 자체 윤리강령 제정 시행
    - 검찰, 법원, 변호사 각각 실천적인 내용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시행
  -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확실한 제재장치 마련
  - 변협을 통한 자율적 정화노력 촉진

전관예우 관행 개선

- 현재 시행하고 있는 퇴직 법관(1년 이내)의 특정 형사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구성 운영의 내실화
  - 퇴직 검사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는 퇴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최종 근무기관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검토 등

법조주변 브로커 활동 차단

- 부패관련 전과자의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 제한 등

변호사의 성실 직무수행 유도

- 적절한 수임료 기준설정, 법률서비스 개선, 투명한 회계처리 등 성실 직무수행 방안의 변호사 단체를 통한 자율적 개선 유도
- 중대한 비리 변호사에 대한 영구 제명
- 범조분야 경쟁체제 확대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 국선 변호인 비용 현실화로 제도 운영의 내실화
- 법조주변 공무원의 부조리 관행 개선
  - 각종 증명서 발급, 기록, 복사, 등본열람, 서류접수, 집달업무 수행 과정 등에서의 부조리 관행 근절
  - 수감자 및 감호시설 관련 부조리 정화

2-5. 司正機關에 대한 外部 統制裝置 確立

- 사정기관 비위공직자에 대한 특별 제재장치 마련
  -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직접 고발
- 국민의 감시기능 강화
  - 사정기관의 활동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 시민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등

3. 政治 部門

現況 및 問題點

- 高費用 政治構造
  - 불합리한 선거풍토 및 지구당 유지비 등으로 막대한 정치자금의 소요되는데 비해 합법적인 자금 공급수단이 많지 않아 불법적 자금모금 및 집행 가능성 상존
- 政經癒着에 의한 權力型 政治腐敗 環境
  - 정치인이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국책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 부여 등
- 政治人 腐敗에 대한 嚴正하고도 迅速한 處罰 未洽
  - 선관위 등 정치적 중립기관의 선거부정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 미흡
  - 정치부패에 대한 재판자연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효과 반감
  - 일반 국민에 비해 정치인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어론 상존
- 地域緣故主義의 性向의 後進의인 國民 政治意識
  -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념 또는 개인별 자질실적보다 연고를 중시하는 투표 행태
  - 선거과정에서 부당한 민원해결을 청탁하여 정치인의 불법·탈법을 유발하는 후진적인 정치문화

改善 對策

政策 方向

- 정치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 부패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제한 등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 장기적으로는 정치부패의 근원인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 해소를 위해 선거, 정당, 정치자금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시민의 정치참여.감시활동 보장, 국회 운영과 정책결정과정 공개, 정치자금 내역 공개 등을 통해 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
- 행정부,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바람직한 정책방안들이 입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강구

3-1. 高費用 政治構造의 清算

□ 국민경선제 등 상향식 추천제도 정착

- 국민경선 및 상향식 후보자 선출을 위한 비용을 국가 및 정당이 부담하는 등 실효성 확보방안 검토

□ 정당운영의 내실화

- 원내중심 정당운영 및 중앙당 축소
- 지구당 사조직화 지양 등 지구당 운영 개선
  - 국회의원 및 선거 입후보자(예정자 포함)의 지구당 대표 금지

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

□ 금권선거 적발.처벌 강화

-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계좌 추적권 등 심사권을 강화
- 선거사범 재판 신속처리
  - \* 선거사범 전담재판부 설치 및 선거사범 2심제 도입
- 선거사범 공소시효 연장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 심의 강화

-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재산형성과정 심의권한 부여

□ 기업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공급 제재

-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제공
- 기업의 비자금 조성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지금급” 인출.상환시 세무당국에 소명자료 제출
-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모금 활성화 및 정경유착의 고리차단
  - 현행 법인.개인이 연간 납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한도액을 하향 조정

□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선관위에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

□ 저비용 선거풍토 확립

- 현행 소선거구제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점을 안고 있음을 감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제) 도입방안 등 선거구제 개선방안 검토
  - 정당 중심의 정책선거 활성화 및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축소
- 돈이 적게드는 방향으로 선거운동 방법 개선
  - 후보자 등록 전 제한적 방법의 사전선거운동(입후보의사 퍼덕 및 구두 지지호소 등) 허용으로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 집중 지양 등 선거비용 축소
  -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활성화
- 선거비용 축소 및 “선거공영제 확대” 실시
  - 선거기간 동안 합법적 선거운동비용의 국고부담 확대
    - \*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하는 등 완전 선거공영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제도의 보완을 전제

3-2. 政治資金 收入.支出의 透明性 確保

□ 정당 국고보조금 및 선거비용 사용에 대한 선관위 조사.확인 강화

- 정당계정 수입.지출의 투명성 제고
- 선거비용 지출의 진실성 확보
  - 선거관련 비용 수입.지출 증빙서류의 허위기재, 위조.변조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불법 정치자금 적발.처벌 강화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제정된 관계법이 불법 정치자금을 효과적

- 일정액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 및 지출시 수표.카드사용 의무화

-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내역을 상세히 공개

- 정치자금의 개념을 확대하여 생활보조비, 병원비, 차량구입비 등을 위한 각종 기부행위도 정치자금의 규제대상으로 확대

□ 정치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장치 강구

- 정치인.공직자 재판 신속처리
  - 피고인의 재판연기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집중심리제를 적극 활용

○ 정치 부패자 공무담임권 제한 강화

- 정치부패 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행사의 신중한 행사

- 비리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제한 방안 검토

3-3. 政治活動의 公開 및 國會 倫理規定 強化

□ 국회 운영과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 확대

- 기록 표결제의 정착
- 각 위원회 의사활동 유선중계방송 조기 실시
- 국회 윤리규정 준수 강화
  - 사업 및 전문인 자격 등과 관련, 이해 관계가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

- 정책결정과 법령심사 과정에서 이익충돌 금지규정의 적용
  -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공무원행동강령과 동일한 수준의 회피, 제척 규정 마련
- 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고 기능을 활성화
- 바람직한 정책대안에 대한 입법화 장치 마련

- 행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제출된 법륵안 및 입법정원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화 노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검토

### 3-4. 國民의 政治意識 提高

- 정치 주체로서의 국민 참여의식 및 책임의식 제고
  - 후보자의 청렴사약, 부패방지 공약제시 등 실천촉구 서명운동
  - 선거관련 부정·비리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 강화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금지 캠페인 및 이벤트 개최
  - 대중매체를 활용한 정치부패 척결 실천운동 홍보
  - 금품·향응요구 및 경조사 참석요구 금지 등 참여적인 캠페인 전개 등
- 시민단체의 합법적인 비판·참여활동 보장 및 제도화
  - 합법적으로 국회활동과 선거과정을 감시·비판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

- 정치활동에 대한 시민평가의 제도화 등
-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등 도입 검토
-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패기록 등 공개 강화
- 현재 금고형이상 공개에서 벌금형이상 전 권과기록 공개

## 4. 企業 部門

### 現況 및 問題點

- 倫理經營 基盤 構築의 限界
  - 대규모 기업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 내부통제의 토대는 개선하였으나
  -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부패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으며,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법과 정·관계 로비가 불가피하다는 의식 만연
    - \* 분식회계, 탈세, 비자금 조성, 외부감사 방해행위 등으로 표출
- 금융기관의 자율성 미흡 및 자본시장의 불안정으로 기업에 대한 외 부견제시스템 미흡
- 政·經 癒着 慣行 殘存
  - 관주도 경제성장 시대의 관제로 정부의 인·허가권, 금융지원 등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부패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
- 支配 大株主의 道德的 解弛와 非合理的 經營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경영정보에 대한 외부 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워 지배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 지배 대주주가 감사 및 이사를 사실상 선임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미흡

### 改善 對策

### 政策 方向

-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경영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한 투명한 기업경영 환경 조성
- 외부 감시 및 기업내부 통제제도를 강화하여 책임경영체제 확립
- 기업의 자율적인 부패차단 노력에 대한 협조·지원 확대

### 4-1. 企業經營의 透明性 提高

#### □ 회계 투명성 증대

-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 대한 성실한 직무수행 유도
  - 분식회계를 방조한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 대한 엄정한 제재
  - 기업들이 공인회계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회계자료 작성 단계부터 투명성 확보
- 회계기준의 지속적 개선 및 국제적 적합성 제고
- 외부감사 방해행위 제재에 대한 엄정한 처리
  - 피감사 법인에 대한 컨설팅업무 수행 제한, 외부 감사인 선임 절차의 객관화 등을 통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 기업과 회계감사인과의 유착고리 차단
  - 동일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제한
  - 다수기업에 대해 회계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분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관리하는 등 회계감리의 효율화 촉진

□ 기업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 정기 및 수시 공시 의무사항의 확대
-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 비자금 조성 억제

-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혐의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의 엄정한 추징
- 무자료, 차명금융거래 및 무기명 법인카드 사용 억제방안 강구

4-2. 公正한 市場競爭 促進

□ 외부통제 강화

- 금융시장의 자율성 및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
- 기업의 청렴성 평가모델 개발
  - 경제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이 기업의 청렴성을 공정하게 평가, 공표할 수 있도록 평가 모델을 개발, 도입 권고
- 뇌물공여 등 비리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등 시장퇴출 촉진방안 검토
- 접대문화 근절을 위해 법인카드 발급·사용시 실명 기록 의무화
- 사업자 단체의 담합행위 처벌 강화
- 각종 협회, 조합, 연구소 등의 부패방지방안 마련 시행
  - 주무기관·감독기관을 통해서 개선대책 마련

□ 내부통제 체제 강화

- 예방적 차원에서의 기업 내부고발제도 촉진
- 기업 경영진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벌칙의 강화 등
- 내부 지배구조 개선
  - 주주(대주주, 소액주주, 이사회), 이해관계인, 경영자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시스템 확립

4-3. 企業의 倫理經營 基盤造成

□ 윤리경영 제정 시행, 윤리위험성 테스트, 직원 윤리교육 등 자발적인 윤리경영 기반확립 지원

- 실천적인 행동준칙 매뉴얼인 「기업윤리 실천강령」을 개발하여 개별기업에 도입 확산
-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 부패기업 처벌 및 책임추궁 강화

- 기업이 지켜야 할 “준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기업 부패행위 적발시 직접 관련된 임직원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 추궁하는 방안 검토

□ 정부 정책의 원칙 및 제도의 잦은 변경이 비원칙 경영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 가급적 정책의 원칙 및 제도의 일관성 유지

4-4. 公企業의 腐敗誘發要因 改善

□ 부패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제도” 등 활성화
-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 부정부패 척결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
- 공기업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외부기관의 업무지시에 대한 기록 및 공개를 통한 경영간섭 통제
  - 정부정책의 잦은 변경을 지양하고, 실적에 따른 기관장 연임보장 등 공기업의 자율성 제고

□ 인사운영 및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

- 공정한 인사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인사결과를 공개
- 실천적인 행동강령 제정·시행, 내부고발 및 부패신고 활성화
-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정비,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도입 등

□ 경쟁적이고 투명한 조달체제의 확립

- 인터넷을 통한 사업·구매 발주내역 및 예산 공개
- 전자조달 시스템을 전 부문으로 확대 도입
- 자회사와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수의계약 제한
- 사업발주, 설계변경 심의에 시민참여 확대 등

□ 예산·회계의 투명성 제고

- 회계기준 및 회계감사제도 개선
-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해 공시자료 표준화 등 경영공시제도 개선
- 합리적인 회계관리규정 마련

5. 市民社會 및 國際協力 部門

現況 및 問題點

- 體系的인 腐敗防止 教育 未洽
  - 부패방지를 위한 학교교육 및 일반시민,직장인 등 대상의 사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깨끗한 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의식형성에는 한계를 드러냄
  - \* 반부패국민연대의 여론조사('01.12월)에서 중고생 16%가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고 응답
- 國民의 參與意識 不足
  -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부패방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참여 유발 및 사회전반의 부패추방 분위기 확산에는 역부족
- 國際社會에서 腐敗한 國家로 認識
  -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중하위 수준(42위)으로 평가되고 있어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아시아권 경쟁국가보다 뒤지고 있는 실정
  - \* 싱가포르(4위), 홍콩(14위), 일본(21위), 대만(27위), 말레이시아(36위)

- 「청렴성 그룹(Integrity Group) 발굴.확산
  - 사회 각 분야의 양심적이고 청렴한 전문가 집단을 발굴, 청렴 분위기 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지원
  - \* 청렴그룹(예) : 공익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도덕교사모임, 바른경제동인회 등
- 부패추방 국민운동 활성화
  - 「투명성 포럼(Transparency Forum) 구성.운영
    - 정부기관,학계,시민단체 등 반부패 전문가들로 포럼을 구성,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의 동참과 합의기반 형성
    -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
    - \* 민간주도로 운영하되, 정부는 후원 및 행정적 지원 역할
  - 「부패방지 민.관 협의회」 결성, 언론기관,종교단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활성화
  -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분야의 부패추방활동 시민단체에 대한 적극.지원

5-2. 體系的인 反腐敗 教育 實施

- 各급 학교를 통한 반부패 교육
  - 초,중,고교 교과서에 부패방지 교육내용 수록
  -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 강화
    - 방과후 및 방학을 활용한 반부패 우수기관 및 청렴기업 방문, 청렴 그룹과의 만남 등

改善 對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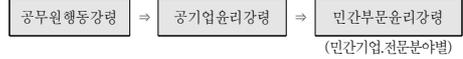
政策 方向

- 부패 관용적인 문화,의식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지속적인 반부패 교육홍보대책 추진
- 국민이 부패행위를 고발하고, 부패추방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관심제고 및 참여 촉진
- 국제사회에서 부패한 국가로 지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피, 청렴한 국가 이미지를 능동적으로 창출

5-1. 反腐敗 倫理基盤 確立

- 사회 전반의 윤리규범 확립
  - 전문분야 윤리강령 도입 확산
    -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델로 하여 정치인,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 분야별로 실천적인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도록 유도
  - 「기업윤리 실천강령」 개발 및 보급 지원
    - 기업윤리 강령을 전 상장기업에 도입 확대

< 사회전반의 윤리의식 확립 흐름도 >



-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시간에 반부패 관련인사 초청강연 실시
- 교육대상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렴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
- 평생교육 기관을 활용한 반부패 교육
  - 문화교실, 주부교실, 노인대학, 직장교육,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각종 평생교육 기관의 반부패 교육 지원
- 「반부패 전문강사」 육성 및 교재개발.보급
  - 청렴한 공직자, 청렴그룹 인사, 시민단체 전문가, 교사 등으로 반부패 전문강사 Pool 구성
  - 대상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재개발.보급
- 부패방지 전문교육 추진체제 확립
  - 공무원,기업,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장단기 추진체제 확립
  - 단기적으로 기존의 각종 교육기관 및 자체 교육기회를 활용하여 교육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부패방지 전문교육원」 설치 운영
  - 「전문교육원」에서 전문가 양성 지원센터 역할 병행 수행

5-3. 國民參與 促進을 위한 反腐敗 弘報 強化

- 健전한 시민 高발정신 함양
  - 내부고발자에 대한 확실한 신분보장 및 신분보호 확행
  -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상, 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
  - 지방순회 신고접수 운영
  - 부패방지위원회와 자치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에 설치된 신고센터 간의 네트워크체제 구축
  - 부정부패고발 모니터링원 위촉 등 다양한 홍보수단 개발등
-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 시민감시 및 참여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부패방지 광고 공모전, 부패방지 국민제안제,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적극 시행
  - 반부패 관련 국내의 성공사례 발굴, 홍보
    - 외국의 반부패 성공사례 비디오 또는 영화로 제작
    - 국내 부패행위 적발, 처벌 사례, 모범사례 등을 발굴, 특집 기획 기사 또는 드라마 제작 지원
- 시민단체 활동지원 강화
  -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시행

V. 基本計劃 推進, 評價 體系

1. 腐敗防止對策 推進體系

-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 수립 주체 : 부패방지위원회
    - \* 근거 : 부패방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주요 내용
    -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목표 및 기본방향
    - 부문별 대책 방향
    - 정부, 민간 등 부분별 협조 및 역할 분담
  - 계획 기간 :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 \* 「부패방지 기본계획」에 의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매년 「연도별 부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시달
- 기관별 「부패방지 실행계획」 수립, 시행
  - 수립 주체
    - 중앙행정기관, 시, 도, 시, 도교육청, 헌법기관, 기타 공공기관
  - 계획 수립 및 시행
    -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수립한 「연도별 부패방지 추진계획」에 따라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 기관별 실행계획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 협의완료 후 시행

5-4. 反腐敗 國際協力 및 國家 이미지 提高

-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선진국, NGO 등과 네트워크체제 구축
  -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을 국제기구에 파견, 적극적인 여론형성 및 향후 부패라운드에 대비한 전문인력으로 육성
-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국제사회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우리의 부패방지 노력을 국제적 여론 형성 집단 및 국제기구 등에 적극 홍보
  - 국내거주 외국기업, 기관들에 대한 특별 홍보
    - 주한 외국인 진담 부패장구 및 영문 홈페이지 개설
    - 국가별, 지역별 사업관련 모임 등을 활용한 합동설명회 개최
    - 국내소재 주요 외국기업 직접 방문 설명 및 서한 발송
    - \* 연세대 국제학연구소의 외국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01.11월), 부패수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우리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기인
- 반부패 관련 국제행사의 적극 참여
  - 2003. 5월 개최예정인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IACC)」 및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Global Forum)」의 성공적 개최 지원
  - 각종 NGO 등의 부패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 적극 지원

2. 腐敗防止對策 履行 點檢, 評價 體系

- 부패방지대책 추진실태 평가
  - 평가 체계
    - 원칙적으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광역자치단체와 역할 분담
      - ▶ 부패방지위원회 : 중앙부처, 시, 도, 시, 도교육청, 정부투자기관
      - ▶ 광역자치단체 : 관할 구역 내의 기초단체 및 지방공기업
    - 기관별 감사관실 주관으로 자체 평가 실시
  - 평가 내용
    - 기관별 부패방지 실행계획 내용의 적정성
    - 계획대비 이행실적
    - 민원인, 전문가 등에 의한 평가
    - 부패행위 적발, 처벌 실태 등
  - 평가 주기 : 년 2회(상반기, 하반기)
  - 평가결과 활용
    - 년 1회 대통령 주재, 「부패방지 평가 보고회」 개최
    - 우수기관 포상, 수범사례 전파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공표
  - 민원인의 의견을 토대로 각급기관의 부패실태를 측정, 공표함으로써 기관별 자발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
  - 「청렴도 측정모델」을 개발, 측정 발표
    - 중앙행정기관, 시, 도, 시, 도교육청, 정부투자기관 대상
    - \* 기관별 년 1회 측정, 공표

3. 有關機關 協調體制 確立

- 기존의 유관기관 협조체제 적극 활용
  - 반부패 관계장관회의 및 실무위원회, 각급기관 감사관회의 등
- 「부패방지대책 민관 협의회」 설치
  - 민관을 포괄하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추진을 위한 구심체 역할
    - 부패방지대책 추진 방향,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협조방안 협의
  - 구 성 : 정부, 민간위원을 포함 20명 내외
    - 정부위원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차관급
    - 민간위원 : 경제계, 종교계, 언론계, 시민단체 대표인사 등
    - \* 대통령 훈령으로 근거규정 제정 추진

4. 腐敗關聯 情報.資料 共有體制 確立

-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방지 자료센터」 설치
  - 부패방지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 부패방지 관련 각종 통계 DB 구축
- 공유 체제
  - 자료 소식지 발간
  - 홈페이지 개설, 국내외 부패방지관련 주요기관과 On-Line 네트워크 체제 구축

신고자포상 및 보상사무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내지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5조 내지 제46조의 부패행위신고자 포상 및 보상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포 상

제 2 조(포상추천)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 3 조(정부포상 대상) 제2조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정부서훈 및 정부포상(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1.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2.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3. 기타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국가의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다수 국민에게 반부패의식을 깊이 심어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차 전원회의(2002. 8. 19.)	신고심사국
<p>1. 의안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제정함</li> <li>※ 신고자포상 및 보상사무운영지침안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훈법에 기초한 구체적인 포상절차 규정</li> <li>- 보상 사유와 요건,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조사, 확인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규정</li> </ul> </li> </ul>	
<p>2. 심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대상 가액 산정에 있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하되, 부패행위 신고서에 적시된 것에 한하는 것은 아님을 단서 규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의결함</li> </ul>	
<p>3. 의결결과 : 부패방지위원회 예규 제4호 발령</p>	
<p>4. 비고 ※ 신고자포상 및 보상사무운영지침안 : 별첨</p>	

제 4 조(정부포상 대상의 위원회 상정) ①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정부포상대상자를 추천한다.

②신고심사국장(이하 “심사국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정부포상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부패행위 발생기관 및 조사기관의 의견
2. 기타 부패행위 심사담당자 등의 의견

제 5 조(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등) ①제4조의 정부포상 대상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상훈법 등의 규정에 의한 부패방지위원회 서훈공적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의회 의 의결로 본다.

②위원회의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결이 있는 경우 심사국장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한 후 총무과장에게 통보한다.

③정부포상 대상 개인 또는 단체의 추천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천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상

제 6 조(보상금 지급신청)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행위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7 조(보상사유) ①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를 말한다.

1. 물수 또는 추정금의 부과
2. 국제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에 의한 환수
4.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 과료,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부패행위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 제6조의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 ①보호보상과장은 제6조에 의하여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조사결과, 보상금 지급신청 금액 및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등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제출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보호보상과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그 기간내에 보환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상금지급신청의 취소)** ①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자가 보상금지급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신청 취소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보상금 지급신청자가 보상금지급신청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분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제15조(조사 및 확인)** ①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패행위 발생기관 및 조사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여부 및 그 규모
2.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조래한 처분에 대한 경송절차의 진행여부
3. 신고자의 부패행위사건 가담여부 및 정도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조사 확인은 별지 제6호서식 보상자료확인요구서(부패행위발생기관) 및 별지 제7호서식 보상자료확인요구서(부패행위조사기관)에 의한다.

③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등에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인에 의한 신청)** ①보상금의 지급신청은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보상금지급신청서의 인적사항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신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이 날인된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자의 선정)** ①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보상과장은 2인 이상이 연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보상금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및 연명 신청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확인)** ①보호보상과장은 제9조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2. 위원회로부터 받은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서
  3. 그 밖에 보상금결정 및 지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 ②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지급신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국장에게 보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의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2. 판결의 확정 및 감사, 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부패행위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기타 보상금 지급요구가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보완)** ①보상금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보상금지급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④제3항의 경우 조사담당직원은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대상가액)** ①제7조에 의한 부과 및 환수 등의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물수 또는 추정된 금액 또는 그 물품
2. 국제 및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가산금 포함)
3.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환수되는 금액 또는 그 물품
4.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의 금액
5. 그밖에 처분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금액 또는 그 물품

②제1항에 의한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부패행위신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 증대분이 신고사항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③제1항에 의한 현물 등으로 수입된 물품의 평가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불특정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실례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실례가격
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도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④제1항의 보상대상가액 산정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제17조(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 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은 당초 신고한 부패행위 발생기관으로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가 직접 발생한 기관 외에도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로써 그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정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대상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1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7%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3천8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5%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1억1천3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3%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1억7천3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2%

②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1천원 단위 이하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보상금의 감액기준) 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제1항의 감액사유별 감액은 3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감액 기준을 중복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보상금 지급 제외 공직자)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업무분장 규정 등에 의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업무 종사자
2. 검찰·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
3. 공공기관의 감사 또는 감찰업무 종사자
4. 기타 부패방지 및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

제21조(감액지급 대상 공직자)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직자가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보상금의 산정순서 및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영 제35조의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 산정
2. 영 제40조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 적용
3. 영 제40조제2항의 보상금의 감액기준 적용
4.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보상금의 감액기준 적용

②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써 영 제23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상대상가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기준 적용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④제3항의 경우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적용한다.

## 제 4 장 보상심의위원회

제23조(보상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보상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위원회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제24조(구성 등) ①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인, 당연직 위원 4인 및 위촉직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보상위원장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법무부·기획예산처 및 위원회 소속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보상위원장)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하 "보상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간사) ①보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보호보상과장이 간사가 된다.

②간사는 보상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의결서 원본을 보관하며,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기타 주요 논의사항

제27조(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보상위원장은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보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호주 및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보상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상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보상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상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에게도 사분하여 통보한다.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상위원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보상위원은 제27조제2항에 의한 재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29조(보상위원회 상정) ①보호보상과장은 부패행위신고로 인한 보상금 지급신청 등에 관하여 조사 확인한 경우에는 조사 확인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제1항의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사·확인사항을 포함한다.

1. 영 제35조의 보상사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대상가액
2.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선정 여부
3.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제15조의 관계기관 등에 대한 조사확인사항
5. 제19조의 보상금의 감액기준 해당 여부
6. 제20조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직자 해당여부
7. 제21조의 감액지급대상 공직자의 해당 여부
8.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견조정) 보상위원회에서 보상금액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제31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출석대상자의 선정은 보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위원장이 정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보상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회의 개회일로부터 5일전까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출석요구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공직자인 출석요구 대상자가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한다.

제32조(위원 등의 수당) ①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이해관계인 및 관계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상위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보상위원의 실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 제5장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제33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 9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34조(위원회 심정 및 의결) ①심사과장은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이 보상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 이를 제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위원회에서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한다.

②보호보상과장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시기를 확인하여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보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 또는 대표자가 신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보상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금 수령권자가 받은 보상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6조(보상금의 이종지급 방지 등) ①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금의 액수가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그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 및 해당기관 등에 확인한다.

제37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보상금은 제8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 온 후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결자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38조(이의신청의 접수) ①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대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보호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의 접수방법 등에 대하여 제9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9조(이의신청의 처리) ①심사국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위원회에서 보상금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제35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40조(보상금의 환수) ①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③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의하여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

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심사국장은 보상위원회의 환수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⑤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

⑥위원회가 환수를 결정할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제35조제1항을 준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및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 제6장 보 칙

제41조(보상금의 지급연도) 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보상금에 관하여는 지체없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급한다.

제42조(보상관련 문서의 보존) 보상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보상금지급 등 신청서 : 5년
2. 보상금 지급신청 등 접수부 : 영구보존
3. 보상위원회 보상금지급 등 의결서 : 영구보존
4. 보상금지급 결정서 : 영구보존

## 부 칙

이 운영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은 생략함

제2002-99호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안	
제16차 전원회의(2002. 8. 19.)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 시책 수립 등의 부패척결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회 각 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민간부문의 원활한 협조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함	
※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안 주요 내용	
- 부패방지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존경받는 사회 중진 원로급 인사로 구성하되, 종교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 각계 대표가 골고루 포함 되도록 함	
2. 심의내용	
○ 사회 각계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존경받는 중진 원로급 인사를 중심으로 총 26명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정례 및 수시 회의를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기로 의결을 수렴함	
3. 의결결과 :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안 확정	
4. 비고	※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안 : 별첨

## 정책자문단 구성.운영계획안

### □ 목 적

- 부패방지사책 수립 추진과정에서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 부패방지 관련 민간부문의 원활한 협조 및 지원 기반 구축
- ※ 큰 거 : 부패방지법시행령 제16조(자문기구)
  -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제1항)
  -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2항)

### □ 기본방침

- 부패방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존경받는 사회 중진 원로급 인사로 구성
- 종교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 각계 대표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구성
- 유관기관.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추천을 받고, 적임자를 적극 발굴하여 위원 선정
- 정기적 회의 개최 등으로 내실 있는 정책자문단 운영

### □ 구성.운영계획(안)

- 명 칭 : 「부패방지위원회 정책자문단」
- 구 성 : 의장 1인 포함, 25명 내외(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학 계(3) : 한국행정학회, 한국부패학회, 한국NGO학회
- 시민단체(5) : 참여연대, 경실련, 반부패국민연대, YMCA,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 종교계(3)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주교회의
- 재 계(3) : 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언론계(3) :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 법조계(3) : 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추천
- 여성계(3)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학계인사
- 기 타(3) : 바른경제동인회, 환경운동연합, 학계인사

-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주요 기능
  - 부패방지 시책 수립 및 추진 방안에 대한 자문
  - 주요 현안 문제 발생시 대책방안 자문
  - 부패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의 원활한 협조 유도
  - 신고자 보호 등 부패방지위원회 활동에 대한 협조 지원
- 운영
  - 연 2회(반기별) 정례회의 개최(필요시 수시 회의)
  - 필요시 일부 위원들로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 『정책자문단』 회의 상정안건 준비, 회의결과 후속조치 등 보좌 기능은 정책기획실에서 담당

□ 추진 일정

-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상정·확정(8. 19)
- 제1차 정책자문단 회의개최(8월 말 또는 9월 초)
  - 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 및 정책 자문

제18차 전원회의(2002. 9. 16.)	제2분과위원회
<b>1. 의안 개요</b> ○ 부패방지법상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업제한의 세부기준, 관련 확인 및 보고 절차, 취업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발 등의 지침을 수립함 ※ 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 주요내용 - 비위면직자는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 함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회 관련 현황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에 점검 결과를 보고 - 취업제한 위반 사실 확인시 해임요구, 제한 위반자에 대한 고발 등	
<b>2. 심의내용</b>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규모에 관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등 준용하여야 할 관계 법규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취업 제한 위반자에 대한 고발 규정에는 부패방지법의 처벌 규정을 적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함	
<b>3. 의결결과</b> : 부패방지위원회 예규 제5호 발령	
<b>4. 비고</b> ※ 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 : 별첨	

**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6조 및 제52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한 부패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 3 조(취업제한)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위면직자는 공공 기관과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제 4 조(비위면직자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 한다.

②제1항에서 “부패행위”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 5 조(업무관련성) ①제3조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라 함은 법 제45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에)에 상당한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를, 과장의 상위직에 있는 자는 직제, 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하고, 파견근무자의 경우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법 제45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위면직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관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 6 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규모 등) ①제3조의 영리사기업체는 법 제45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중에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사기업체로 한다.

②제3조의 협회는 법 제45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협회를 제외한다.

### 제 3 장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및 확인

제 7 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비위면직자가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퇴직 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영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작성·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 1. 당면 퇴직·파면 및 해임의 사유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의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2.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5.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해당 되는지 여부

②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확인요청서 및 의견을 검토하여 영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 4 장 취업현황 등 보고

제 9 조(반기별 자료 제출) ①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을 위한 현황자료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반기별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황자료에는 반기별로 발생한 당면퇴직·파면 및 해임된 자를 전부 포함하되 당면퇴직이 사망·임기만료·정년퇴직 및 국적 상실로 인한 경우와 그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산자·한정치산자 및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등과 같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년도별 점검결과 보고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위면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확인하여 전년도 점검결과를 매년 3월31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관계기관 등에 조회한 공문 및 회신공문 사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 후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해임·파면의 원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와 사면 등에 의하여 당면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직유관단체의 보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및 보고에 있어서 감독을 받는 부·처·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제출 및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 및 보고한다.

제12조(관계기관 자료제출 협조 등)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현황보고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5 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제1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비위면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고발)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취업 점검결과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 상반기(2002. 1.25 ~ 6.30)의 현황 자료를 2002.11.10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서식은 생략함

## 第2部 報告事項

### I. 報告目錄

### II. 主要報告趣旨

- 국민에게 떳떳하게, 자녀에게 당당하게
- 흔들리지 않은 양심!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 I. 報告目錄

- 부패방지 나의 책임 부패신고 나의 의무
- 가장 소중한 배움은 올바른 마음입니다.

### 報告目錄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b>&lt;제1차&gt;</b>				
제2002-1호	'02.1.25.	업무 추진상황 보고	정책기획실	
<b>&lt;제3차&gt;</b>				
제2002-4호	'02.2.4.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정책기획실	
<b>&lt;제4차&gt;</b>				
제2002-6호	'02.2.18.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정책기획실	요지1
<b>&lt;제5차&gt;</b>				
제2002-8호	'02.3.4.	지방순회 부패신고 접수 및 홍보계획	신고심사국	요지2
제2002-9호	'02.3.4.	진정사항 처리보고	신고심사국	
<b>&lt;제6차&gt;</b>				
제2002-22호	'02.3.18.	진정(민원)사항 처리절차 개선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23호	'02.3.18.	진정사항 처리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24호	'02.3.18.	진정사항 수정처리 내역보고	신고심사국	
<b>&lt;제8차&gt;</b>				
제2002-36호	'02.4.1.	진정사항 처리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37호	'02.4.1.	공무원행동강령제정 추진계획	정책기획실	
<b>&lt;제9차&gt;</b>				
제2002-43호	'02.4.15.	진정사항처리 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44호	'02.4.15.	부패방지기본계획안	정책기획실	
제2002-45호	'02.4.15.	신고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국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b>&lt;제10차&gt;</b>				
제2002-50호	'02.5.6.	진정사항 처리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51호	'02.5.6.	진정사항 제검토결과 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52호	'02.5.6.	신고사항이첩 조사기관 선정기준안 보고	신고심사국	요지3
<b>&lt;제11차&gt;</b>				
제2002-58호	'02.5.20.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59호	'02.5.20.	진정사항 처리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60호	'02.5.20.	진정사항 제검토결과 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61호	'02.5.20.	신고사항 중 불이첩사항 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62호	'02.5.20.	주심위원제 운영방안	법무위원회실	요지4
<b>&lt;제12차&gt;</b>				
제2002-69호	'02.6.3.	고발 및 이첩사항 조사결과통보 검토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70호	'02.6.3.	진정사항 처리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71호	'02.6.3.	제조사 요구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72호	'02.6.3.	선거 관련 부패신고 접수 및 홍보계획	신고심사국	요지5
제2002-73호	'02.6.3.	청렴도 측정업무 추진경과	정책기획실	
제2002-74호	'02.6.3.	신고사항 중 불이첩사항 보고	신고심사국	
<b>&lt;제13차&gt;</b>				
제2002-79호	'02.6.17.	고발 및 이첩사항 조사결과통보 검토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80호	'02.6.17.	진정사항 처리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81호	'02.6.17.	진정사항 제검토결과 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83호	'02.6.17.	고발사건 조사경위 보고	신고심사국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b>&lt;제15차&gt;</b>				
제2002-94호	02.7.15.	이첩사항 조사결과통보 검토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95호	02.7.15.	진정사항 처리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96호	02.7.15.	진정사항 제검토결과 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97호	02.7.15.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안	정책기획실	
<b>&lt;제16차&gt;</b>				
제2002-101호	02.8.19.	이첩사항 조사결과통보 검토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102호	02.8.19.	진정사항 처리기준 개선안	신고심사국	
제2002-103호	02.8.19.	진정사항 처리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104호	02.8.19.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안	정책기획실	요지6
<b>&lt;제17차&gt;</b>				
제2002-111호	02.9.2.	이첩사항 조사결과통보 검토보고	신고심사국	
제2002-112호	02.9.2.	진정사항 처리결과보고	신고심사국	
<b>&lt;제18차&gt;</b>				
제2002-115호	02.9.16.	이첩사항 조사결과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2-116호	02.9.16.	이첩사항 조사결과 분석	신고심사국	
제2002-117호	02.9.16.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2002-118호	02.9.16.	감사종합시스템 운용대상기관 지정에 관한 보고	법무관리과	
<b>&lt;제19차&gt;</b>				
제2002-131호	02.10.7.	이첩사항 조사결과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2-132호	02.10.7.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2002-133호	02.10.7.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의견수렴결과 검토 보고	정책기획실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b>&lt;제20차&gt;</b>				
제2002-138호	02.11.4.	이첩사항 조사결과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2-139호	02.11.4.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b>&lt;제21차&gt;</b>				
제2002-143호	02.11.18.	이첩사항 조사결과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2-144호	02.11.18.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b>&lt;제22차&gt;</b>				
제2002-146호	02.12.2.	이첩사항 조사결과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2-147호	02.12.2.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b>&lt;제23차&gt;</b>				
제2002-154호	02.12.16.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2002-155호	02.12.16.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내부종결	신고심사국	

## II. 主要報告要旨

- 부패 없는 밝은 사회, 청소년이 만듭니다.
- 어릴 때 배운 정치 평생의 밝은 등불

요 지 1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제2002-6호	제4차 전원회의(2002. 2. 18.)	정책기획실
<b>I. 추진방향</b> 부패방지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각 기관과 부문간 계획의 종합성.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부패방지 기본틀 마련		
<b>II. 주요추진계획</b>		
<b>1. 범국가적 부패방지 추진체계 확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중심의 전 국가적 부패방지 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대책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li> <li>- 정부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기업 등 민간분야와의 협조체계 구축</li> </ul> </li> <li>○ 부패방지위원회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위원회 「자문회의」 구성 운영 및 전문위원 운용</li> </ul> </li> </ul>		
<b>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평가체계 확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청렴지수 측정.공표 및 부패방지 이행실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부패실태, 부패방지장치, 반부패 노력을 측정.지수화 하고 이를 공표</li> <li>- 「부패방지 기본계획」과 기관의 자체적인 부패방지계획 및 제도개선 이행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평가 실시</li> </ul> </li> <li>○ 「부패방지 평가 보고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시책 이행실태, 반부패 노력 등에 대해 매년말 평가 보고대회 개최</li> </ul> </li> </ul>		
<b>3. 부패구조의 개혁 및 부패 문화적 환경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 유발적 행정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경영의 투명성, 공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지속추진</li> <li>-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진단」 수립.추진 등</li> </ul> </li> <li>○ 공직자행동강령 제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행위 금지, 금전.향응.선물수수 금지 등 직무수행의 실제적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li> </ul> </li> </ul>		

제2002-8호	제5차 전원회의(2002. 3. 4.)	신고심사국
<p>1.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주 등 6대 주요도시별도 위원회의 「지방순회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li> <li>행사기간중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부패방지 캠페인 등을 전개, 위원회와 시민단체간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 계기 마련</li> </ul> <p>2. 순회 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 산 : 2002. 3. 11 ~ 3. 12 (부산상공회의소)</li> <li>광 주 : 2002. 3. 19 ~ 3. 20 (광주 YMCA)</li> <li>대 전 : 2002. 3. 27 ~ 3. 28 (대전상공회의소)</li> <li>울 산 : 2002. 4. 9 ~ 4. 10 (울산 YWCA)</li> <li>대 구 : 2002. 4. 16 ~ 4. 17 (대구상공회의소)</li> <li>전 주 : 2002. 4. 22 ~ 4. 23 (전주 YMCA)</li> </ul> <p>3. 캠페인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시외버스 터미널 등 주요지역 옥외 캠페인</li> <li>주요장소에 현수막 설치</li> <li>현지 지역대표(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와의 간담회 개최</li> <li>※ 지방순회 결과를 평가하여 향후 정례화 여부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사회적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조문화, 선물문화, 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지속적 전개</li> </ul> </li> </ul> <p><b>4.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체계 확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 활성화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신고 홍보 및 우수 신고자 포상 실시</li> </ul> </li> <li>신고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금지 및 신변보호장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자보호사무원영지침」을 제정하여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li> <li>조사기관의 자체신고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지침시달 등</li> </ul> </li> </ul> <p><b>5.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부패 선진국과의 「반부패 정책협의체」 구축</li> <li>2003년 「반부패 국제회의」 서울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 및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을 통하여 반부패 노력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도록 추진</li> </ul> </li> <li>반부패 관련 국제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의 반부패 관련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국내 소재 외국공관 및 주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 적극 홍보</li> </ul> </li> </ul> <p><b>6. 법국민적 반부패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관련 여론 파악을 위한 정기적 여론조사 실시</li> <li>반부패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매체와 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보급</li> <li>부패방지시책 홍보 및 캠페인 광고</li> <li>「반부패 공모상」 제정 시행</li> </ul> </li> </ul> <p><b>7. 부패방지 관련 소송체계 확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신청 등 위원회의 법률쟁송에 대비, 법률관계 전문인력 확보</li> <li>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분쟁처리를 위한 처리지침 마련</li> </ul>
--

제2002-52호	제10차 전원회의(2002. 5. 6.)	신고심사국
<p>1. 문제의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방지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신고사항을 감사원,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의 하나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실제 신고사항 처리에 있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과 감독기관간 세부적인 이첩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li> <li>※ 현행 기준(부패방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 사 원 :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수사기관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li> <li>감독기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li> </ul> </li> </ul> <p>2. 조사기관 선정기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검찰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혐의에 대한 증거가 비교적 명백하여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li> <li>신속한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li> <li>검찰직권 및 업무에 관한 사항</li> <li>기타 수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경찰에 이첩하기 곤란한 사항</li> </ul> </li> <li>• <b>경찰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보충수사가 필요하거나 광범위한 기초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li> <li>기타 경찰에서 수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감사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업무에 관한 사항</li> <li>부패행위 혐의내용이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사항</li> <li>부패행위 혐의내용에 대한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li>정부투자기관의 부패혐의에 관한 사항</li> <li>기타 감독기관에서의 조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li> <li>• <b>감독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소 경미한 신고사항으로서 소속기관의 상급감독기관에서 직무감독과 함께 수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li> </ul> <p>※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을 선정하되, 분과위원회 및 주심위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p>
---

제2002-62호	제11차 전원회의(2002. 5. 20.)	법무관리관실
<p><b>1. 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 상정 의안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선정, 사전 검토를 충실하게 하는 등으로 의안 심의의 효율성 제고 (제9차 전원회의, '02. 4. 15.)</li> </ul> <p><b>2. 주심위원회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심위원회 적용대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사항 중 고발사항과 이첩사항(재정신청 및 제조사요구 포함)</li> <li>분과위원회를 거쳐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의결사항 중에서 주심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는 사항</li> <li>제도개선 관련 : 개별 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li> <li>보호보상 관련 : 신분상 불이익처분자 조사.징계 요구, 파태료부과 사항 등</li> <li>비위면직자 관련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및 해임요구 사항 등</li> </ul> </li> <li>주심위원 위촉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위원 7인이 주심위원을 담당</li> </ul> </li> </ul> <p><b>3. 주심위원회 운영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사항 〉</li> <li>신고사항의 담당 분과위원회 배정 이후, 분과위원회내 주심위원 배정순서에 따라 위원장이 배정</li> <li>해당 주심위원이 주심을 맡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 위원에게 배정</li> </ul> </li> </ul>		

<p>〈 제도개선 등 정책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 실.국에서 주심위원 위촉 필요성을 위원장에게 보고</li> <li>위원장은 정례관련 의안의 특성,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심위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사항의 심사.조사방향, 확인조사 등 제반사항 검토</li> <li>조사기관의 조사처리 결과에 대한 검토</li> <li>조사결과와 적정성, 제조사 요구 또는 재정신청 여부 등</li> <li>제도개선.보호보상 등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 방향 설정</li> <li>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전문위원 활용, 전문가 토론회.공청회 개최, 연구용역 필요성 검토 등</li> <li>분과위원회 상정여부 검토</li> <li>분과위원회 및 전원회의에서 종합 검토의견 개진</li> <li>분과위원회에서는 실.국장이, 전원회의에서는 분과위원장이 제안실명과 정책사항을 설명하고, 주심위원이 종합검토 의견개진</li> </ul> </li> </ul>
---

제2002-72호	제12차 전원회의(2002. 6. 3.)	신고심사국
<p><b>1. 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선거에 즈음하여 관련 부패신고를 현장에서 접수, 부패 척결의 공감대를 조성.확산</li> <li>위원회 고유기능인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홍보하여, 지방 선거와 관련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여 정치부패 척결의 기초를 마련</li> </ul> <p><b>2. 기본방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 등 도청 소재지와 부산, 인천 등 11개 주요도시에 3일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 관련 홍보활동 및 선거관련 부패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li> </ul> </li> <li>선관위의 부정선거단속 권한 등과의 중첩을 방지하고 정치권과의 시비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관련 부패행위를 신고사항으로 접수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직 단체장, 현역위원 및 민간인 신분 출마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 관련 진정사항도 접수</li> <li>위원회의 신고자 비밀.신분보장, 신분보호, 보상제도 등을 언론에 집중 홍보하여 선거 후에도 관련 부패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함</li> </ul> </li> </ul> <p><b>3. 홍보 및 신고센터 운영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유력지 3~5개 신문에 신고 접수 관련 안내광고 게재</li> <li>다중이용시설 및 인구밀집지역에 현수막 등 설치</li> <li>신고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닌 상공회의소 또는 YMCA등 시민들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치</li> <li>각 지역별로 팀(3~4명)을 구성하여 매일 09:00~18:00간 운영</li> <li>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별도의 상담실을 확보 운영</li> </ul>		

제2002-104호	제16차 전원회의(2002. 8. 19.)	정책기획실
<p><b>1. 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사회의 부패문제의 핵심인 정치.권력형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장.단기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실현 가능한 개선과제부터 입법을 촉구하고 정치권의 실천을 유도</li> </ul> <p><b>2. 정치부패와 권력형 부패의 발생원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다한 선거.정치자금에 필요로 하는 고비용 정치구조(수요 측면)</li> <li>비현실적.불법적 정치자금 조달체계(공급측면)</li> <li>정치자금 투명성확보를 위한 통제장치 미흡(운용측면)</li> <li>제도상 허점 및 권력의 집중화와 비제도화된 권력의 존재 등</li> </ul> <p><b>3.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자금 수요 최소화를 통한 저비용 정치구조 확립</li> <li>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방법 확대</li> <li>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적발.처벌 강화</li> <li>대패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력형부패 근절대책 병행 추진</li> </ul> </li> <li>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대선 이전) : 선거운동방식 개선 및 국가보전 확대, 정치자금 지출 투명성 제고, 권력형 부패 대책 병행</li> <li>2단계(대선 이후~2004년 총선 이전) : 정당 및 선거제도 개혁,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등</li> </ul> </li> </ul> <p><b>4. 정치부패 개선대책</b></p> <p><b>가. 1단계(대선 이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돈 적게 드는 선거운동방식의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후보자 연설회, 합동연설회 폐지, 미디어 선거운동방식 확대 등</li> </ul> </li> </ul>		

- 선거공영제 확대
    - TV 합동토론회,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신문광고 및 방송광고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확대
  - 단일 예금계좌 사용 정치자금 지출
    -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예금계좌를 이용토록 의무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리 일원화
  - 국고보조금 지출통제 강화
    -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정치자금법 제19조 제1항 제9호(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규정삭제, 국고보조금 지출시 카드 사용 의무화
  - 선관위의 회계감사권 강화
    - 선관위가 지정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첨부토록 조치
  - 권력형부패 개선대책
    -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고위공직자 비리 감찰 강화 및 특검제 제도와 등
- 나. 2단계(대선 이후 - 2004년 총선 이전)**
- 저비용 정치구조 확립
    - 상향식 공천의 제도와, 중.대선거구 도입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방법 확대
    - 후원회 결성범위의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 합법화
  -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 정치자금 규제의 명확화,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 정치자금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해 공무담임권을 제한, 선관위에 정치자금 관련 계좌추적권 부여, 금융정보분석원에 국내계좌추적권 부여, 고액현금거래 보고제의 도입
- 5. 기타 중장기 개선 검토과제**
-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 정당지배구조 개혁 : 중앙당 축소와 원내정당화 등
  - 선거제도 개혁 : 각종 선거의 통합 실시 등 선거시기 조정 등

## 附 錄

1. 腐敗防止法
2. 腐敗防止法施行令
3. 腐敗防止委員會運營細則
4. 全員會議分科委員會議 開催現況
5. 腐敗防止委員會 委員 名單

□ 정직하게 지만 새책, 밝은 미래 약속한다.

## 부패방지법

제정 2001. 7. 24. 법률 제6494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인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선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 3 조(공공기관의 책무) ①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정당의 책무) ①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 5 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6 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7 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공무원 행동강령)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권한자로부터의 향응, 급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행위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장 부패방지위원회

제10조(설치)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01

附 錄 ●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5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 ④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303

附 錄 ●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 권고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평가
3. 부패방지 교육, 홍보계획의 수립, 시행
4.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5.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7.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8.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부패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위원이 결위원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 附 錄

302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제도개선의 권고)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보안관찰처분, 보호처분, 보호조관찰 처분, 보호감호처분, 치료감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판결결정결과,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 ③제1항 각호의 조치는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 附 錄

304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별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3 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등 보호

제2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2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성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 위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고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 ④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將官級) 장교

#### 6. 국회의원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재정신청) ①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와 제355조 내지 제357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에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및 제261조·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에 규정된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접수된 때에는 그 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 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신분보장) ①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정제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⑤제4항 각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⑧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인사교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⑨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33조(신변의 보호) ①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분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분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분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분보호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책임의 감면) ①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포상 및 보상)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보상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보상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위원회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제 4 장 국민감사청구

제40조(감사청구권) ①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계산 및 형집행(보안처분, 보안관찰처분, 보호처분, 보호관찰처분, 보호감호처분, 치료감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2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5 장 보 칙

제45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제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과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된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된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 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8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 6 장 벌 칙

제49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51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되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사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2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제물취득의 죄)를 삭제한다.

## 부패방지법시행령

제정 2001. 11. 29. 대통령령 제17420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2 장 부패방지위원회

제 3 조(부패방지시책의 수립) 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4 조(실태조사,평가) 법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책임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317

附 錄 ●

2. 친족,호주 및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위원회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등) ①위원회는 부패방지업무의 수행에 요구

319

附 錄 ●

제 5 조(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6 조(위원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기준"이라 함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부패문제에 관한 연구실적 또는 경력 등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 7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 8 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 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되는 청렴성,도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계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공공기관,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공공기관,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 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윤리규정 등) ①위원회는 위원,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부패방지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 附 錄

320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 일시, 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위원,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 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주관 조사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 3 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19조(대표자의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위원회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에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에 동의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분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관의 처리) ①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은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그 기관이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제25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법 제3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

왔거나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조사결과와 처리) ①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8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제29조(신분보장조치의 요구)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신분보장조치의 결정)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기관 등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 또는 권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신분보장조치 요구인의 신분 등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조치결과와 통보 등) ①위원회로부터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로부터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33조(신고자 비밀보장) ①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신변보호) ①법 제3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해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 4 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제35조(보상사유)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에 의한 환수
  4.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36조(대표자의 선정) 위원회는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인, 당면직 위원 4인 및 위촉직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보상위원장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정경제부.법무부.기획예산처 및 위원회 소속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보상위원장)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보상위원회 위원 등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0조(보상금의 결정) ①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1천원 단위 이하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공직자 보상금의 감액) ①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제외한 공직자가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42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4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45조(보상금의 지급절차)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 5 장 국민감사청구

제47조(감사청구인)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라 함은 300인을 말한다.

제48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행정심판, 소송, 헌법소원, 헌법소원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3.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제49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중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인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제 6 장 보 칙

제51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 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 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 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 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2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5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3조(과태료의 부과)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자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부패방지위원회 소속공무원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제4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패방지위원회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40조제1항관련)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7%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천8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5%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억1천3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3%
40억원 초과	1억7천3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2%

※ 보상대상가액 :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가졌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4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원회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금액
파면 및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000만원
직위해제,강등,승진의 제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700만원
권보,권축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500만원
입급의 차별지급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300만원

부패방지위원회운영세칙

제정 2002. 1. 28. 부패방지위원회예규 제1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부패방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장 직무의 대행)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사무처장인 상임위원
2. 사무처장이 아닌 상임위원

제 2 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 제 3 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정기회의는 매월 첫째 및 셋째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하되, 회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4 조(수시회의의 소집) ①수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수시회의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 등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5 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패방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문위원의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
13.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1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제 3 장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검토, 조정, 조사,연구, 기타 위원회가 부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2. 제2분과위원회
3. 제3분과위원회

제11조(분장사항) ①위원회의 업무중 헌법기관과 정치,일반행정분야(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를 포함한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제1분과위원회가, 사회,문화분야(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교육청 및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제2분과위원회가, 경제분야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제3분과위원회가 각각 분장한다.

②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의 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관중된 경우 등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소집 등) ①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의결) ①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모든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간사) ①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②제1분과위원회는 정책기획실장이, 제2분과위원회는 홍보협력국장이,

1.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시민단체협력에 관한 사항중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조(간사위원) 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둔다.

②간사위원의 직무는 사무처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담당하고, 심결관리담당관은 위원회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 업무에 관하여 간사위원을 보좌한다.

제 7 조(의안의 제출 등)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심결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심결관리담당관은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의안의 배부 등) ①심결관리담당관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의안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결관리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9 조(회의록) 심결관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기타 주요 논의 사항

제3분과위원회는 신고심사국장이 각각 간사가 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의안 작성 등) 분과위원회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분과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심의,의결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1. 각 분과위원회 분장사항중 단순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각 분과위원회 분장사항중 법령 또는 위원회세칙 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
  3. 기타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
- ②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사항 및 기타 활동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사항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재심의,의결)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다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 4 장 전문위원 등

제18조(전문위원) ①각 분과위원회별 분장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한다.

제19조(자문기구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5장 의견진술 등

제20조(의견진술 등의 요구) ①위원회는 부패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4. 신분보장 및 신분보호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의 제출 요구
5. 신분보장 및 신분보호요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 요구

②분과위원회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주심위원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의견진술 등을 주재할 수 있다.

제21조(출석요구) 소관부서는 출석요구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진술서 등 제출요구) 소관부서는 자료.진술서 등 제출요구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진술서 등 제출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견진술의 공개여부)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견진술의 내용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2. 기타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주심위원제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주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관련되는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진술의 보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 등을 주재한 분과위원회 및 주심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안명
2. 의견진술자의 성명 및 주소
3. 일시 및 장소
4. 의견진술의 내용
5. 검토의견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6조(위원회에의 보고) 주심위원은 그 업무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보 칙

제27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기타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지서식 생략 >

### 전원회의.분과위원회의 개최현황

#### ◆ 전원회의 개최현황

○ 회의개최 : 23회, 심의의결 : 총 155건

합 계	의 결 사 항				보고사항
	소 계	신고사건	제도개선	예규.훈령, 기타	
155건	98건 (64%)	77건 (50%)	7건 (5%)	14건 (9%)	57건 (36%)

#### ○ 신고사건 처리현황

합 계	기 관 별 이 험 건 수							재정	재조사	불이첩
	소 계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행정부	국세청	기 타			
77건	67건 (87%)	27건 (35%)	16건 (21%)	9건 (12%)	5건 (6.5%)	2건 (2.5%)	8건 (10%)	2건 (2.5%)	2건 (2.5%)	6건 (8%)

\* 기타기관(8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 교육인적자원부1, 국무조정실1, 국방부1, 관세청1, 서울특별시1, 농협중앙회1, 산림조합중앙회1

#### ○ 제도개선 기관별 권고현황

권고기관	재 정	교육인적	행 정	보 건	건 설	국세청	조달청	구로구
	경제부	자원부	자치부	복지부	교통부			
8개기관	2건	1건	3건	1건	1건	1건	1건	1건

○ 제도개선권고 목록

제 목	권고기관	권고일자
교원인사 제도개선 권고안	교육인적자원부	'02. 7.10
지방공무원인사 제도개선 권고안	행정자치부	'02. 7.10
공무원행동강령안	행정자치부	'02. 7.22
청소대행계약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02.10.10
국민성금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02.10.15
턴키공사 입찰제도개선 권고안	제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02.12. 6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개선 권고안	제정경제부, 국세청	'02.12.12

◆ 분과위원회의 개최현황

○ 회의개최 : 51회, 심의의결 : 총129건

합 계	의 결 사 항			보고사항
	소계	신고사건	제도개선	
129건	116건 (90%)	110건 (85%)	6건 (5%)	13건 (10%)

○ 각 분과위원회별 개최현황

구 분	개 회	처 리	의 결 사 항			보고사항
			소계	신고사건	제도개선	
제1분과위원회	13회	45건	39건	38건	1건	6건
제2분과위원회	20회	49건	46건	41건	5건	3건
제3분과위원회	18회	35건	31건	31건	-	4건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강철규 (姜哲圭)	서울시립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위 원	채일병 (蔡日炳)	총무처 복무감사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사무처장)
위 원	이상환 (李相煥)	국회 정책연구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연구실장 대통령비서실 정부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상임위원
위 원	이진우 (李珍雨)	변호사 서울지검 서울고검 검사 11, 13대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대통령 정부 제1수석비서관	국회추천
위 원	박용일 (朴容逸)	변호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 변호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
위 원	박연철 (朴淵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신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위 원	최세모 (崔世模)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추 천
위 원	김오수 (金吾洙)	변호사 서울지법, 서울고법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판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
위 원	강금실 (康鎔實)	변호사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한국인권재단 이사	"

2002년도  
부패방지위원회 심의의결례집  
<제 1 집>

발행일 : 2003년 1월  
발행처 : 부패방지위원회 법무관리관실

TEL : (02) 2126-0093  
FAX : (02) 2126-0307

인쇄처 : 중앙인쇄사  
TEL : (02) 736-2866 ~ 7  
FAX : (02) 739-8249